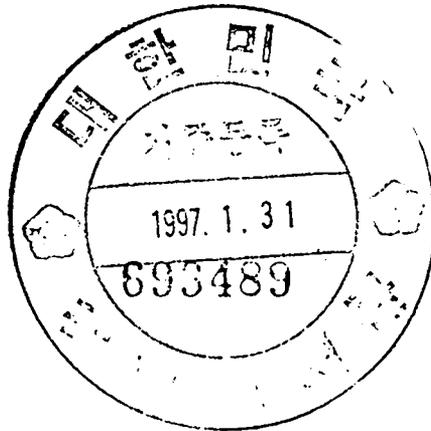


1997년 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996. 11. 18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총6권중 제3권



농 립 부

일 리 두 기

1. 이 지침서는 모두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림부·농촌진흥청(사업명 뒤에 *표시한 것)·산림청 소관 사업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 제1권에는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에 대한 해설과 시책안내를 수록하였고, 제2권부터 제6권까지는 분야별 **사업시행지침(1997년도 사업시행 요령과 1998년도 사업신청 및 자금지원 대상자 선정 안내)**을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3. 이 지침서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국립농산물검사소 출장소, 농촌지도소, 농·축·임·삼협조합, 농지개량조합, 농어촌진흥공사 지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시행지침의 1997년도 사업비는 잠정금액이므로 정부예산의 국회심의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5. 각 권별 수록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권 :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 제2권 :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3권 :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4권 : 축산업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5권 : 농촌개발 분야 사업시행지침
 - 제6권 : 임업및산촌구조개선 분야 사업시행지침
6. 이 지침서의 내용은 AFFIS를 통하여 PC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정보센터(전화 02-589-20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제1권 [관계규정 해설 및 시책안내]

I. 농림사업실시규정 해설	1
1. 배경	3
2. 특징	5
3. 보완사항	6
4. 해설	12
제1장 총칙	12
제2장 자율사업	16
제3장 공공사업	22
제4장 신규사업의 선정절차	23
제5장 보칙	25
[별표] 사업신청 및 지원 절차도	26
II.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 해설	27
1. 배경	29
2. 농림사업자금 현황	29
3. 주요골자	30
4. 해설	31
III. 시책안내	43
1. 42조원 지원계획	45
2. 농어촌특별세사업 지원계획	47
3. 농림사업자금 대출안내	49
4. 농림사업 평가제도	56
[참고자료]	57
농림사업실시규정(농림부 훈령 제877호)	59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농림부 훈령 제875호)	104

제2권 [농업(식량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117
1. 영농규모적정화(자율)	119
2. 농약안전사용장비보급(자율)	150
3. 토양개량사업(자율)	158
(토양개량제공급, 객토)	
4. 감자원종망실재배농가지원*(자율)	179
5. 밭기반정비(공공)	187
6. 기계화경작로확포장(공공)	203
7. 일반경지정리(공공)	218
8. 배수개선(공공)	226
9. 수리시설개보수(공공)	248
(농조수리시설개보수,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농조저수지준철)	
10. 대·중규모용수개발(공공)	297
11. 지표수보강개발(공공)	325
12. 대단위농업종합개발(공공)	347
13. 대구획경지재정리(공공)	366
14. 소규모농업기반시설및농정시책추진(공공)	384
(농지관리위원회운영, 공동·항공방제, 지하수개발, 지표수개발,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한우쌍자생산, 개량물꼬보급, 지역특화작목개발, 시군수리시설개보수)	
15. 서남해안간척(공공)	476
16. 농지정보화(공공)	493
17. 주요농작물원원종및원종생산지원*(공공)	497
18. 인공씨감자대량생산시설(공공)	502
II. 농업기계화	509
19. 농기계구입자금지원(자율)	511
20. 생산자조직농기계구입지원(자율)	576
21. 농기계보관창고설치(자율)	596
22. 농기계사후관리(공공)	606
23. 시설농업기자재생산시설및생산비축지원(공공)	627
24. 국제농림축수산기계박람회(공공)	635
III. 생산및유통개선	639
25. 미곡종합처리장(자율)	641
26. 임도정공장시설대체(자율)	667
27. 직접지불제실시(공공)	675

제3권 [농업(원예특용작물)구조개선]

I. 생산기반확충	677
28. 부적지감굴과원정비[자율]	679
29. 고품질우량채소종자개발보급(공공)	686
30. 한국자생란보존육성(공공)	690
31. 버섯종균접종원생산보급시설(공공)	692
32. 화훼계열화(공공)	699
II. 생산및유통개선	703
33. 과실생산유통[자율]	705
34. 시설채소생산유통[자율]	723
35. 양념채소생산유통[자율]	746
36. 고랭지채소생산유통[자율]	759
37. 화훼작물생산유통[자율]	770
38. 특용작물생산유통[자율]	791
39. 인삼생산지원[자율]	808
40. 농산물규격출하[자율]	824
41.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자율]	834
42. 과수대표생산[자율]	850
43. 인삼종합처리장(공공)	859
44. 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공공)	866
45. 농산물공판장건설(공공)	883
46. 꽃박람회개최(공공)	896
47. 농산물물류표준화(공공)	897
48. 과실·화훼판매촉진(공공)	903
49.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공공)	907
50.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920
(국제농산물박람회참가, 수출활성화사업, 수출홍보사업, 해외시장정보조사)	
51. 농산물무역진흥센터건립(공공)	947
52. 수출농산물수송체계지원(공공)	952
53. 농산물물류센터건설(공공)	955
54. 농산물포장센터건설(공공)	969
55. 생산자단체출하조절(공공)	989
56. 공동규격출하지원(공공)	994
57. 출하촉진자금(공공)	1008
58. 품목별생산자조직육성(공공)	1013
59. 채소가격안정사업(공공)	1018

제4권 [축산업구조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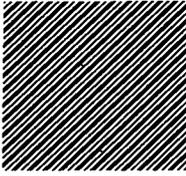
I. 사육기반확충	1025
60. 한우경쟁력강화(자율)	1027
61. 젓소경쟁력강화(자율)	1041
62. 돼지경쟁력강화(자율)	1051
63. 닭경쟁력강화(자율)	1061
64. 기타가축육성(자율)	1072
65. 조사료생산기반확충(자율)	1081
66. 축산분뇨처리시설(공공)	1099
67. 축산단지조성(공공)	1129
68. 가축계열화(공공)	1140
II. 생산및유통개선	1163
69. 축산물종합처리장건설(공공)	1165
70. 도축도매시설개선(공공)	1176
(축산물공판장건설, 위생도축시설확충)	
71. 가공판매시설및운영(공공)	1188
(가공직판장설치, 계란가공시설, 한우전문판매점설치, 냉장육전문판매점시설개선)	
72. 축산물품질향상및안전성강화(공공)	1223
(돼지고기품질개선, 규격돈구매자금, 축산물등급판정, 식육처리전문인력양성, 폐사축위생처리, 가축방역, 축산물검사, 부정축산물유통지도단속, 한우고급육생산기술개발, 재래닭품질육용화, 가축개량전산망구축)	
73. 소수급관리전산화(공공)	1325
74. 축산경영여건개선(공공)	1334
(경영상담지도, 양축농가해외연수, 축사표준설계도개발보급, 축산자조금, 특수가축 공제시범사업, 가축박람회, 교육홍보사업, 축분처리용膨軟왕겨생산시설)	
75. 축산업협동조합육성지원(공공)	1369
76. 사료제조시설설치(공공)	1373
(섬유질사료제조시설, 음식찌꺼기사료화시설)	
77. 축산기자재생산시설(공공)	1385
78. 학교우유급식(공공)	1391
79. 사료원료수입(공공)	1397
80. 조사사업(공공)	1401
(축산물가격및유통현황조사, 축산관측, 축산물생산조사)	
III. 소득원개발	1411
81. 축산경영자금(공공)	1413
IV. 가축개량	1417
82. 소정액생산및공급(공공)	1419
(한우개량단지운영, 한우정액생산공급, 젓소정액생산공급, 가축개량신기술보급, 가축인공수정사업)	
83. 종축등록및검정(공공)	1458
(종축등록, 젓소산유능력검정, 돼지능력검정, 닭경제능력검정, 가축개량협의회운영)	
84. 전문종돈업육성(공공)	1476
V. 기타사업	1485
85. 수의기술교육관건립(공공)	1487

제5권 [농촌개발]

I. 생산및유통개선	1489
86.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자율]	1491
87. 농산물가공산업육성(공공)	1501
II. 기술개발및정보화	1559
88.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자율]	1561
89. 농촌활력화시범사업*(공공)	1568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지역특화시범사업)	
90. 농림수산정보화(공공)	1581
91. 농림수산기술개발(공공)	1585
92. 기술지도사업*(공공)	1595
(새기술보급및환경보전농업시범사업,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 농산물포장개선기술시범사업, 농업학습단체육성및품목별전문교육)	
III. 인력육성	1627
93. 농업인후계자육성[자율]	1629
94. 전업농육성[자율]	1664
95. 선도농업경영체육성[자율]	1697
96. 농업인자녀학자금(공공)	1714
97. 농림계특성화대학지원(공공)	1726
98. 자영농고육성(공공)	1733
99. 농업전문대학지원(공공)	1736
100. 한국농업전문학교지원*(공공)	1739
IV. 소득원개발	1743
101. 농촌관광휴양자원개발[자율]	1745
102. 농촌특산단지육성[자율]	1810
103. 농공단지육성(공공)	1843
104. 농촌특산품판매장설치(공공)	1859
105. 한계농지정비(공공)	1867
106. 농업경영자금(공공)	1883
V. 생활환경개선	1889
107. 식생활개선교육홍보(공공)	1891
108. 농촌정주생활권개발(공공)	1895
(일반정주권개발, 문화마을조성, 농촌마을하수도설치)1951	
109. 농촌생활용수개발(공공)	1951
VI. 기타사업	1981
110. 농업인의날행사지원(공공)	1983

제6권 [임업및산촌구조개선]

I. 경영기반확충	1985
111. 산림경영장비지원(자율)	1987
112. 사유림협업경영(공공)	1993
113. 임도시설(공공)	1997
114. 영림계획(공공)	2001
115. 다목적산림경영시범단지조성(공공)	2005
116. 임업협동조합육성(공공)	2010
117. 임업기술보급(공공)	2012
(임업기술지도, 임업기술개발지원)	
II. 생산및유통개선	2021
118. 임목생산(자율)	2023
119. 임산소득증대(자율)	2028
(표고생산기반조성, 조경수분재생산, 단기소득임산물생산)	
120. 임산물가공지원(자율)	2047
(임산물이용가공원자재구입, 임산물가공이용시설, 산지가공공장설치, 평이용가공시설, 임산물저장시설)	
121. 표고중균생산시설(공공)	2067
122. 임산물유통개선지원(공공)	2070
(임산물종합유통센터, 간벌재활용장비, 임산물유통시설설치)	
123. 합판및보드류시설지원(공공)	2086
III. 인력육성	2093
124. 독립가및임업후계자육성(자율)	2095
125. 임업전문인력양성(공공)	2104
(임업기능인훈련, 임업기능인영림단장비지원)	
126. 임도시공장비지원(공공)	2116
IV. 환경임업육성	2121
127. 산림휴양공간조성(공공)	2123
(자연휴양림조성, 산림박물관건립및수목원조성)	
128. 산불방지대책(공공)	2130
129. 사방사업(공공)	2134
130. 산림생태보전(공공)	2138
(산림환경관리, 산림입지조사, 야생조수보호)	
131. 산촌종합개발(공공)	2150
V. 산림자원조성	2157
132. 해외조림사업(자율)	2159
133. 산림조성(공공)	2167
(조림사업, 육림사업, 간벌사업, 조림용묘목생산)	
134. 산림병해충방제(공공)	2199



I . 생 산 기 반 확 충

여 백

28 부적지감귤과원정비(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1. 목 적

감귤류 수입개방('97. 7. 1)에 대비하여 생산비가 많이들고, 품질이 낮은 감귤이 생산되는 해발 200m이상의 과원과 동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지감귤과원을 정비하여 대체작물 재배유도

2. 추진방향

- 감귤재배 부적지로서 과원정비를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
- 해발 200m이상의 고지대 및 동해상습지 감귤과원 정비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8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7	'98
사 업 량		60ha	30	30
사 업 비	계	1,800백만원	900	900
	보 조	1,260	630	630
	지방비	540	270	27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감귤의 수입개방에 따라 생산비가 많이들고 품질이 낮은 감귤이 생산되는 해발 200m이상의 고지대 및 동해상습지의 감귤과원을 정비코자 함.

2) 지원대상

- 해발 200m이상 고지대 및 동해상습지 감귤재배농가
- 과거에 감귤 동해를 받아 묘목대 지원을 받은 농가, 품종갱신과원, 최근 3년간('93이후) 관리되지 않은 과원, '94이후 신규조성된 과원, 기업소유 과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지원단가 : 30백만원/ha

4) 지원비율 : 국고보조 70%, 지방비 보조 30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	지방비
제주도	30ha	900백만원	630	270

- 재원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2611-305-01)

<사업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제주도지사

나. 사업기간 : '97. 1. 1 ~ 12. 31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원예특작국 과수화훼과(02-500-2685~6)
- 제주도 : 농수산국 감귤과(064-40-1194)
- 시·군 : 감귤특작과
- 자격
 - 해발 200m이상의 고지대 및 동해상습지 감귤재배농가
- 절차
 - 읍·면 → 시·군 → 도 → 농림부
- 구비서류
 - 토지대장 등본(대장상의 전체면적이 재배되지 않은 필지는 면적에 대한 목록을 잘할 수 있는 3인이상이 합의확정)
 - 농촌지도소장이 발행하는 300평당 주수와 감귤수령 과원의 해발, 냉해 상습지인지 여부 등 기타 확인 서류

라.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 감귤과원이 해발 200m이상의 고지대 및 동해상습지의 농가로써 감귤과원 정비를 하고 대체작물(단감, 키위, 감자,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농가[별지 제2호서식]

2) 우선순위

- 행정기관에서 사전조사한 농가
- 행정기관 사전조사이후 과원정비를 신청한 농가

3) 선정절차

- 농촌지도소장이 발행한 확인서에 의거, 읍면장이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를 시장·군수, 도지사가 시·군, 시·도의 농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마.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정부가 제시한 요령을 기준으로 도지사가 세부요령을 작성 시행하고, 대상자 변경시는 도지사가 승인

2) 사업비 지원방법

가) 지원단가

- 제주도지사 주관하에 지역별, 수령별, 수확량 감귤가격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농촌진흥원, 전문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단가 심의회의를 거쳐 농가별 필지별 지원단가를 결정하여 차등지원 세부기준을 마련 시행
- 과원정비를 위하여 지원되는 농가는 필수적으로 대체작물을 재배한 조건으로 지원할 것

나) 사업비지원

- 보조금은 반드시 과원정비 대체작물 재배된 농가에 한하여 정산(농가별 필지별 대장을 비치 사후관리하여 다시 감귤이 재배되지 않도록 한다)

다) 세부지침작성

제주도지사는 당부지침을 근거로 세부사업 지침서를 마련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제주도지사는 과원을 정비한 후 대체작물 재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감귤이 다시 재배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나. 보고

- 사업추진상황 및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 익년도 3월말[별지 제1호서식]

다. 기타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정부지원은 '98년으로 완료되며, 대상지역 및 농가가 이미 조사되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은 불필요함.
- 사업추진은 '97요령 참고

[별지 제1호서식]

사업추진상황 및 보조금 정산결과 보고

(단위 : 호, 천원)

시·군	농가수		면적		자금집행실적						대 체 작물명	
					계		보 조		지방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별지 제2호서식]

'97 감귤폐원 대상자 현황

시·군	주소	성명	면적	자금집행계획			대 체 작물명
				계	보 조	지방비	
			ha				ha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과입니다.

1. 목적

- 수입 자유화에 따른 국내 채소종자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신품종 육종개발을 위하여 종묘 생산자의 생산시설의 현대화와 신품종 육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종묘산업을 육성하여 농업 생산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추진방향

- 우량 채소종자 신품종 육성개발을 위하여 채소종자의 생산·보관시설 및 육종자금을 연차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채소생산기반 구축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5까지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211,575평 (936품종)	162,459 (116)	14,716 (60)	5,300 (60)	4,300 (100)	24,800 (640)
사업비	계	백만원 98,681	20,788	4,290	5,143	9,200	59,260
	응자	69,071	14,551	3,000	3,600	6,440	41,480
	자부담	29,610	6,237	1,290	1,543	2,760	17,780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주요 지원내용

- 육채종시설 : 채소종자 육채종 생산·보관에 필요한 시설(저온 저장고, 일반 창고, 실험실, 온실, 망실 및 비닐하우스등)
- 신제품육종 : 무, 배추, 양배추, 고추, 토마토, 오이, 참외 수박, 호박, 파, 양파, 당근, 상추, 시금치등 종묘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14개 채소종자의 육종개발
- 지원단가
 - 육채종시설 : 저온저장고 2,000천원/평, 일반창고 700/평, 실험실 1,600/평
온실 1,300/평, 망실 및 비닐하우스 50/평
 - 신제품육종 : 5,000만원/품종
- 지원비율 : 융자 70%, 자부담 3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구 분	사 업 량	단가	'97 예 산		
			계	융 자	자부담
합 계		천원	백만원 5,143	3,600	1,543
○ 육채종시설	5,300 평		2,143	1,500	643
- 저온저장고	400 평	2,000	800	560	240
- 일반창고	300	700	210	147	63
- 실험실	100	1,600	160	112	48
- 온 실	600	1,300	778	546	232
- 망실 및 비닐하우스	3,900	50	195	135	60
○ 신제품육종	60품종	50,000	3,000	2,100	9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자치구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원예특작국 채소과 (02)500-2683
- 시·도 : 농정국 농산물 유통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종묘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묘업 등록업체로서 '96년도까지 채소종자 품종등록(교배종) 실적이 있는업체
 - 신품종 육종자금 지원은 교배종에 한함
 - 육채종 시설자금은 저온저장고, 실험실, 온실등 육종시설에 우선지원
 - 사업비의 불용 및 종묘분쟁유발업체, 일정기간 채소종자 생산실적이 없는 업체 등은 지원의 제한 또는 제외
 - 기타 여건의 변화에 대처하여 농림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
- 선정절차
 - 융자희망업체는 한국종묘협회장의 추천을받아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계획을 확정 통보
 - 사업확정자가 중도에 포기하므로써 자금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선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의 변경등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할 불가피한 사유발생시 당해업체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사유첨부 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요청, 변경승인시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지원업체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자부담 미사용, 사업계획의 부당변경 및 중도포기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

나. 보고

- 사업진도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사업결과보고 : 사업의년도 3월 20일까지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 자치구(한국종묘협회장의 추천서 첨부)

나. 대상자 : 한국종묘협회에 가입한 종묘업체

다. 신청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에서 정한 신청서
- 한국종묘협회장의 추천서
- 사업계획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1. 사업목적

- 한국 춘란 주산지에 자생란 전시관, 유통센터 및 조직배양실 등의 시설을 종합지원하여 소멸되는 부존자원을 보호육성

2. 추진방향

- 한국 춘란의 자생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존 발전토록 지원
- 전시관 신축 유통센터 및 조직배양실을 설치 지원
- 지역여건에 맞게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전남 함평군)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및 제14조

4. '97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재원별		
	계	보조(40%)	지방비(60%)
계	2,500	1,000	1,500
전시관 및 유통센터	2,100	840	1,260
조직 배양실	400	160	240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추진계획>

- 사업지역 : 전남 함평군
 - 사업주관기관 : 군수
 - 사업추진기간 : '97. 1. 1~12. 30
 - 총사업비 : 2,500백만원 (보조 40%, 지방비 60)
 - 주요시설 : 난 전시관 및 유통센터, 조직배양실

<기대효과>

- 소멸되어 가는 부존자원 육성
- 세계적인 난 명소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사후관리>

- 함평군은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 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사후 관리책임자 : 전라남도지사

31 버섯종균접종원 생산보급시설 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원예특작과입니다.

1. 목 적

- 버섯원균의 안전한 보전관리와 버섯종균 우량접종원의 생산·보급을 위한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버섯 생산력증대와 품질향상을 기하여 국내 버섯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버섯종균 접종원의 공급체계를 확립코자 함.

2. 추진방향

- 버섯종균 접종원을 전문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설 1개소 지원
 - 원균의 유지보존 및 접종원 생산시설
- 지원대상은 농어촌구조개선특별조치법에 의거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 조합원은 소정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97 신규사업)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계	'92~'95	'96	'97(예산액)	'98	'99~2004
사업량(개소)		1개소	-	-	1개소	-	-
사업비	계	2,060	-	-	2,060	-	-
	보조	412	-	-	412	-	-
	융자	1,236	-	-	1,236	-	-
	자부담	412	-	-	412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배 경

- 최근 버섯의 급속한 소비증가에 따라 버섯이 성장발전 품목으로 부각되어 농가의 주요소득원이 되고 있으나
- 버섯재배의 기본이 되는 버섯종균의 생산보급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생산력과 품질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일부품목은 수입에 의존하여 외화를 낭비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우량종균을 확대 생산하여 체계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생산력 향상을 기하고 농가가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문적 버섯종균 접종원의 생산보급시설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따른 시설을 지원하는 것임.

나. 사업내용

- 버섯종균접종원 생산보급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지원
 - 원균보존 및 특성검정실 등 시설건축 : 2,078m²(630평)
 - 접종원 배양기자재 : 고압살균기 등 34종
 - * 세부사업내용 : <별첨 1>
- 대상버섯 : 느타리, 영지, 양송이, 팽이, 만가닥, 표고 등

다. 지원대상자

- 한국종균생산협회 회원(필요한 경우 버섯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자로 포함 가능)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라. 지원조건등

- 지원비율 : 보조 20%, 음자 60, 자부담 20
- 지원조건 : 연리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바. '97 사업비(예산)내용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계	1개소	백만원 2,060	412	1,236	-	412
경 기	1개소	2,060	412	1,236	-	41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군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원예특작과 (02-504-9421~2)
- 시·도 : 경기도 농산물유통과
- 시·군 : 산업과

다. 사업신청 및 대상자 확정

- 지원대상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제출
 - ①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 ② 사업계획서(버섯종균접종원 생산·보급시설 설치 및 생산계획 등)
 - ③ 사단법인 한국종균생산협회장 추천서
-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정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를 경유 농림부에 계통보고

라. 자금집행

- 자금재배정요청
 - 시장·군수는 신규사업임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소요자금 (보조+융자)을 소요시기별로 재배정 요청
- 융자 취급기관(농협)은 융자금이 배정된 때에는 사업자의 여신관리 계좌에 입금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
- 사업자는 사업진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와 융자 취급기관에 자금집행 및 융자신청
- 시장·군수는 사업추진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집행토록 조치하고 융자 취급기관에 사업실적 확인 통보
- 사업진도 확인통보를 받은 융자취급기관은 융자 실행

마. 사업추진지도

- 시장·군수는 사업자와 시공업체 선정, 시공지도 및 완공검사등 원활한 사업추진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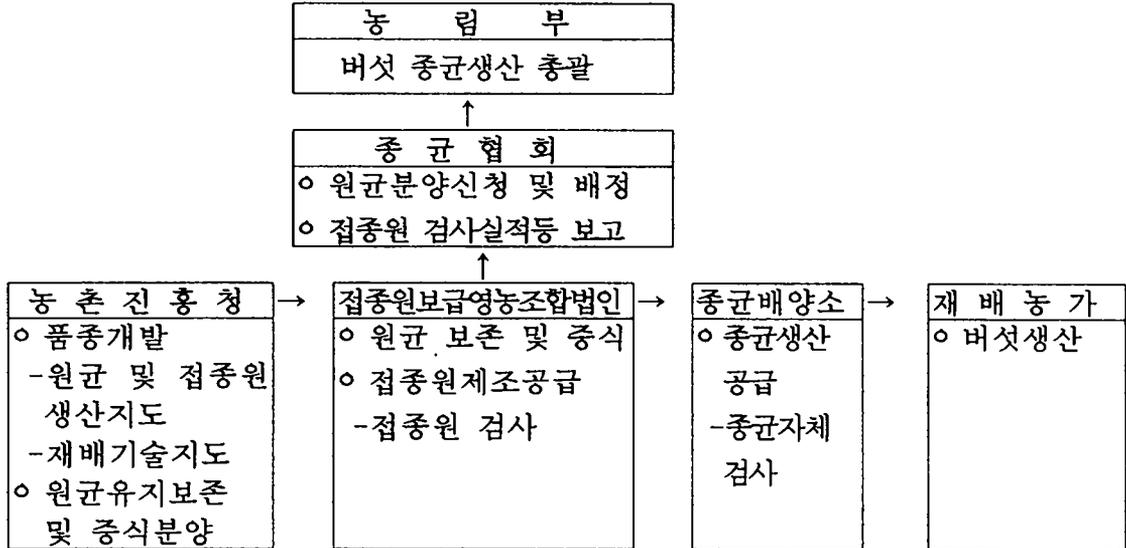
가.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시설물이 정부지원사업 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토록 하고 시설의 재산적 보호유지를 위한 지도관리 감독에 철저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제한기준

재 산 명	사 후 관 리 기 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접종원생산시설 (기자재포함)	'98	2007	○사후관리기간중 임의로 양도,폐기등 처분금지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여야 할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	○융자지원기간을 감안설정

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운영체계



- 버섯 접종원 공급 영농조합법인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등으로부터 중균협회를 통하여 신제품의 원균을 분양받아 유지 보존관리하고 중균접종원을 제조하여 중균배양소에 판매
 - 버섯종균의 유통질서유지를 위하여 기 중균배양소에서 버섯 재배농가에 제조·판매하고 있는 중균을 동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제조하여 버섯재배농가에 판매할 수 없음.
 - 장기적으로 신제품개발 병행
- 원균, 접종원, 중균의 검사는 자체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촌진흥청은 수시로 확인지도검사 실시
 - 중균협회는 자체검사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취합하여 농림부에 보고
 - 매 회계년도말에 사업실적 종합보고
- 영농조합법인은 중균생산협회내에 중균접종원 생산공급 판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운영

< 별첨1 >

버섯 種菌接種原 生産 普及施設 細部事業內容

建築施設

區 分	細 部 事 業	事 業 量	事 業 費
	합 계	2,078m'	1,277,970천원
○ 원균보존 및 특성 검정실	소 계 ○ 원균보존실 ○ 원균배양실 ○ 무균실 ○ 살균 및 배지제조 ○ 특성검정 ○ 실험연구실	472 32 100 60 45 100 135	290,280 (472×615천원)
○ 접종원 생산 배양실	소 계 ○ 준비실 ○ 배지배합실 ○ 살균실 ○ 냉각실 ○ 접종실 ○ 접종원 배양실 ○ 포장실 ○ 자재실	1,404 145 50 86 100 86 700 80 157	863,460 (1,404×615천원)
○ 접종원 성능검사 실	소 계 ○ 발이실 ○ 억제실 ○ 생육실 ○ 검사분석실	202 54 54 54 40	124,230 (202×615천원)

□ 主要 機資材

區 分	品 名	規 格	數 量	單價(천원)	金額(천원)
計	○ 고압살균기의 33종				782,110
○ 原菌保存	○ 냉동기 ○ 에어크리너 ○ 콘트롤박스 ○ 초저온냉장고 ○ 무균상 ○ 현미경 ○ 고압살균기 ○ 냉장고 ○ 보일러(고압)	10마력 -152℃ 99%여과 카메라부착 125℃ 650 l 0.5T/H	1 1 1 3 2 2 2 4 1	15,000 10,000 3,000 25,000 10,000 10,000 10,000 1,500 10,000	179,000 15,000 10,000 3,000 75,000 20,000 20,000 20,000 6,000 10,000
○ 接種原用	○ 고압살균기 ○ 보일러(고압) ○ 고속체(대형) ○ 믹사(혼합기) ○ 자동입병기 ○ 구멍뚫기 ○ 체인콘베어 ○ 마개기 ○ 후리커브콘베어 ○ 살균기 방냉홀타 ○ 살균기 대차	2,300병형 0.5T/H 1,400x650 3,000병형 220x150 85x160 125x190 20	3 3 1 2 2 2 6 2 3 3 20	20,000 10,000 6,000 11,000 18,000 10,000 1,500 9,600 1,570 5,500 500	233,510 60,000 30,000 6,000 22,000 36,000 20,000 9,000 19,200 4,710 16,600 10,000
○ 冷却室	○ 에어크리너 ○ 냉동기	 20마력	1 1	10,000 30,000	40,000 10,000 30,000
○ 接種室	○ 커브콘베어(소) ○ " (대) ○ 자동접종기 ○ 에어크리너 ○ 핸드드리프터	2m 6m 8구자동	1 1 1 1 2	700 1,600 20,000 10,000 450	33,200 700 1,600 20,000 10,000 900
○ 培養室	○ 가습기 ○ 열교환기 ○ 에어크리너 ○ 냉동기 ○ 콘테이너 ○ 지게차 ○ 보일러 ○ 냉동차	 20마력 16병입 전기용 0.5T/H 3.5톤	16 11 8 3 15,000 1 1 2	600 1,800 10,000 30,000 2 17,000 10,000 20,000	296,400 9,600 19,800 80,000 90,000 30,000 17,000 10,000 40,000

32 화훼계열화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1. 목적

- 목 적 : 대규모 화훼 유리온실단지를 조성하여 종묘연구, 고품질 꽃생산 수출 등을 계열화하여 화훼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도모코자 함

2. 추진방향

- 사업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투자공기업)가 됨
- 생산시설은 생산농민에게 분양 또는 임대
- 종묘생산 및 연구부문과 수출부문은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3. 근거법령 :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제 16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	사 업 내 용	재원별 사업비		
		계	융자(80%)	자부담(20%)
	계	36,700	29,360	7,340
'96	◦ 부지정비, 설계, 기반조성 등	5,000	4,000	1,000
'97	◦ 생산, 유통시설 및 부대시설 건축	30,000	24,000	6,000
'98	◦ 종묘구입비 등	1,700	1,360	340

- 지원비율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거치기간 무이자)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내용>

- '96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추진
- 사업량 및 사업비 : 2개소, 36,700백만원(18,350백만원/개소) <별첨1>
- 개소당 사업규모 : 부지 15ha, 생산·유통 및 부대시설 9ha 등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방식>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 집행절차

농 립 부

: 사업추진 총괄, 사업지침 시달, 사업지구 선정

보고 ↑ ↓ 지침시달

시·도

: 사업신청, 세부사업계획 수립 시행, 사업비 정산

보고 ↑ ↓ 지도·감독

참여주체

: 단지조성, 단지운영관리

<기대효과>

- 규모화된 단지조성으로 수출목적의 체계적인 계획생산으로 수출확대
- 단일 단지내에서 생산, 수집, 수출기능 및 연구, 교육기능 수행으로 경영효율 도모
- 유리온실 설치비 인하로 경제성 제고 및 연관산업의 활성화
- 첨단시설 운영관리기술 및 고도재배기술 등에 관한 연구 및 보급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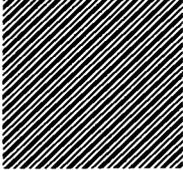
<별첨 1>

화훼수출계열화 사업비 내역

구 분	개소당 사업량	단 가	총사업비
계			백만원 36,700
1. 수출전문단지 조성			35,000
○ 설계감리비		-	1,125
○ 부지임차료	15ha	1,000원/평/년 (20년 임대)	1,800
○ 기반조성			3,675
- 부지정리	15ha	22백만원/ha	660
- 용수개발	3공	70백만원/공	420
- 도로개설	2.5km	99백만원/km	495
- 전기인입 및 변전소			500
- 주거시설	400평	2백만원/평	1,600
○ 생산시설	재배온실 7.5ha	1,350백만원/ha	20,250
(유리온실)	육묘온실 1ha	1,500 “	3,000
○ 유통시설			5,150
- 저온저장고	500평	4.5백만원/평	3,500
- 저온처리실	250평	2.5 “	550
- 집하.선별	250평	1.1 “	400
. 처리장		0.8 “	
- 수송차량	2대	25백만원/대	100
- 선별결속기	2대	150 “	600
2. 운영자금			
- 종구(종묘) 등 자재 구입비		50백만원/ha	1,700

여 백

Ⅱ. 생 산 및 유통 개 선



여 백

33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1. 목 적

- 안정적인 과실생산 기반조성, 생력농기계 및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고품질 과실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고 유통효율을 높여 과수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가와 국제경쟁력 강화

2. 추진방향

-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 및 유통시설을 종합지원(공동과 개인 구분지원)
- 사업대상자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 제2항 제2호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개소 900	150	150	150	150	300
		백만원					
사업비	계	1,404,231	315,231	189,000	222,450	225,000	452,550
	보조	344,986	72,736	47,250	44,490	56,250	124,260
	융자	440,660	113,960	56,700	88,980	67,500	113,520
	지방비	328,836	56,586	47,250	44,490	56,250	124,260
	자부담	289,749	71,949	37,800	44,490	45,000	90,510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대상 : 동일과종 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및 그 회원농가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단가 : 600~3,000백만원/조직
- 지원비율 : 보조 20%, 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세부지원 사업내용 : 붙임

나. '97사업계획(예산)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업량	150	5	3	12	12	14	21	31	16	36
	백만원									
계	222,450	7,415	4,449	17,796	17,796	20,762	31,143	45,973	23,728	53,388
보 조	44,490	1,483	889.8	3,559.2	3,559.2	4,152.4	6,228.6	9,194.6	4,745.6	10,677.6
융 자	88,980	2,966	1,779.6	7,118.4	7,118.4	8,304.8	12,457.2	18,389.2	9,491.2	21,355.2
지방비	44,490	1,483	889.8	3,559.2	3,559.2	4,152.4	6,228.6	9,194.6	4,745.6	10,677.6
자부담	44,490	1,483	889.8	3,559.2	3,559.2	4,152.4	6,228.6	9,194.6	4,745.6	10,677.6

* 1개소당 단가(평균) : 1,483백만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원예특작국 과수화훼과(02-500-2685, 2686)
- 시·도 : (시)농정과 (도)농산물유통과, 농산과, 제주감귤과
- 시·군 : 산업과, 농산과, 농정과

다. 대상자선정

(1) 우선순위

1순위

- 농림부 『과실수출단지 지정요령』에 의거 지정된 수출단지
 -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최대한 반영
- 동일과종 재배면적 20ha이상중 10ha이상을 우량신품종 또는 왜성밀식재 배로 과수원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생산자조직

2순위

- 도이상 또는 수개 시·군 단위로 조직된 생산자조직
 - 조직의 재배면적이 전국재배면적의 20% 이상 되어야 함.

3순위

- 시·군 단위로 조직된 생산자조직

기 타

- 읍·면 단위로 조직된 생산자조직
- ※ 상기 순위중 동일 순위에서는 규격상품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 비율이 높은 조직부터 지원)을 우선적으로 선정

(2) 선정절차

- 선정기관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
- 심의방법
 - 품목별 생산자조직이 신청한 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공개 심의
- 심의시 고려사항
 - 조직의 활성화 정도
 - . 참여농가수, 조직의 규모 등 사업대상자 선정순위의 적합여부
 - . 조직의 운영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 사업비 조달능력
 - . 지방비 확보여부 및 자부담 능력
 - .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대상조직의 부지확보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
 - . 조직의 사업계획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
 - . 저온저장고, 선과장등 공동시설은 활용도제고를 위하여 관내 수급상황을 반드시 판단하여 부족한 경우에만 설치(관내 개별 및 공동시설 현황 첨부)
 - . 사업량 및 단가의 적정성
 - .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여부
- 기타 필요한 사항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수립 : 정부가 제시한 표준사업을 기초로 해당 조직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변경 : 사업추진중 부득이 당초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

(2)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반드시 기성고에 따라 집행(정산시에는 보조금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선정 및 자금관리 철저)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농협(전문농협 포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을 실시하는 생산자조직이 희망하는 용자 취급기관에 용자금 대여
 - 기타사항은 “농특회계 용자업무 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름

- 세부지원사업에 제시된 단가는 기준단가이므로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는 실제가격을 적용하되초과된 경우는 계획사업비내에서 조정하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을 첨부하여야 함.
- 표준사업으로 제시하지 않은 사업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시장·군수가 인정하여야 함.
 - 유통효율 증대와 농가 수취율 제고를 위해 소형 저온저장고, 선과기 등 농가용 유통시설은 지원할 수 없음
 - 수출용봉지, 포장상자 등 수출용 자재는 수출확대를 위하여 농림부 지정 “수출단지”에 한하여 지원
 - 과실 장기수급안정을 위하여 포도, 감귤의 신규과원조성과 모든 과종의 묘목생산비는 지원할 수 없음.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벼이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지원
 -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시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사업은 사업비중 보조부문의 1/2을 용자로 전환
 - '99사업은 보조전액을 용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저온저장고, 선과장, 집하장등 공동사업은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을 반드시 조직명의로 등기하여 사유화 방지
- 모든 사업의 토지구입비는 지원할 수 없음.
- 도시계획법등 관련법에 저촉되어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상자선정 철저

- 농기계, 시설, 자재는 동일품목이 형식검사합격, KS 규격획득등 정부 공인 기관의 인정을 받은 품목이 있는 경우는 인정품목을 우선적으로 공급
 - 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농업기계 “품질보증 대상기종”인 경우에는 한국 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만 구입가능
- SS분무기, 트랙타, 굴삭기 등 농림부에서 지정한 지원대상기종의 보조금 및 융자금은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요령과 같이 공급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음.
 - 보조금 및 융자금의 지불위임장. 신청·지급, 판매대금 중앙결제등 구체적인 사항은 “농기계구입자금지원” 요령에 준함.

(3) 사업기간

- 당해년도 1월 1일~12월 31일
 - 시장·군수는 조직별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시행지침에 부합되면 곧바로 시행토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1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림사업 실시규정에 의함

<주요 재산별 사후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 저온저장고, 선과장 등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	○ 융자금 상환 종결 기간인 10년	○ 사후관리 기간중 부득이한 사유로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	※ 기타 재산은 시장·군수가 지역특성에 맞도록 별도 기준을 정하여 관리
○ 농기계, 차량	○ 농업회사법인 및 공동이용 조직지원 사업에서 규정한 기간과 동일한 5년	○ 사후관리 기간중 노후화, 이농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	

나. 보 고

- 사업추진상황보고[별지 제4호서식] : 연4회(분기말 익월 15일)
- 사업계획변경보고 : 연1회(11월말)
 - 시·도지사의 변경승인은 보고기간과 관계없이 가능
- 보조금정산 및 사업추진결과보고 : 익년도 3월말

다. 기 타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실시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름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 또는 시·군

나. 신청자격

- 동일과종 재배면적이 20ha이상인 법인화된 생산자조직으로 사업추진 능력과 자부담능력이 있어야 함.
-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함
 - 법인경영체 운영실적이 1년이상으로 조합원의 ⅔ 이상이 과수영농경력 3년이상되어야 함.
 -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다. 신청절차

- 생산자조직은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이나 시·군에 신청
 - 회원농가의 개별사업은 생산자조직이 발부한 사업대상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
 - 저온저장고, 선과장등 공동시설은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관내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부족한 경우에만 신청

- 2개 시·군 이상을 관할하는 생산자조직은 전체 사업계획과 별도로 시·군단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각각 신청

라. 구비서류

-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마. 대상자 선정

- '97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실시
 - 본사업 대상지역이 『발기반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군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건설과등)에 신청하여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
 - 『발기반정비사업』을 신청한 대상지역은 본사업 추진기관인 시·군 → 시·도 → 중앙에 계통보고하여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세부지원사업>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기준
<공동시설>				생산자조직에 지원하되 개별농가지원 불가
저온저장고	200평	백만원 2.5	백만원 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100-200평 - 지역여건상 불가피할 경우 50평까지 가능 하나 도지사 확인, 공동재산으로 등록 ○ 저장실은 여건에 맞게 구획 ○ 콤프레서 : 저장실 평당 0.4마력 이상 ○ 에어커튼 설치 ○ 응축기 : 콤프레서와 동일 마력 ○ 가습기 : 저온용(2-3대), 가습기용물. 배관1식(시간당 20ℓ 이상) ○ 메인다트 : 1식 ○ 건물 : 완벽한 단열시공 ○ 전기자동제어시설 1식 ○ 화물차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 도록 시설(지게차로 상하차 실시)
선과장	1동	20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150평 규모 - 제합기,테이핑기,밴딩기,전자저울각 1대 - 벨트 로라, 무구동 로라, 작업대, 선반, 콘베어 각 1식 - 화물차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시설(지게차로 상하차 실시) ○ 선과기:3조식 1대 기준(선과능력 : 3만개 /시간)으로 설치하되 선과물량을 감안 하여 1조식이나 2조식으로도 조정가능 ○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는 기계시설만 설치 가능
집하장	200평	1.0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가는 실구입 가격적용 ○ 건평 200평 ○ 표준설계도기준 (건설교통부공고 제1996-209호 : '96. 7)

세부사업	사업량	단가	사업비	지원기준
공동퇴비장	200평	1,675	3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평 : 200평 ◦ 발효조 시설 : 년산 2,500톤 기준 ◦ 제품보관 및 관리시설 : 1조 ◦ 혼합기 및 스키드로다 : 각 1대 ◦ 톱밥 및 왕겨분쇄기 : 1대 ◦ 콘베어 시스템 : 1조 ◦ 원료투입기 : 1대 ◦ 자동포장기 : 1대
수송차량	1대	10	10	◦ 차종별 실구입가격 적용, 조직당 1대
지게차	1대	15	15	◦ 형식별 실구입가격 적용
콘베어	1대	10	10	◦ 형식별 실구입가격 적용
파레트	400개	0.03	12	◦ 플라스틱 또는 목재 파레트
운반상자	10천개	2.5	25	◦ 20kg들이 플라스틱 제품
<개별사업>		-		생산자조직의 회원농가에 지원
신규개원	10ha	5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경,석회 및 유기물 시용, 배수 (암거, 명거배수시설) ◦ 우량 신품종 또는 왜성밀식
품종갱신	20ha	4	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도, 감귤은 지원불가 ◦ 우량 신품종으로 개식 또는 고접갱신 ◦ 수분수 부족포장 수분수 확보 : 주품종의 15%-20%
배수시설	20ha	3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암거배수(배수로, 집수로 등) ◦ 침수지역 배수로 공사
관정	5공	3	15	◦ 지역실정에 따라 소형 또는 중형 선택
점적관수	10ha	2	20	◦ 점적관비 1식, 액비혼입기 1식
다목적 스프링클러	10ha	7.5	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식 : 노즐 및 노즐대 1식, 펌프1식, 파이프시설 1식 상하이동식 : 탱크용량 3톤 이상, 상하이동거리 80-250cm
모노레일	5ha	10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 : 30° 이상 ◦ 등판능력 : 250kg이상/1회

세부사업	사업량	단 가	사 업 비	지 원 기 준
과원내	7대	0.5~7.3	28	○ 형식별 실구입가격 기준
운반차량				
가지절단기	10대	1.2~1.6	20	○ 형식별 실구입가격 기준
전정목분쇄기	5대	1~35	10	○ 파쇄능력 : 나무직경 7cm이상
반사필름	20ha	0.6	12	○ 반사필름 구입비
부직포	20ha	3	60	○ 부직포 구입비
덕시설	20ha	4	80	○ 풍수피해가 예상되는 과종 우선 지원
비가림시설	10ha	20	200	○ 하우스형 비가림 시설
서리방제시설	1ha	28	28	○ 웬 10개이상/ha, 온도감지장치 및 자동 콘트롤설비
인공수분기	1조	4	4	○ 약채취기, 약정선기, 개약기, 약파기, 화분정선기 등 5종 1조 기준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굴삭기	1대	8.2~ 13.7	13	○ 자체중량 1톤 미만으로 버켓 산적 0.016루베 이상 - 형식별 실구입가격 적용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SS분무기	6대	9.8~ 38.0	72	○ 형식별 실 구입가격 적용, 원거리 고성능 방제기 포함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트랙타	6대	5.5~ 40.5	95	○ 플라워, 로타베이다, 트레일러 등 부속 작업기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승용관리기	6대	14.2~ 19.9	120	○ SS장치, 적재함, 퇴비살포기, 제초기, 로타리, 잔가지파쇄기, 구굴기, 복토기 등 부속작업기에 따른 실 구입가격 적용 - 필요시 공동지원 가능
<수출용자재>				농림부지정 "수출단지"에 한하여 지정
봉지	160만매	0.176	28	○ 수출단지의 계획물량에 의거 지원
포장상자	6만상자	14	84	○ 수입국의 요구에 맞는 포장 ○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 ※ 1. 세부사업별 사업량, 규모, 시설등은 예시기준이므로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조정시에는 시장·군수가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
2. 집행과정에서 기준단가보다 많아지거나 적어질 경우는 실제가격을 적용하되 초과된 경우는 조직에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3. 농업기계는 생산업체에서 농림부에 신고한 형식별 가격기준 적용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발행 "농업기계가격" 참조
- 선택사양품은 자부담

[별지 제1호서식]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신청서

(1) 조직현황

조 직 명								
소 재 지	(주소)			(TEL)				
대 표 자	(성명)			(생년월일)				
설 립 일			설립법적근거					
회 원 수	농가		자 산 규 모		백만원			
관할구역								
과수재배 현 황	계	사과	배					
	면 적 생산량	ha 톤					/	
시설현황	공동시설	저온저장고	선과장	인공수분기	수송차량	교육장	기타	
		평	개소 (톤)	Set	대 (톤)	평		
	개별시설	관수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선과기	기타		
		관 정 : ha 점 적 : 스프링 : 클 러 :	평	평	대 (톤)			
(주) : 1. 선과기()내는 1일 8시간 기준 선과능력 2. 수송차량()내는 보유대수에 대한 적재량을 기재								
기 타 특기사항								

(2)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음자	지방비	자부담
계								
(1) 공동시설 ○○○○								
(2) 개별시설 ○○○○								

- 자부담조달계획
- 건축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계획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3) 향후사업계획

- 조직활성화 방안
- 생산기반시설 확충
- 공동출하 계획
- 기 타

[별지 제2호서식]

사업대상자 추천서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과수재배현황

	계	사과	배				
면적 생산량	ha 톤						

○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규격	단가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 ○○○								

위사람은 (○○○ 조직)의 회원농가로서 조직의 사업계획에 따라 조직과 함께 생산·유통사업을 추진키로 하였으므로 '95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 조직) 대표

[별지 제3호서식]

년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계획

(1) 도 집계표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지 원 농가수
			계	보조	음자	지방비	자부담	
계		-						호 (호)
(1) 공동시설 ○○○○ ○○○○ ○○○○								
(2) 개별시설 ○○○○ ○○○○ ○○○○								

※ ()내 농가수는 공동시설 이용등 지원 혜택을 받는 농가수

(2) 시·군별, 조직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시·군별	조직별	세부 사업명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지원 농가수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합계	-	-		-						호 (호)
○○군	-	계								
		(소 계)								
	○○조직 (과종명)	(1) 공동시설 ○○○○ ○○○○ ○○○○								
		(2) 개별시설 ○○○○ ○○○○ ○○○○								
○○군	-	계								
		(소 계)								
	○○조직 (과종명)	(1) 공동시설 ○○○○ ○○○○ ○○○○								
		(2) 개별시설 ○○○○ ○○○○ ○○○○								

[별지 제4호서식]

(년도, 분기)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추진상황						사업비 집행상황			
		진도별사업량					종합 진도	보조		융자	
		20%	40	60	80	100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						%				
(1) 공동시설 ○○○○ ○○○○ ○○○○											
(2) 개별시설 ○○○○ ○○○○ ○○○○											

※ 주요사업별 공정별 진도 : 별표 1참조

<별표1>

주요사업별 공정별진도

세부사업별	공정별	진도	비 고
저온저장고,선과장등기계설치가 수반되는 건축물	대 상 자 선 정	%	
	10		
	부 지 확 보	20	
	설 계 도 작 성	30	
	건 축 허 가	40	
	업 체 선 정	50	
	기 초 공 사	60	
	골 조 공 사	70	
	지 붕 공 사	80	
	내 부 공 사	90	
기 계 설 치	95		
준 공 검 사	100		
기계설치가 수반되지 않는 건축물	대 상 자 선 정	10	
	10		
	부 지 확 보	20	
	20		
	설 계 도 작 성	30	
	30		
	건 축 허 가	40	
	40		
	업 체 선 정	50	
	50		
기 초 공 사	60		
60			
골 조 공 사	70		
70			
지 붕 공 사	80		
80			
내 부 공 사	90		
90			
기 계 설 치	100		
100			
관 수 시 설	대 상 자 선 정	25	
	25		
	업 체 선 정	50	
	50		
착 공	75		
	100		
	100		
농기계구입	대 상 자 선 정	30	
	30		
	구 입 계 약 체결	70	
70			
기 계 인 수	100		
100			

(주) : 기타사업은 상기유사한 사업에 준함.

34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과입니다.

1. 목 적

- 농촌노동력 부족, 농산물 시장개방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 주산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현대화된 생산·유통시설을 종합 지원함으로써 노력비등 생산비 절감, 단위수량 및 품질제고등 자본·기술집약형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함.

2. 추진방향

- 생산·유통 시설의 집단화,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
- 생산·유통시설 종합지원을 통한 물류비용절감, 유통시설 활용도 제고 및 경영체의 시장교섭력 강화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백만원)

		계	'94-'95	'96	'97 (예산액)	'98	'99-2004
사업량		530	80	50	40	50	310
사업비	계	1,778,148	268,398	167,750	80,520	154,330	1,107,150
	보조	377,438	67,100	41,938	16,104	30,866	221,430
	융자	667,645	80,520	50,325	32,208	61,732	442,860
	지방비	377,438	67,100	41,938	16,104	30,866	221,430
	자부담	355,627	53,678	33,549	16,104	30,866	221,430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배경

- 농촌노동력 부족, 농산물 시장개방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자본과 첨단기술의 집약을 통해 노동력을 대폭 절감하고 전천후 상시농업 및 고부가가치 농업기반을 마련코자 '94부터 주산지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유통시설의 현대화 지원

□ 지원대상지역 및 대상자

< 지원대상지역 >

- 농림부장관이 채소 주산지로 고시한 지역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

- 대구획 재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지역
- 홍수, 산사태등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 시설현대화 사업지역으로 농어촌발전계획에 포함된 지역
- 시설설치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

· 도시계획법, 수도권정비법, 산림법, 상수원관리법 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하여 시설설치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법적제한사항에 대해 해당기관과 사전협의 완료(토지이용계획 확인서등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 농업진흥지역안의 논은 사업지역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사업은 사업비중 보조부분의 1/2을 융자로 전환
- '99사업은 보조전액을 융자로 전환

-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지원을 차등은 없으나 선정시 후순위 부여

< 지원대상자 >

- 조합원(사원)이 5가구 이상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이하 "법인"이라 함)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구성원의 2/3이상이 3년이상 시설채소 재배경력이 있거나 학교, 연구소 또는 지도기관등에서 3년이상 시설원예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으로 구성된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이고, 운영실적이 1년이상된 법인('98이후 적용)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 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하 “농협”이라함)으로서 사업 완료후 직영하거나 농업인에게 임대 또는 분양코자 하는 단체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농협이 적격지원대상자로 추천하는 “선진작목반”
 - 구성원이 10인 이상이고 그 2/3이상이 3년이상 시설채소 재배경력이 있는 조직.
 - 총 기금조성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생산물의 공동출하실적이 연간 1억 원 이상인 조직.
 - 최근 3년간 공동생산, 공동출하등의 조직활동을 계속해온 조직
 - 시설채소관련 교육이수, 관측조사 사업등에 적극 참여해온 조직
- 지원단가 : 3,355백만원/개소당
- 사업기간 : '97.1.1~'98.12.31(2년) / 사업비는 1년차 60%, 2년차 40% 지원
-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보조 20%, 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재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시설별 융자기간
 - 철골(유리, 경질판)온실, 철골온실내의 양액재배시설, 공정육묘장, 예냉시설, 집하장 : 연리 5%,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파이프비닐온실, 파이프비닐온실내의 양액재배시설, 관정, 선별기, 저온수송차량,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비상발전시설, 변전시설, 전기인입 시설 :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소유권 구분
 - 농가 개별소유가 가능한 시설장비 : 온실 및 그 부대장비, 소형관정등 농가가 실제로 개별 사용하고 있는 시설장비
 - 조직 공동소유 시설장비 : 공정육묘장, 산지유통시설(예냉시설, 집하장), 기타 대형 암반관정, 비상발전시설, 변전시설등 공동이용시 활용도가 높은 시설장비

□ 세부사업내역

○ 개소당 표준사업비 내역

세부사업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계			백만원	4,195백만원
○ 생산시설				3,821
- 유리온실	ha	0.5	1,200	600
- 철골경질판온실	ha	1.9	750	1,445
- 파이프비닐온실	ha	3.2	282	902
- 공정육묘장	1,500평/개소	1	800	800
- 관 정	공	2	37	74
○ 산지유통시설				374
- 예냉시설	50평/동	1	125	125
- 집 하 장	150평/동	1	175	175
- 선 별 기	대	2	17	34
- 저온수송차량	5.0톤/대	2	20	40

주) 1. 개소당 지원단가 : 3,355백만원(표준사업비 4,195백만원의 80% 적용)

2. 철골(유리,경질판)온실, 공정육묘장 및 예냉시설 단가에는 설계비 및 감리비 포함

○ 조직의 사업계획은 상기 표준사업비 내역을 참고하여 조직이 필요한 시설유형과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작성

○ 공정육묘장은 시·도별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묘 수급상황, 기존육묘장과의 경합유무등 지역실정을 종합 감안하여 지원 개소수를 조정할 수 있음.

○ 하우스병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온실인근에 일하면서 쉴 수 있는 적정면적의 관리실(작업장)설치 가능

○ 사업비는 지역실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나, 시·도별 전체사업비는 개소단위로 확정되어야 함.

- 예) 2개소, 6,710백만원인 경우 : 1사업지역 4,300백만원+ 1사업지역 2,410

- 집단화사업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철골온실 3,000평 또는 파이프비닐온실 10,000평 이상을 1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양액재배시설, 비상발전시설 등을 설치 지원할 수 있음.
- 집단화를 위한 토지임대의 경우에는 장기임대 조건으로 허용
 - 임대기간은 사업별로 용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철골온실 20년, 파이프비닐온실은 10년이며, 임대시 공중계약등 필요조치 강구
- 사업신청서 제출시 집단화 정도를 알수있도록 지적도에 참여조직별 사업지역을 정확히 표기하여 제출
- 사업비로 토지구입 및 유기농산물 생산관련시설은 설치할 수 없음.
 - 유기농산물 생산관련시설은 “중소농 고품질농산물 생산지원사업”으로 추진
- 기반정비(농로개설, 발경지정리등)가 필요한 지역은 발기반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 대상지역은 시·군 발기반정비 담당부서(건설과)에 사업신청
 - 시·군 건설과는 산업과와 협의, 발기반정비 예정지 보고시 우선 시행지구로 선정
 - 예정지 조사보고시 수평정지계획 포함 신청
 - 해당 시·군은 시·도 및 농림부에 계통 보고
- 관정개발시는 지하수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11.12) 『관정의 개발.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및 유자격 민간 관정개발업체에 의뢰하여 기초 조사후 시추하여야 함.
 - 관정개발전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작물재배 적합여부를 판단
- 시설이 분산된 경우에는 『소형관정』을, 집단화된 곳은 『암반관정』을 개발
 - 암반(공동)관정의 사업비는 개발심도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비는 수혜자가 공동부담
-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 기존 시설채소주산지역 시설개선
 - 시·도지사는 기존 재래식온실의 개량사업을 할 경우 시·군단위 지역특화사업으로 일괄 시행
 - 시장·군수는 설치할 기종, 경제성등을 면밀히 검토, 사후관리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실있게 추진

- 개선대상사업 : 노동투하량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내용연수가 긴 자동화 개폐장치, 관비장치, 수막시설 등의 설치
 - 사업계획은 사전에 농림부와 협의를 거쳐야 함.
 - 단위사업내용 및 단가
 - 기본시설을 제외한 장비 및 기기는 농가 선택사양으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종 설치 가능
 - 사업비는 당해 기준사업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초과될 경우에는 자담으로 설치해야 함. 또한 설치단가 인하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남을 경우에는 자동화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및 구입에 활용가능
- [유리온실]

구 분	규 격	기 준	기준사업비
계			400천원/평
○ 기본시설 - 기초, 철골, 알미늄, 피복, 천, 측창개폐, 방충망, 강제환기장치, 관비장치, 난방장치, 복합환경제어장치 ○ 장비 및 기기 - 방제기 - CO ₂ 발생기 - 토양소득기 - 기화냉각장치 - 운반차 -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철골유리온실	0.2~0.5ha/호 농가 선택사양 1대/호 1대/300평 1대/호 1대/900평 1대/호 1대/호	

[철골경질판온실]

구 분	규 격	기 준	기준사업비
계			250천원/평
○ 기본시설 - 기초, 철골, 알미늄, 피복, 천, 측창개폐장치, 강제환기장치, 온풍난방기, 집중콘드롤장치 ○ 장비 및 기기 - CO ₂ 발생기 - 무인방제기 - 토양소득기(배지경재배용) -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운반차	철골유리온실	0.2~0.5ha/호 농가 선택사양 1대/300평 1대/호 " "	

[파이프비닐온실]

구 분	규 격	기 준	기준사업비
계			94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조, 피복, 지붕1.2중 및 측면개폐장치, 수평커튼장치, 집중콘드롤장치, 온풍난방기 ○ 장비 및 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₂ 발생기 - 무인방제기 - 토양소득기(배지경제배용) -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 운반차 	파이프비닐온실	0.3~0.5ha/호 농가 선택사양 1대/300평 1대/호 “ “ “	

[공정육묘장]

구 분	규 격	기 준	기준사업비
계			533천원/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육묘장 ○ 상토혼합기 ○ 자동파종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토공급기 - 상토충전기 - 진압 및 파종기 - 복토기 - 관수기 - 콤프레샤 ○ 운반대차 ○ 발아실 ○ 자동시비, 관수장치 ○ 환경제어장치 ○ 벤치시설 ○ 베드자동이동라인 	철골유리온실 25단x2열 온습도,광조절가능12평 자주식살수장치 복합환경조절가능(전기식) 이동식	1,500평 1대 1set 40대 1실 1set 1set 920평 1대	

[산지유통시설]

구 분	규 격	기 준	단 가	기준사업비
○ 예냉시설	차압식	50평/동	2,500천원	125,000천원 34,000
○ 집 하 장	철근콘크리트	150평/동	설계단가	
○ 선 별 기	전자식 또는 기계식	2대	17,000	
○ 저온수송차량	2.5톤 이상	2대	시 가	

※ 집하장 설치비는 건교부 공고 제1996-209호 『가변형 농산물 간이집하장 표준설계도』의 각 시설유형과 평형(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관 정]

구 분	시 설 규 모		채수량	관개면적	기준사업비
	구 경	심 도			
○ 암반관정	200mm	50~150m내외	200m ³ /1일이상	3ha이상	37,000천원/공
○ 소형관정	40	18	50	0.5ha이상	700

※ 해안.산간지의 암반관정 채수량은 10m³/1일 이상을 기준으로 함.

[집단화사업지역 인센티브사업]

구 분	단위	기 준	단 가	기준사업비	비 고
○ 양액재배시설	평	1,500/농가	천원 50	천원 75,000	집단화된 사업지역의 인센티브 지원 에 한함.
○ 비상발전시설	set	1/단지별	25,000	25,000	
○ 변전시설	set	1/단지별	30,000	30,000	
○ 반출도로개설 및 보수	km	2/ “	90,000	180,000	
○ 전기인입	km	2/ “	44,000	88,000	

- 주) 1. 양액재배시설은 고품배지경(순환식)재배 기준으로 양액자동조절 시스템이 포함된 반면, 설계.감리비는 미포함, 반출도로는 설계비만 포함됨.
2. 전기인입은 한국전력(주)의 전기공급규정에 의한 단가임.

□ 수출단지 지정

<선정기준>

- 대상품목 : 내수기반이 있고 품질 및 가격경쟁력이 있어 수출가능성이 큰 품목(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메론, 가지등)
- 대상지역 : 다음 조건을 1개이상 충족하는 지역
 - 집단화, 규모화가 이루어져 일정 수출물량 확보가 가능한 지역
 - 재배기술 및 품질관리수준이 높고 전문화가 되어있어 수출규격품 생산이 가능한 지역
 - 생산자조직의 활동이 활발하며, 시설현대화에 대한 의욕이 높고 단지 규모 확대 여건이 조성된 지역

<선정절차>

- 시·도지사는 수출단지 신청지역을 실사한 후 수출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 농림부에 신청
- 농림부는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의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연차별 수출단지 조성계획을 감안, 대상지역 확정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등>

- 수출단지 조성지원 자금을 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세부지원방법 및 단지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지원·관리
 - 민간수출업체와 수출물량 공급계약체결 지원
 - 수출촉진자금 및 포장자재비 우선 지원
 - 전담기술지도사 배치등
- 사업추진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준하여 시행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시·도지사(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시·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개소 40	백만원 80,520	48,312	16,104	32,208	16,104	16,104
경 기	2	4,026	2,416	805	1,611	805	805
강 원	3	6,039	3,623	1,208	2,415	1,208	1,208
충 북	2	4,026	2,416	805	1,611	805	805
충 남	2.5	5,033	3,020	1,007	2,013	1,006	1,007
전 북	5.5	11,071	6,642	2,214	4,428	2,214	2,215
전 남	10	20,130	12,078	4,026	8,052	4,026	4,026
경 북	4	8,052	4,831	1,610	3,221	1,611	1,610
경 남	8	16,104	9,662	3,221	6,441	3,221	3,221
제 주	3	6,039,	3,624	1,208	2,416	1,208	1,207

※ 융자조건 : 연리 5%, 3년 거치후 7~17년 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과 ☎(02)500-2683/4
- 시·도 : 농정(산)과, 농산물유통과, 유통특작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적격대상지역 및 대상자중에서 아래 우선순위를 계량화하여 현지실사후 선정

(2) 우선순위

- 집단화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조직
- 자본금(기금) 규모가 크고 경영실적이 우수한 조직
- 수출전문단지를 조성코자 하는 조직
- 전문교육을 이수한 회원이 많이 있는 조직
- 규격상품을 출하하는 우수조직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조직부터 지원
- ※ 사업대상지역이 논인 경우는 후순위 부여

(3) 선정절차

◦ 사업신청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협동조직이 자율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와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군·구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 대상지역 및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가린후 실시규정 및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 정밀검토 및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확정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 공개심의 조정
- 시·도 : 시·군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심사
- 농림부 :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 통보
- ※ 시장·군수는 유리온실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조직에 대해서 조직구성원 1인이상을 농어촌진흥공사 광양유리온실에서 실시하는 「온실운영관리교육」을 이수토록 함.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자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참조,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수립(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유리온실은 설치비용과 경영비가 많이 들므로 본인의 자본능력, 경영 및 기술수준, 재배작목등을 정밀검토하여 선택하고 다적설지대, 태풍상습지, 연약지반, 상습안개지대 및 평균기온이 낮아 난방비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유리온실 설치 지양
- 표준단위사업이외의 사업도 가능하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객관적인 단가와 사업 필요성 제시
- 개소당 세부사업내용은 생산자조직이 자율로 선택가능하나, 기존시설 활용도를 감안하여 생산·유통시설을 균형있게 설치
 - 농가당 온실면적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600~1,500평), 파이프비닐온실(900~1,500평)
 - 기타세부사업 :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조정 가능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할 사유발생시 변경절차
 - 사업시행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변경승인시에는 지체없이 변경사유 첨부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 사업단가와 지원기준은 변경할 수 없으나, 온실부대장치 및 기계구입 단가는 선택기준에 따라 변경가능

(3)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 : 예산확보 및 사업자금 배정
- 시·도 : 사업대상자 교부금 결정
- 시·군 : 기성고에 따라 자금 집행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전문농협)
- 용자절차
 - 용자대상자 및 공사기성고 통보 : 시장·군수가 농협장에게 통보[별지 제1호서식]
 - 용자조치 : 농협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용자실행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
- 담보실행 및 기타사항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름

(4) 기타사항

□ 기관별 업무분담 내용

- 농림부 : 지침시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자교육, 사업종합조정 및 총괄지도
- 농촌진흥청 : 표준설계도 및 표준모델 개발, 온실설치 작물재배 및 규격상품생산 기술지도,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성과(경영)분석
 - 농촌지도소 : 전담지도사 배치, 경영 및 기술지도, 사업성 검토서 작성
- 시·도 : 사업지구 타당성 검토 및 계획조정(변경), 시·군별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도 기술지원단 운영, 사업추진 감독 및 진도보고
- 시·군 : 합동실무검토반 구성 운영, 사업신청서 접수·심사·후보지구 선정 보고(사업성 검토의뢰 및 신용조사 의뢰), 사업대상자 확정,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지도·감독 및 상황보고, 기성 및 준공업무, 사업비 집행·정산, 경영성과 분석등 사후관리
- 국립농산물검사소 : 규격출하지도 및 평가, 자율검사원교육, 채소류 안전성검사 및 지도, 품질인증제 실시등
- 농협중앙회 : 용자실행 및 후취담보, 계통출하 및 판매지원, 상표개발지원, 출하조직육성, 시설원에 전산화 및 관측정보 제공
 - 지역농협 : 신용조사서 작성
- 농어촌진흥공사 : 표준설계도 및 모델개발,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 기성검사 및 준공업무 지원, 시설관리 대농민 기술교육·지도, 용수개발, 시설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추진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수출시장 개척, 수출업무 지원, 수출관련교육 및 자금지원,

- (사)대한온실산업협회 : 시공기술 개발.보급, 온실기자재 가격조사, 시공업체(회원사)지도.감독, 온실기자재 공동구매.보급, 시공업체의 시공능력 조사, 시공능력확인서 발급, 시설자재 규격화.국산화 이행, 부실시공 및 불공정사례(업체) 고발센터 설치 운영, A/S센터 설치운영
-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수립, 시설채소관련 교육이수, 사업시행, 경영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7,8호서식), 규격품 및 안전농산물 생산출하등

□ 설계, 시공업체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

< 설 계 >

- 철골온실(유리,경질판)
 - 실시설계도서 : 농림부제정 “온실구조설계기준” (‘95.4)을 기준으로 설계기관이 현장에 맞게 작성한 실시설계도서(설계도, 내역서, 시방서) 또는 건설교통부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설계도서
- ※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방서 및 공사비명세서에 사업자 자부담 내용을 별도로 명기
 - 설계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
 - 설계비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1993-277호)의 75% 적용
 - 설계계약 : 시장·군수 입회하에 사업자 대표와 설계기관이 계약(가계약 불인정)
 - 설계비 지급 :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 자부담분으로 설계도서가 납품되는 즉시 설계기관에 지급
- 파이프비닐온실
 - 기준설계도 : 농촌진흥청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도』
 - 시공도서 : 기준설계도를 기초로 시공업체가 현장에 맞게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음.

- 예냉시설 : 농업과학기술원 및 한국식품개발연구소가 개발한 『예냉시설 표준설계도』를 기준하여 지역여건에 맞도록 작성
- 집하장 : 『가변형 농산물 간이집하장 표준설계도』 (건설교통부 공고 제 1996-209호) 기준
- 양액재배시설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개발한 『양액재배시설 표준설계도』
- 기타 : 비상발전시설 및 변전시설, 전기인입은 전기사업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유자격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
- 설계 또는 설계변경시 고려사항
 - 단위사업 기준단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함
 - 낙뢰등 돌발재해 대비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
 - 국산자재 사용비율은 총자재비의 60%이상 되도록 지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권장
- ※ 농업기계 품질보증제도 대상 부대장치 및 기기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임

< 시공업체선정 >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 시공업체는 사업지역별로 선정계약(시공업체 선정방법은 별도 시달)
- 기타시설 :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가 선정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온실 : 건설업법에 의거 온실설치공사업 면허를 가진 자로서 (사)대한온실산업협회(이하 “온실협회”라 함)가 운영하는 고객서비스(통합A/S망)단체 보증협약에 가입한 자
 - 관정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유자격 민간관정 개발업체
 - 기타시설 : 설치할 시설의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
- 시공능력 확인 : 시장·군수는 철골온실의 시공업체 선정업무와 철골온실을 제외한 기타시설의 계약승인시 시공업체로부터 온실협회 회장이 발행한 업체별 『시공능력확인서 이하 “확인서”라 함』[별지 제4호서식]를 제공받아 시공능력을 정밀 검토하여 사업수행

- 시장·군수가 당해 업체의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시공능력을 초과한 과다수주, 부실시공한 경력이 있는등 부적격 업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업체 교체
- 확인서 발급 : 온실협회회장은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가 당해 업체를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객관화된 정보제공
- 시공능력 공시제도 도입('97.7.1이후 실시예정) : 시장·군수 및 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시공업체의 자본금, 건설공사 실적등을 평가하여 업체 선정

< 계약시 주의사항 >

- 시공계약은 온실건설공사 표준계약조건에 따라 체결
- 시장·군수의 입회하에 계약하되 세부사업의 공종별로 별개의 시공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함 (전기공사는 예외)
- 부대장치 및 기기는 농업기계 표준계약서에 따라 구입계약 체결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는 계약이행 및 하자이행 보증증권 징구 면제
- 하자보수 보증금 및 하자보증기간 명시등 시설물의 A/S관련사항을 명확히 할 것

< 사업착공 >

- 사업대상자 확정후 3개월 이내에 시설설계 계약을 완료하고, 6개월 이내에 설계도서에 의거 사업을 착공하되 사업대상자가 6개월내에 사업착공을 못할 경우 시장·군수는 대상자 변경 또는 사업반납 조치

< 시 공 >

- 자재의 규격화·국산화 촉진 및 『통합 A/S망』 구축을 위해 철골, 유리, 알루미늄바등의 시설자재 공동구매 장려
- 시공업체는 건설공사에 실제 참여한 작업반장, 기능공, 장비임대업자등의 명단을 공사현장에 게시
- 시설기자재는 규격기준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KT,EM마크) 제품 우선사용
- 공사현장 기술자중 1인 이상은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온실협회의 시공전문기술교육을 필한 자로 함

< 공사감리 >

- 시공업체는 시공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음.
- 감리대상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공정육묘장, 예냉시설

- 감리기관 : 온실[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 업체)], 저온저장고(시설설계업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 감리계약 : 시장·군수입회하에 사업자 대표와 감리기관간에 계약체결
- 감리수행 : 농림부의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거 감리
 - 채소 51240-127('95.3.22)참고

- 감리비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건설교통부 공고 제1993-277호)의 75% 적용
- 감리비지급 : 사업비 정산시 시장·군수의 책임하에 사업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보조금에서 감리기관에 지급

-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사장등 감리감독 기관장은 부실시공 또는 불공정행위업체에 대하여 하자보수, 재시공명령 또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 사업참여 제한
-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담당

□ 사업비 관리 및 집행.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모든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시·군등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자부담 비율이 20%를 초과하고,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부담금의 50%를 사업 착수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50% 공정시부터 집행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착수시 부터 전액 집행

- 시장·군수는 감리자가 확인한 공사 기성고에 따라 생산자대표가 시공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입회
- 시장·군수는 사업자가 사업자금을 부당사용한 경우, 부당사용한 금액의 회수는 물론 그 금액의 크기에 따라 1~5년간 사업자금 지원 중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경영장부 기록 비치, 사업진행상황 및 경영성과 분석평가, 재배기술, 시설 운영관리 및 경영교육 참가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 감독의 책임을 짐
 - 농림사업실시규정 별표2의 농림사업 안내문 표지설치
 - 연 2회이상 시설물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시공 업체 또는 온실협회에 통보
 - 사업자의 경영지도 및 경영장부 기록상태 수시확인
 - 시설물이 지원목적외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실천계획 수립시행
- 온실협회는 A/S 단체협약에 가입된 업체들로 『통합 A/S망』을 구성하여 시설물 하자발생시 신속히 수리
- 시·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 감독
- 농촌진흥청장은 사업지역에 전담지도사를 배치, 작형·작목선택 지도, 경영 실태 파악 및 경영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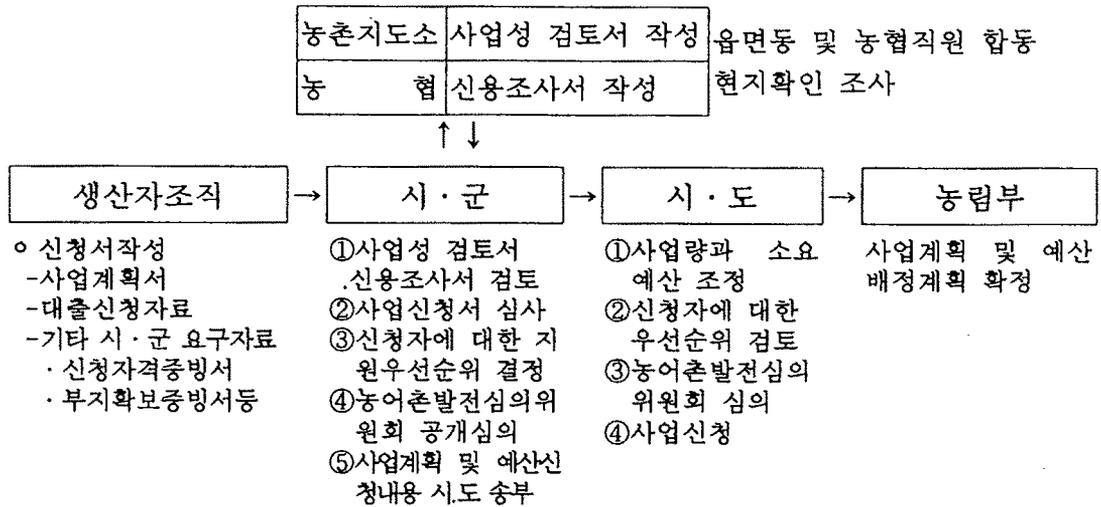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사업명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기타필요사항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 철골(유리,경질판)온실 및 그 부속물 · 공정육묘장 · 예냉시설 · 집 하 장	완공일로부터 20년 “ “	사후관리기간중 법인의 파산,해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할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	사후관리기간중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재산의 증감액과 현재액 및 사후관리사항등을 기록
	· 파이프비닐온실 및 그 부속물 · 비상발전시설 및 변전시설 · 선별기 · 저온수송차량	완공일로부터 10년 구입일로부터 4년		

나. 보고, 기타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조직은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보고하지 않은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2호서식]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별지 제3호서식] : 사업 익년도 3월 20일까지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나. 신청자격 : 본 사업시행지침 “5.<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지원대상자>” 자
격요건을 갖춘 자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97.1.31일까지 사업신청서 제출

- “5.<행정사항> 다.항” 내용과 동일

라.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우선순위, 선정절차 : “5.<추진체계> 다.항 내용과 동일

마.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실시

- 본사업 대상지역중 『발기반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군 발기
반정비사업 담당부서(건설과등)에 신청하여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
- 『발기반정비사업』을 신청한 대상지역은 본사업 추진기관인 시·군 →
시·도 → 중앙에 계통 보고하여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별지 제1호서식]

기성고 확인서

(여신관리자금 인출용)

1. 사업명 : '97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2. 사업자

○ 주소 :

○ 성명 :

(사업지역 :

○ 주민등록번호 :

)

3.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 업 비					비 고
	계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4. 사업실적(199 년 월 일 현재)

세부사업명	총사업비(A) 원	사 업 비 지 원			비 고 (B/A)%
		기지원	금회지원	지원누계(B)	

5. 입금통장 번호 :

위 사업자 기성고에 따른 금회지원분(용자금)을 통장에 입금할 것을 통보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시장(군수) (직인)

농협장 귀하

☐ 여신관리자금 지급액 산출(대출 취급기관 기재사항)

사업추진비율 (C=B/A)	용 자 금 (D)	여신관리자금 지급 해당액 (E=CxD)	여신관리기금 기 지급액 (F)	여신관리자금 금차지급액 (E-F)

※ 본 확인서는 용자관련 서류에 편철 보관함.

[별지 제2호서식]

()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대상지역 : ○○ 도 □□ 시(군) △△읍(면) ▽▽ 리(동) ◁▷ 번지
2. 사업자 : ○○○○ 법인(작목반), 대표 □□□ (외 △ 개 법인(작목반))
3. 사업진도(총괄)

(단위 : 천원)

	사업 량	사업진도		사 업 비 집 행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가. 생산시설			%					
·								
·								
·								
나. 유통시설								
·								
·								
·								

- 주1) 주요추진내역 난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명, 착공, 건물공사 착수등
주요 작업실시 내용 및 일자표시
- 주2) 사업지역이 2개소 이상인 시·군은 본 총괄표외에 사업지역별 추진상황을
위 양식에 맞추어 별도 작성.첨부

4. 금후 사업추진일정
5.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6. 기타 참고사항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정산실적 보고

(단위 : 천원)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사업비										비고				
						계 획					집행실적(정산)									
		세부사업명	계획(A)	실적(B)	대비(B/A)	계	보조(C)	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D)	용자	지방비	자부담	대비(D/C)	차년도이월액	불용또는집행잔액	착공일	준공일
합계			평대(m)	평대(m)	%										%					

(작성요령)

- 세부사업명 :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을 구분하고 각종 기계·장치별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구분하여 작성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과입니다.

1. 목 적

- 양념채소류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 및 산지유통시설을 현대화 함으로써 양념채소류 품질 및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생산자조직과 이에 가입한 농업인을 적극 지원하는것임

2. 추진방향

-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 집하, 선별, 저장시설등을 종합지원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할수 있도록 메뉴방식으로 사업추진
- 자율적인 사업추진과 시장·유통을 주도할 품목별 생산자 조직에 중점 지원
- 연차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기 지원했던 조직(지역)도 추가지원 가능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48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4-'95	'96	'97	'98	'99 - 2004
사 업 량		개소 170	20	10	10	10	120
사 업 비	계	555,560	65,360	32,680	32,680	32,680	392,160
	보 조	116,014	16,340	8,170	6,536	6,536	78,432
	용 자	212,420	19,608	9,804	13,072	13,072	156,864
	지방비	116,014	16,340	8,170	6,536	6,536	78,432
	자부담	111,112	13,072	6,536	6,536	6,536	78,432

※ 자금지원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대상지역 및 대상자

- 대상지역 :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주산단지(고추, 마늘, 양파, 파)와 읍·면당 30ha이상 재배지역(생강, 쪽파)
- 대 상 자 : 대상지역 해당품목의 생산자조직과 이에 가입한 농업인

(2) 개소당 단위사업내용 및 단가

세부사업명	단 위	단 가	기준사업량		비 고
			사업량	사업비	
합 계		백만원		백만원 4,087	○ 1,000ha 기준 ○ 지원한도 : 3,268 백만원
○ 밭 정지사업	ha	15.0	20	300	
○ 관수시설	ha	6.5	56	364	
○ 비가림재배시설	ha	55.0	35	1,925	
○ 건가시설	개소(20평)	4.0	48	192	
○ 이식기(정식기)	대	2.5	8	20	
○ 고추세척기	대	1.5	20	30	
○ 고추건조기	대	2.5	25	62	
○ 방제기	대	4.8	5	24	
○ 관리기및작업기	대	1.7	15	26	
○ 육묘시설	개소(200평)	14.4	10	144	
○ 종합처리시설	개소	1,000	1	1,000	

주) 기타사업은 품목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되, 사업단가는 객관적인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산출근거 자료 첨부

(3)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보조 20%, 융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1) 예산 지원 규모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개소 10	백만원 32,680	19,608	6,536	13,072	6,536	6,536

(2) 시도별 지원계획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합 계	농 특 회 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전 국	개소 10	백만원 32,680	19,608	6,536	13,072	6,536	6,536
강 원	0.5	1,634	980.4	326.8	653.6	326.8	326.8
충 북	1	3,268	1,960.8	653.6	1,307.2	653.6	653.6
충 남	1.5	4,902	2,941.2	980.4	1,960.8	980.4	980.4
전 북	1.5	4,902	2,941.2	980.4	1,960.8	980.4	980.4
전 남	2.5	8,170	4,902.0	1,634.0	3,268.0	1,634.0	1,634.0
경 북	3	9,804	5,882.4	1,960.8	3,921.6	1,960.8	1,960.8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원예특작국 채소과 (02)500-2683/4
- 시·도 : 도청 농산물유통과
- 시·군 : 군청 산업과

다.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영농조합법인과 광역조직(군단위 이상) 및 이에 가입한 생산자조직 단, 영농조합법인은 다음조건을 모두 갖출 경우 우선으로 함 ('98이후 적용)
 -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고 구성원 2/3이상인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이상인 법인
 - 총 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하여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종합처리시설등 유통시설은 법인경영체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 지원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양념채소 재배면적 비율이 높은 지역의 조직
- 지역실정으로 볼때 필요성이 높고 적합한 사업을 시행하는 조직
- 생산물의 규격상품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
 - 국립농산물검사소의 품질인증 획득여부
 -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조직부터 지원
- 세부사업별 대상자 선정이 적합한 조직
 - 사업대상자로서 경영능력, 계획의 합리성
 - 사업목적과 다르게 시설.기자재를 사용할 우려가 없는자
 - 생산자조직의 우선순위 조건에 합당한 농업인
 - 양념채소 전업농규모 농업인
 - 생산자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농업인
- 부지, 사업자금(지방비, 융자담보, 자부담) 적기확보, 인.허가등 원활한 사업집행이 가능한 조직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벼이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지원
 -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사업은 사업비중 보조부문의 1/2을 융자로 전환
 - '99사업은 보조전액을 융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공동이용사업신청 비중이 높은 조직(부지, 시설물, 기자재의 소유를 공동명의로 하는 조건)
- 기타 지역별로 필요한 사항

(2) 선정절차

- 상기 조건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우선순위 평가표를 작성
- 농림사업실시규정 총칙에 따라 사업신청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사업량이 결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조직(지역)을 확정

라.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1) 사업계획 수립시 고려할 사항

- 모든사업을 전량 실시할 경우 사업비 누계액은 4,087백만원이나, 기존에 일부시설이 설치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비 누계액의 80% 수준인 3,268백만원을 개소당 지원 한도액으로 책정
- 품목별 주산지에 필요성이 높은 세부사업 및 사업량을 자율적으로 선택 하되 정부보조, 융자비율 및 단가는 변경할 수 없으며, 생산·유통분야 균형 개발을 위해 가급적 특정사업 편중 신청 지양
 - 시설과잉이 예상되는 저온저장고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억제
- 품목 또는 지역특성상 필요할 경우 단위사업내용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 이경우 객관적인 견적서, 원가계산서등 사업단가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시·도지사가 승인하고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주산지 시·군별 재배규모에 따라 1개사업 지원액을 2~3개 시·군에 분할 지원 가능함
 - 사업을 분할 지원할 경우 가급적 분할 개소당 사업비가 균등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
- 가급적이면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시행을 지양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및 소기의 사업 성과를 얻을 있도록 추진

(2) 세부사업별 시설기준

(가) 기본지침

- 시설업체는 관련 면허소지자를 선정하고, 시설물은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등 관련 법규에 적합하도록 건설 또는 설치
- 시설용 기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공인시험기관 검사합격품을 사용
- 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농업기계 품질보증 대상기종인 경우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만 구입가능
- 사업별 시설기준은 다음항에 의하되, 품목 및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동등이상의 규격 또는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이경우 보조단가는 변경할 수 없음.

(나) 세부사업별 시설기준(규격)

□ 밭 정지사업

- 사업단가 : 시가(최고한도 30,000천원/ha)
- 시설기준 : 밭 경지정리사업에 준하여 구배정리등 비가림시설,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정리하는 사업으로서 기술적인 사항, 경지여건별 사업단가 결정등을 시·군 건설과 또는 농지개발조합의 자문을 받도록 함.

□ 관수시설

- 사업단가 : 6,500 천원/ ha
- 시설내역 : 착정(관정), 양수시설(양수기와 모터 또는 엔진), 이용시설(스프링클러 또는 점적)
- 시설기준
 - 지하수여건, 관개면적등을 감안 현지실정에 적합하게 설치하되, 가능한한 규모화가 되도록 인접 필지 소유농업인과 공동으로 설치
 - 이용시설은 점적식 또는 스프링클러식, 고정식 또는 이동식중 현지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
 - 시설내역의 일부만 지원코자 할때는 세부단가를 정하여 시행 가능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생산자조직(농업인)의 요청이 있을경우, 농어촌진흥공사(지사)등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관수시설 설계와 시공을 담당토록 조치

□ 비가림재배시설

- 사업단가 : 55,000천원/ha
- 농가별 지원한도 : 최하 300평, 최고 1,500 평
- 시설내역 : 펜타이트(파이프) 비닐온실, 측면개폐장치
- 시설기준 :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재배를 위한 하우스시설로서 시·군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 자문

□ 건가시설

- 사업단가 : 4,000 천원/20평 개소
- 농가별 지원한도 : 20 평
- 시설기준 : 목조, 철골조 또는 브릭조 건물및 건조대
- 시설 설계도 : 지역단위로 실정에 맞는 표준설계도를 작성 시행

□ 농기계류

○ 기종별 사업단가 및 규격

	규격	사업단가	비고
이식기	독립형	천원 2,500	
세척기	시간당 500kg 처리	1,500	○ 고추 세척기
건조기	건조실 면적 2.0평	3,000	○ 고추 건조기
	" 1.5평	2,500	
	" 0.8-1.0	2,200	
방제기	원거리용	9,800	
	무인자동	4,800	
관리기및 작업기	본체및 기본작업기	1,400	
	휴립기	130	
	휴립피복기	280	
	비닐피복기	160	

- 농가당 지원한도 : 기종별 1대이며 농업기계가격(농기계공업협회 발행)을 참조하여 사업단가 범위내에서 지원

□ 육묘시설

- 사업단가 : 72천원/평
- 생산조직당 : 1,500 평
- 용도 : 고추 육묘용
- 시설기준 : 비닐온실, 온풍난방기, 관수시설
 - 농촌진흥청 농가보급형 자동화 하우스 표준모델 1-2W형을 준용하여 설치

□ 산지 종합처리시설

- 조건 : 공동소유(부지,건물,기자재)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단가 : 1,000,000천원/개소
- 시설내역 : 선별.포장시설, 집하장등 산지유통시설과 지게차, 운반용기등 기자재(부지구입비 제외)
- 시설내역별 지원단가 및 설치기준
 - 시설규모는 품목별 지역별 여건을 감안 자율적으로 결정
 - 개소당 사업단가(10억원)이상일 경우는 시·도지사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조치

	사업단가	시 설 내 역
○ 집하 및 선별장	설계도 참조	○“가변형 농산물 간이집하장 표준설계도”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6-209호)
○ 부대 기자재		○ 시설 설치시만 선택 가능
- 선별·포장기	시 가] ○ 선별장, 집하장당 각1대 한도
- 지게차,수송차	시 가	
- 팔레트,운반용기	시 가	

마. 사업계획의 변경등

(1)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 승인요청 하되, 생산시설의 사업대상자 변경등 경미한 사항은 시장·군수가 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지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2)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사후관리 책임자 : 시·도지사(시장·군수)

- 시설, 장비, 기기등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바를 따름.

(2)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수시설 ◦ 비가림재배시설 ◦ 이식기(정식기) ◦ 고추세척기 ◦ 고추건조기 ◦ 기타 농기계류 ◦ 육묘시설 ◦ 종합처리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공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관수 이용 시설은 3년) ◦ 완공일로부터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중 사업대상자의 파산, 해산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해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지원액 및 사후관리 사항등을 기록

나. 보 고

- 사업계획서 제출 : 1월 말까지[별지 제1호서식]
- 사업진도 보고 : 매분기 익월10일까지
- 보조금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 사업의년도 3월 20일까지
 - 보고양식은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과 동일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나. 신청자격 : 대상지역에 소재한 양념채소 생산자조직

다. 신청절차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총칙에서 정한 신청서
- 양념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사업대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근거(필요시)

마. 대상자선정

- '97 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실시
 - 본사업 대상지역이 『발기반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군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건설과등)에 신청하여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
 - 『발기반정비사업』을 신청한 대상지역은 본사업 추진기관인 시·군 → 시·도 → 중앙에 계통 보고하여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별지 제1호서식]

양념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대상지역 현황

- 사업 대상 지역 : ○○도 □□군
- 대상 작목 생산현황

사업지역	대상작목	재배면적	농가호수	생 산 량	주산지지정여부
계		ha	호	톤	
○ ○ 읍					
○ ○ 면					
○ ○ 면					
○ ○ 면					

2. 생산자조직 현황

조 직 명	사무소 위치	대표자	전화번호	설립일	조직원수
					명

3. 생산자조직 활동상황

- 조직형태, 조직규모, 등기일
-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 자본금, 공동작업·구매·판매등 사업실적
- 생산물 규격화 실적

4. 사업 실시계획

가. 사업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 량	사 업 비					지원 농가 수
				계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밭정지사업	ha								
○ 관 수 시 설	ha								
○ 비가림재배시설	ha								
○ 건 가 시 설	개소								
○ 이식기(독립형)	대								
○ 고추세척기	대								
○ 고추건조기	대								
- 2.0평형	대								
- 1.5평형	대								
- 0.8-1.0평형	대								
○ 방제기	대								
- 관리기및작업기	대								
○ 육묘시설	평								
○ 종합처리시설	개소								
- 집하및선별장	평								
- 부대기자재									
. 지게차	대								
. 수송차	대								
. 선별포장기	대								
○ 기 타									
-									

주) 세부사업에 예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사업에 포함

나. 공동사업 설치·구입 계획

공동사업명	위 치 (면. 리)	지목	규 모			운영주체	참여 농가수
			부 지 평	시 설 평	기 자 재 대		
○ - -							
○ - -							

- 자부담 조달 및 용자담보 계획
- 부지 확보 계획 및 관련법규상 해당시설물 설치가능성
- 사업추진 일정
- 활용계획

다. 생산자 조직별 세부내역

조직명	농가명	주소 또는 지번(지목)	세부 사업명	사업량	총사업비 천원	보 조	용 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천원				
○○○ 조 직(품목 명)	소계								
○○○ 조 직(품목 명)	소계								

주) 대상농가가 많을 경우 중앙보고서 농가명란에 농가수로 기재 가능

36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과입니다.

1. 목 적

- 고랭지채소의 열악한 생산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품질 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며,
- 유통사업등을 종합지원하여 농가실질 소득증대와 자율적인 생산, 출하조절 기능강화로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임.

2. 추진방향

-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기반시설과 산지유통 및 기계화에 필요한 장비등을 종합지원
-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메뉴방식으로 사업추진
-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생산 및 출하를 조절할 수 있는 생산자 조직에 중점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4-'95	'96	'97 (예산액)	'98	'99-2004
사업량		280개소 (254공)	40 (54)	20 (50)	29 (50)	20 (50)	171 (50)
사업비	계	127,630 (11,430)	19,030 (2,430)	10,550 (2,250)	14,285 (2,250)	10,550 (2,250)	73,215 (2,250)
	보조	31,136 (6,651)	5,851 (1,701)	3,650 (1,575)	3,532 (1,125)	2,785 (1,125)	15,318 (1,125)
	융자	43,990 (-)	4,980 (-)	2,490 (-)	4,814 (-)	3,320 (-)	28,386 (-)
	지방비	27,446 (2,961)	4,636 (486)	2,525 (450)	3,082 (675)	2,335 (675)	14,868 (675)
	자부담	25,058 (1,818)	3,563 (243)	1,885 (225)	2,857 (450)	2,110 (450)	14,643 (450)

※ ()내서는 암반관정 관수시설임.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단위사업별 세부내용

가) 발정지사업

- 급경사를 완경사로 변경 또는 구배를 정리하는 사업
- 기타 기계화가 가능하도록 정지하는 사업

나) 관수시설

- 소형관정, 점적관수, 스프링클러, 집수장, 송수호스, 기타 관수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암반관정 제외)

다)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 고랭지채소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
- 기존의 고랭지채소 반출도로를 확장, 정비 또는 포장하는 사업

라) 비가림재배시설

- 원예작물 표준하우스 모델을 참고로 현지실정에 맞게 설치
- 측창개폐장치 포함

마) 망사육묘장 설치

- 해충의 침입방지용 망사가 부착된 비가림육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 개소당 100평 기준 지역여건에 맞게 설치

바) 수송차량

- 채소 및 영농자재 수송에 필요한 일반차량 지원원칙
- 저운수송차량 구입시 구입단가 기준 : 30백만원/대이내

2) 개소당 단위사업내용 및 단가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계				564
가) 생산·유통종합지원 <생산기반조성>				519
◦ 발정지사업	ha	5	30	150
◦ 관수시설	ha	5	10	50
◦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	km	2	90	180
◦ 비가림재배시설	ha	2	55	110
◦ 망사육묘장 설치	개소	5	3	15
<산지유통 및 기계화>				
◦ 수송차량	대/5톤	1	10(30)	10(30)
◦ 다목적관리기	대	1	1.5	1.5
◦ 육묘이식기	대	1	2.5	2.5
나) 암반관정 관수시설		1	45	45
◦ 관정개발	개소	1	30	30
◦ 이용시설	개소	1	15	15

주1) 개소당 지원단가 { 생산유통종합지원 : 415백만원(표준사업비의 80%)
 { 암반관정관수시설 : 45백만원

2) 발정지사업과 반출도로 개설 및 보수사업의 단가에는 설계비가 포함된 것임.

3) 수송차량의 ()내는 저운수송차량임.

3) 지원조건

가) 생산·유통종합지원

계	보 조	읍 자	지방비	자부담
415,000천원/개소	83,000	166,000	83,000	83,000

- 지원비율 : 보조 20%, 읍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읍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나) 암반관정 관수시설

계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자 부 담
45,000천원/공	22,500	13,500	9,000

- 지원비율 : 국고보조 50%, 지방비보조 30, 자부담 20
- 시공조건
 - 시공업체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지하수법에 의한 유자격 민간관정 개발업체
 - 시설기준
 - 구경 : 200mm
 - 채수량 : 200m³이상(고지대등으로 수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경우 100m³까지 시장·군수가 하향조정가능)
 - 지하수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 11. 12) “관정의 개발 및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준수
 - 관정개발에 앞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작물재배에 적합한 양질의 수원 확보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시도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29개소 (50공)	백만원 14,285 (2,250)	8,346 (1,125)	3,532 (1,125)	4,814 (-)	3,082 (675)	2,857 (450)
강원	24 (46)	12,030 (2,070)	7,011 (1,035)	3,027 (1,035)	3,984 (-)	2,613 (621)	2,406 (414)
충북	2 (1)	875 (45)	520.5 (22.5)	188.5 (22.5)	332 (-)	179.5 (13.5)	175 (9)
전북	1 (2)	505 (90)	294 (45)	128 (45)	166 (-)	110 (27)	101 (18)
경남	1	415	249	83	166	83	83
제주	1 (1)	460 (45)	271.5 (22.5)	105.5 (22.5)	166 (-)	96.5 (13.5)	92 (9)

※ ()내서는 암반관정 관수시설임.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채소과(02-500-2683~4)
- 시·도 : 도청 농산물유통과(농산과, 특작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대상지역 : 고랭지채소 주산지로서 동일 시·군내에 무, 배추등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이 5ha이상 재배되고 있는 지역
- 대상자 : 고랭지채소 “생산자조직”

○ 우선순위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 법인화된 생산자조직중 아래요건을 갖춘 법인 ('98이후적용)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이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운영실적 1년이상, 구성원 2/3이상이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집단화, 규모화가 가능하고, 사업추진 의욕 및 단결력이 우수한 조직
- 생산기반조성사업과 유통·기계화 사업을 균형있게 시행하고자 하는 조직
- 공동구입, 공동작업, 공동판매등의 활동이 우수한 조직
- 생산물의 규격상품 출하실적이 우수한 조직(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조직부터 지원)

○ 선정절차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농림사업 신청서(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제3호서식)와 고랭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를 첨부[별지 제1호서식]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 우선순위와 지역여건을 고려해 우선순위 평가표를 작성
- 농림사업실시규정 총칙에 따라 사업신청서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사업량이 결정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지역)를 확정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시 고려할 사항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벼이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지원
 -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사업은 사업비중 보조부문의 1/2을 읍자로 전환
 - '99사업은 보조전액을 읍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생산·유통종합지원사업의 단위사업은 표준단위 사업중 3개이상을 균형 있게 선택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특성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3개미만의 특정사업만 시행하거나 표준단위사업 이외의 사업도 추가할 수 있음.
- 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농업기계 품질보증 대상기종인 경우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만 구입가능
- 암반관정 관수시설은 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구내에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실시 가능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시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할 사유발생시
- 변경절차
 - 사업시행 생산자조직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요청
 - 시장·군수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변경사유 첨부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지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치하고 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결정하여 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시설물을 처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등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 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 고
○ 생산·유통종합지원 - 비가림재배시설 - 망사육묘장 - 관수시설 - 수송차량 - 육묘이식기 - 다목적관리기	완공일로부터 5년 5년 3년 구입일로부터 5년 3년 3년	사후관리기간중 사업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유 로 처분해야할 경우는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	관리대장을 비 치하고 현재액 및 사후관리 사 항등을 기록
○ 암반관정 관수시설 - 암반관정	완공일로부터 5년		

나. 보고·기타

- 사업진도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 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사업 익년도 3월 20일까지
 - 보고양식은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 준용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읍·면)

나. 신청자격

- 고랭지채소 주산지로서 동일 시·군내에 무, 배추등 고랭지채소 재배면적이 5ha이상되는 지역이어야 하며,
- 고랭지채소 재배농가와 생산자단체등이 결성한 “생산자조직”

다. 신청절차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에 제출

라. 구비서류

- 자율사업신청서
-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대상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근거(필요시)등

마. 대상자선정

- '97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실시
 - 본사업 대상지역이 『발기반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군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건설과등)에 신청하여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
 - 『발기반정비사업』을 신청한 대상지역은 본사업 추진기관인 시·군 → 시·도 → 중앙에 계통 보고하여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별지 제1호서식]

고랭지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 계획서

1. 사업대상지역 현황

- 사업대상지역 : ○○ 도 □□군 ××면
- 대상작목 생산현황

대상작목	농가호수	재배면적	생산량	비고
계	호	ha	톤	
무 배추 기타				

2. 생산자조직 현황

조직명	주사무소 위치	대표자	전화번호	설립일	조직원수
					명

가. 임직원 현황

나. 생산자조직 활동상황

- 조직형태(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품목	농가수	재배면적	생산량
무 배추 기타			

- 공동구입, 판매등 사업실적

3. 사업실시계획

1) 생산·유통종합지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 량	사 업 비					참여 농가수
				계	보조	용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생산기반조성> ○ 발정지사업 ○ 관수시설 ○ 반출도로개설 및 보수 ○ 비가림재배시설 ○ 망사육묘장설치 ○ 기 타	ha ha km ha 개소								
<산지유통,기계화> ○ 수송차량 - 일 반 - 저 온 ○ 다목적관리기 ○ 육묘이식기 ○ 기 타	대 대 대 대								

2) 암반관정 관수시설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단위	단가	사업 량	사 업 비				참여 농가수	비 고
				계	보조	지방비	자부담		
합 계									
○ 관정개발 ○ 이용시설	개소 개소							○ 구경 mm ○ 내역명시	

37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1. 목 적

- 화훼재배농가에게 현대화, 자동화된 생산시설 및 유통시설 등을 종합지원하여 생산에서 부터 출하,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체제를 유지토록 함과 아울러
- 꽃품질향상 및 생산성 향상은 물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국제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2. 추진방향

- 기존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유도
- 생산농가의 조직화를 통한 제반시설의 집단화 유도로 사업효율의 극대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액)	98	99~2004
사업량		235	25	20	15	30	145
사업비	계	917,270	106,250	77,240	57,930	115,860	559,990
	보 조	193,144	27,078	19,310	11,586	23,172	111,998
	읍 자	348,489	31,805	23,172	23,172	46,344	223,996
	지방비	193,143	27,077	19,310	11,586	23,172	111,998
	자부담	182,494	20,290	15,448	11,586	23,172	111,998

※ 자금지원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에 이미 취득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음.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배 경

- 93년까지는 개별 단위 사업별로 지원하였으나, '94년 이후 주산단지 생산자 조직 중심으로 현대화된 생산 및 유통시설 등에 종합지원하여 노동력 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신청자자격

<지원대상지역>

- 지방비 확보에 문제점이 없는 시·군
- 시설이 설치될 지구의 집단화(인접필지)가 잘된 지역
- 사업대상부지가 건축 등 사업추진에 따르는 법적제한 사항이 없는 지역
 - 건축법, 수도권 정비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의하여 법적 제한이 있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되, 관련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시설설치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함
 - 특히, 그린벨트지역내에서 유통시설을 설치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이 설치되도록 유의
- 자연적, 지리적 조건이 화훼재배에 적합한 지역
 - 홍수, 산사태, 침수 등 자연재해 우려가 없는 지역
- 지내력이 양호하여 기반정비가 용이하고 용수확보, 진입도로, 전기인입 등이 용이한 지역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비외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지원
 -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시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사업은 사업비중 보조부문의 1/2을 읍자로 전환
 - '99사업은 보조전액을 읍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사업신청자 자격〉

- 지방자치단체, 농협중앙회 회원조합
- 아래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구성된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서 총 출자액이 1억원이상이 되어야 하며 설립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98이후 적용)
단, 작목반의 경우는 출자액을 모체조합이 보증할 수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이내에 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공 통

- 온실, 공동시설등 시설을 설치할 자기소유의 부지를 확보(증빙서류 첨부) 하고, 자부담능력과 담보능력이 있는자(농협장의 확인서 첨부)
 - 집단화를 위해 시설별 용자기간(철골온실 : 20년, 파이프 비닐온실 : 10년)이상의 장기임대 토지도 가능 (임대계약서 법원공증 사본 첨부)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고, 총출자액의 50%이상을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사업신청일 현재 화훼를 재배하고 있고 재배경력이 3년이상인 자
- 최근 5년이내에 학교, 연구소, 행정·지도기관, 공사 및 기업체등의 시설원예분야에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증명서류 첨부)
- 시장·군수 및 (사)한국화훼협회장이 단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 이 경우 단지당 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국·내외에서 2주이상 시설화훼 관련 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적으로 추천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지원단가 : 3,862백만원/개소당

사업기간 : '97. 1. 1 ~ '98. 12. 31(2년)

- 1년차 60%, 2년차 40% 지원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보조 20%, 용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용자조건

시 설 종 류	금 리	상 환 조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리온실 ○ 경질판온실 ○ 양액재배시설 ○ 조직배양실 ○ 저온저장고 ○ 집하장 ○ 선별처리장 ○ 저온처리실 	5%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닐온실 ○ 기타사업 	5%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표준단위사업 내용

세부사업	단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주요시설내용
합 계	-	-	백만원 -	백만원 4,827	○ 사업비의 80%로 예산편성(3,862백만원)
○ 생산시설					
- 유리온실	ha	1	1,200	1,200	철골구조, 관수시설, 자동액비시비장치, 2중커튼, 온수보일러, CO ₂ 발생기, 방제살수기, 환풍기, 환경제어시설 등
- 경질판온실 (PET, PC, PVC 등)	ha	2	750	1,500	경량철골구조, 관수.시비장치, 2중커튼, 온수보일러 또는 온풍난방기, CO ₂ 발생기, 환풍기 등
- 비닐온실	ha	2	282	564	파이프골조, 관수시설, 온수보일러 또는 온풍난방기, 커튼장지, 콘트롤판넬 등
- 조직배양실	평	50	2.5	125	브룩조 또는 조립식건물, 향온·향습설비, 배양시설 등
- 관 정	공	2	37	74	암반관정(1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한함)
- 비상발전기	대	3	8.3	25	정전시 필수가동이 요구되는 설비에 의해 산정된 용량(1ha이상 집단화된 지역에 한함)
- 양액재배시설	대	1,500	0.05	75	고형배지경재배, 양액자동조절시스템 등
○ 유통시설					
- 저온저장고	평	200	4.5 (2.5)	900 (500)	구근류 등의 저장고 기타화훼류의 저장고
- 저온처리실	평	90	1.1	99	브룩조 또는 조립식 건물, 냉동.단열 등
- 집하장	평	70	1.2	80	평지콘크리트, 브룩조건물 등
- 선별처리장 등	평	200	0.4	80	단열철골 유리온실이상(건물면적의 1/10 이상 저온저장고 건설 가능)
- 수송차량	대	5	15	75	2.5톤이상 보냉 또는 냉동차 등
- 절화선별결속기	대	6	5	30	선별.절단.결속장치 등

주) 사업비에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및 부가세 포함 가격 임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개소, 백만원)

시·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합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5	34,758 (23,172)	20,854.8 (13,903.2)	6,951.6 (4,634.4)	13,903.2 (9,268.8)	6,951.6 (4,634.4)	6,951.6 (4,634.4)
경 기	1.5	3,475.8 (2,317.2)	2,085.48 (1,390.32)	695.16 (463.44)	1,390.32 (926.88)	695.16 (4,634.4)	695.16 (463.44)
강 원	2	4,634.4 (3,089.6)	2,780.64 (1,853.76)	926.88 (617.92)	1,853.76 (1,235.84)	926.88 (617.92)	926.88 (617.92)
충 북	1	2,317.2 (1,544.8)	1,390.32 (926.88)	463.44 (308.96)	926.88 (617.92)	463.44 (308.96)	463.44 (308.96)
충 남	1	2,317.2 (1,544.8)	1,390.32 (926.88)	463.44 (308.96)	926.88 (617.92)	463.44 (308.96)	463.44 (308.96)
전 북	2.5	5,793 (3,862)	3,475.8 (2,317.2)	1,158.6 (772.4)	2,317.2 (1,544.8)	1,158.6 (772.4)	1,158.6 (772.4)
전 남	2	4,634.4 (3,089.6)	2,780.64 (1,853.76)	926.88 (617.92)	1,853.76 (1,235.84)	926.88 (617.92)	926.88 (617.92)
경 북	2	4,634.4 (3,089.6)	2,780.64 (1,853.76)	926.88 (617.92)	1,853.76 (1,235.84)	926.88 (617.92)	926.88 (617.92)
경 남	2	4,634.4 (3,089.6)	2,780.64 (1,853.76)	926.88 (617.92)	1,853.76 (1,235.84)	926.88 (617.92)	926.88 (617.92)
제 주	1	2,317.2 (1,544.8)	1,390.32 (926.88)	463.44 (308.96)	926.88 (617.92)	463.44 (308.96)	463.44 (308.96)

※ () 내는 2차년도 예산액임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과수화훼과 (☎ 500-2685~6)
- 시·도 : 농정(산)과, 농산물유통과, 유통특작과
- 시·군 자치구 :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적격 대상지역 및 대상자 중에서 아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시·도(시·군)별로 선정

(2) 우선순위

- ① 대상지역이 논이외의 지역
- ② 참여농가수가 많고 법인화된 생산자조직
- ③ 사업규모가 크고, 생산시설 중 유리온실, 경질판온실의 사업량이 많은 조직
- ④ 재배작목을 전문화하여 집단화된 수출단지를 조성하고자하는 조직
- ⑤ 화훼공판장 또는 직판장으로 생산물의 규격상품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조직부터 지원)
- ⑥ 재배기술 수준이 높고 운영이 잘되고 있는 조직

(3) 선정절차

○ 사업신청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조직이 농림사업 자율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와 농림정책자금 대출신청자료(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을 거쳐 시·군의 사업담당부서에 제출
- 지방자치단체장 및 농협장은 부지확보, 자금조달, 운영방법,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 지원대상자 선정

- 시장·군수 : 대상지역 및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가린 후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라 사업신청서 정밀검토 및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 공개심의 조정
- 시·도 : 시·군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 심사
- 농림부 : 사업계획 및 예산배정계획 통보
- 시장·군수 :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자 확정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 정부가 제시한 표준단위사업 내용에 의거 사업계획 수립 신청
(농림사업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 표준단위사업이외의 사업도 가능하나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객관적인 단가와 사업 필요성 제시
- 개소당 세부사업 내용은 생산자 조직이 자율로 선택가능하나 기존 시설을 감안하여 생산 및 유통시설을 균형있게 설치
- 개별시설 농가당 지원 규모
 - 농가당 온실면적 : 900~1,500평이내
 - 기타세부사업 : 지역실정에 따라 선택조정 가능
- 세부사업 중 생산시설은 최소 1ha이상씩 인접필지로 집단화하되 관련 유통시설을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경우 인접하고 있는 읍·면 범위내에서 2~3개소로 분산 집단화 가능
- 1개소사업비(3,862백만원)로 유리온실, 경질판(PET, PC 등) 온실을 합하여 2ha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지역, 재배작물,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온실 종류를 선택
 - (참고) 온실 종류별 적정작물
 - 유리 또는 경질판온실 : 장미, 거베라, 카네이션, 서양란 등 광 요구량이 많거나 고온성 작물 또는 수출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 경질판 또는 비닐온실 : 국화, 안개꽃, 튜립, 선인장, 관엽식물 등 광요구량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저온성 작물 또는 내수품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 1개사업은 1개 시·군내에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1개사업을 2개시·군에 걸쳐 사업시행 가능(예 : 갑군+을군→1개소 3,862백만원)

- 시·도지사는 시·군별 개소당 사업규모를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가능(2개소 사업비로 1개 시·군 집단설치도 가능)하나, 시·도의 전체사업비는 기존 사업비의 개소단위로 신청

- (예) 00도 : 3개소 11,586백만원

 갑군 : 1개소 3,562백만원, 을군 : 1개소 4,162백만원,

 병군 : 1개소 3,862백만원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 가급적 사업변경을 지양하고 부득히 변경사유가 발생할때에는 사업착수 전까지 변경가능

- 시·도지사승인, 농림부보고 : 표준단위사업내용 범위내

- 농림부승인 : 표준단위사업 이외의 사업 및 지역 변경

(3) 사업비지원 방법

○ 농림부 : 예산확보 및 사업자금 배정

○ 시·도 : 사업대상자 교부금 결정

○ 시·군 : 기성고에 따라 자금 집행

- 용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지역농협, 전문농협)

- 용자절차

· 용자대상자 및 공사기성고 통보 : 시장·군수가 농협장에게 통보

· 용자조치 : 농협장은 사업대상자에게 용자조치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

○ 담보실행 및 기타사항 : 농림사업실시규정에 따름

마. 기타사항

□ 사업추진위원회 운영

- 시장·군수는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화훼생산·유통단지조성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구성 : 관계공무원(지도소포함) 단지회장, 농어촌진흥공사, 농협, 학계, 시공업체,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능 : 사업계획서 심의, 분기별 사업추진평가, 사업계획변경(사업대상자 포함) 심사,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내용의 심사,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심의

□ 기관별 업무분담 내용

- 농림부 : 지침시달, 시·도별 사업량 및 사업비 배정, 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자교육, 사업종합 조정 및 총괄 지도
- 농촌진흥청 : 표준설계도 개발·보급, 온실설치 및 작물재배 관련 기술지도, 농민교육 훈련, 사업성과 및 경영분석, 온실하자 피해에 대한 상담
- 시·도 : 사업지구 타당성검토 및 계획조정(변경), 사업추진감독 및 상황진도 보고
- 시·군 : 사업신청서 접수.심사.후보지구 선정보고, 사업대상자 선정, 사업세부 사항 계획수립.시행, 사업추진지도. 감독 및 상황보고, 준공검사, 사업비집행.정산, 사후관리, 온실업체 시공실적 발급
- 농협중앙회 : 금융지원, 기자재 공급, 계통출하 및 판매지원
- 농어촌진흥공사 : 설계 및 시공감리, 설계기준개발. 보급, 용수개발, 안전시공 기술개발, 시설자재산업 육성, 시설관리 대농민교육, 지도 등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수출시장 개척, 수출업무 지원, 화훼산업 교육 및 자금지원
- (사)대한온실산업협회 : 시공기술 개발. 보급, 시공업체 지도. 감독, 주요 온실기자재 공동개발, 구매보급, 공동구매알선 및 온실기자재 가격조사, 시공업자(회원사, 현장인정 기술자)지도, 감독, 공사수행능력 확인서 발급, A/S센터 설치운영, 온실 시공관련 연구용역사업 등 운영
- 사업대상자 : 사업계획수립, 시설원예관련 교육이수, 사업시행 경영일지 및 경영장부 작성

□ 설계, 시공업체선정, 시공 및 공사감리

(1) 설 계

(가) 시설별 설계방법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 실시설계도서 : 농림부제정 " 온실구조설계기준 " ('95. 4)을 기준으로 설계기관이 현장에 맞게 작성한 실시 설계도서(설계도, 내역서, 시방서) 또는 중앙설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표준설계도서
- 설계기관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설계전문업체(건축사법에 의한 유자격업체)
- 설계비 : 건축사업무 및 보수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1993-277호)의 75%이내
 - 과학 51260-114 ('95. 3. 29.) 참고
- 설계계약 : 시장·군수 입회하에 사업시행자 조직대표와 설계기관이 계약(가계약 불인정)
- 설계비지급 :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사업자 자부담분으로 설계도서가 납품되는 즉시 설계기관(업체)에 지급

○ 비닐온실

- 시공도서 : 농촌진흥청의 " 농가보급형 자동화온실 표준설계도 " 를 기준설계도로 하여 현장에 맞게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음

○ 집하장 : 『가변형 농산물 간이집하장 표준설계도』
(건설교통부 공고 제1996-209호) 기준

○ 양액재배시설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개발한 『양액재배시설 표준설계도』

- 관정 : 지하수법 및 국무총리훈령 제304호(94. 11. 12) 『관정의 개발 이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농어촌진흥공사 및 유자격 민간 관정개발업체에 의뢰하여 기초공사 후 시추하여야 함

○ 조직배양실, 유통시설 및 기타

- 사업대상자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업체와 협의설계 시공
※ 비상발전시설 및 변전시설, 전기인입 시설 등은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유자격업체를 선정하여 설치

(나) 설계 또는 설계변경시 고려사항

- 표준단위사업 내용에서 제시된 세부사업에 있어서 기준단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자부담으로 하여야 함
- 낙뢰 등 돌발재해 대비 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
- 모든 시설, 부대장치 및 기기 등을 농진청 표준설계도 및 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이상 되도록 설치(국산자재 사용비율은 사업비기준 60%이상 되도록 지도)
- 부대장치 및 기기는 공인검사기관의 합격기종 설치 권장
-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 또는 설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설계심의를 거친 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2) 시공업체선정 및 착공

(가) 시공업체 선정

- 철골온실(유리, 경질판)
 - 시공업체는 사업지역별로 선정 계약(시공업체 선정방법은 별도 시달)
 - 시공업체는 (사)대한온실산업협회가 운영하는 고객서비스(통합A/S망) 단체 보증협약(가칭)에 가입
 - 시공능력공시제도 도입(97. 7. 1이후) : 시장·군수 및 사업대상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공업체의 자본금, 건설공사 실적 등 공사능력을 종합평가하여 시공업체 선정
- 기타시설 :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대상자가 선정

(나) 시공업체 자격기준

- 온 실 : 전기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온실설치공사업 면허 소지자 (전기공사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소지자)
- 관 정 : 농어촌진흥공사 또는 유자격 민간관정개발업체
- 기타시설 : 설치할 시설의 관련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

(다) 계약시 주의사항

- 시장·군수의 입회하에 계약하되 세부사업의 공종별로 별개의 시공업체와 계약하지 않도록 함 (전기공사는 예외)
- 하자보수 보증금 및 하자보증기간 명시등 시설물의 A/S관련사항을 명확히 할 것

(라) 사업착공

-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시설설계 계약을 완료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에 설계도서에 의거 사업을 착공하여야 하며, 사업대상자가 6개월내에 사업착공을 못 할 경우 시장·군수는 사업대상 변경 또는 사업반납 조치를 취하여야 함

(3) 시 공

- 시장·군수는 시공능력을 심사하여 부적합한 경우, 시공자를 즉시 교체
- 시공업체는 건설공사에 실제 참여한 현장책임자, 기능공, 장비임대업자 등의 명단을 공사현장에 비치
- 자재규격화와 국산화 촉진을 위해 공동구매토록 권장
 - 우량기자재의 확보 및 구입단가 인하 등을 위해 공동구매 보급
- 시설기자재는 규격기준품을 사용하고 검사기관의 공인(NT, KT, EN마크) 제품을 사용토록 하되,
 - 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농업기계 “품질보증 대상기종”인 경우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만 구입가능

(4) 공사감리

- 시공업체는 시공도서(도면 및 내역서)와 공정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리자 확인
- 공사감리자는 시공도면대로 시공되어 계약기간내 완공토록 철저히 감리시행
- 감리대상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저온저장고
- 감리기관 : 온실(농어촌진흥공사 및 설계전문 면허업체) 저온저장고(시설설계업체 또는 농어촌진흥공사)
- 감리계약 : 시장·군수 입회하에 사업시행 생산자조직 대표와 감리기관(단체)이 계약
- 감리수행 : 농림부의 "설계 및 감리업무 수행지침"에 의거 감리
 - 채소 51240-127 ('95. 3. 22) 참고
- 감리비 : 건축사 업무 및 보수기준(건설교통부공고 제1993-277호)의 75%적용
 - 과화 51260-114 ('95. 3. 29.) 참고
- 감리비지급 : 사업비정산시 시장·군수 책임하에 사업대상자의 협조를 얻어 감리비를 지급
-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 건축)이 직접담당

□ 사업비 관리 및 집행, 정산

-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사무를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관련규정에 의거 시·도지사에게 위임함
- 모든사업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고, 시·군 등이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
 - 사업비 중 자부담비율이 100분의 20을 초과하고, 자부담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자부담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을 착수할 때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실적이 전체공정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집행
 - 단, 이외의 경우는 자부담금액"전액"을 사업에 착수할 때부터 집행

- 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거 교부된 보조금은 교부 목적대로, 즉시 생산자조직 대표에게 지급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농어촌진흥공사 등의 감리자가 확인한 공사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생산자대표가 시공업체에게 지급할 경우 입회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생산자조직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시장·군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는 등 사후관리, 감독의 책임을 짐.
 - 저온저장고, 선별처리장, 집하장 등 공동시설의 토지와 건물, 차량 등을 조직 명의로 공동등기하여 사유화 방지
- 시·도지사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수시로 조사·감독하여야 함.
- 농촌진흥청장은 화훼생산·유통사업단지에 담당지도를 배치, 작형, 작목선택, 단지의 화종별 경제성 분석 및 온실 하자피해에 대한 상담 등 지도업무 수행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사후 관리 기간		처 분 제 한 준 기	비 고
	부 터	까 지		
○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및 그부속건물	○ 완공일로부터	20년	사후관리기간 중 타목적에 사용하거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는 시·도지사 의 승인을 받아 실시	
○ 조직배양실,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별처리장, 저온처리실, 건물물, 파이프비닐온실 및 그부속건물(부대시설 포함)	○ " "	10년		
○ 저온수송차량, 농기계등	○ 구입일로부터	5년		

나. 보고, 기타

- 시·도지사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별지 제1호서식]
-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 정산보고[별지 제2호서식] : 사업 익년도 3월20일까지
- 화훼 생산·유통 지원사업 대상지 종합검토[별지 제3호서식] : 10월15일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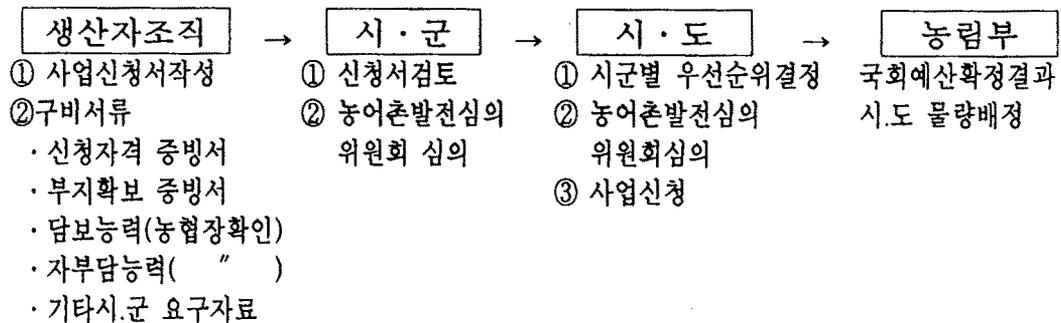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시·군

나. 신청자 자격

○ '97사업신청자 자격기준과 같음

다.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라. 대상자 선정

○ '97사업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마.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실시

○ 본사업 대상지역이 『발기반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군 발기반 정비사업 담당부서(건설과등)에 신청하여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

○ 『발기반정비사업』을 신청한 대상지역은 본사업 추진기관인 시·군 → 시·도 → 중앙에 제통 보고하여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별지 제1호서식]

년 분기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시·도 총괄

1. 단지조성 계획

단지명	소재지 (TEL)	대표자 (농가수)	온 실				작 목	생 산 량	
			계	유리	경질판	비닐		물 량	금 액
			평					천속	천원

2. 사업추진 상황

사업명	단위	사 업 량			사 업 비			재원별 집행				추진상황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집행	비율	보조	읍자	지방비	자부담		
○ 계	평공대			%	천원		%	천원					
○ 생산시설													
○ 유통시설													
○ 자율사업													

3. 사업변경 내역

시·군	사업명	당 초	변 경	사 유

4. 추진계획

시·군별

1. 사업추진 상황

사업명	단위	사업량			사업비			재원별 집행				추진 상황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보조	융자	지방비	자부담	
계				%	천원		%	천원				
○ 생산시설	평 공 대											
-												
-												
○ 유통시설												
-												
-												
○ 자율사업												
-												
-												

2. 유리온실 설치상황

단지명	소재지	농가수 (대표자)	규 모			설 계		시 공		
			형태	면적	동수	계약일	기관	기간	업체	대표자
		호		평	동					

3. 사업변경 내역 및 사유

가. 변경내역

나. 사 유

[별지 제2호 서식]

년도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정산보고

시·도 총괄

1. 단지조성 현황

단지명	소재지 (TEL)	대표자 (농가수)	온 실				작 목	생 산 량	
			계	유리	경질판	비닐		물 량	금 액
			평				천속	천원	

2. 사업비 집행내역

	계 획	실 적	잔 액			비 고
			계	이 월	불 용	
계 국고보조 음 자 금	천원					

○ 잔액발생 사유

3. 사업추진상황

사 업 명	농가수	단 위	사 업 량			예 산				집 행				잔 액					
			계 획	실 적	%	계	보 조	음 자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지방비	자부담	이월		불용	
																보조	음자	보조	음자
○ 계 ○ 생산시설 - - ○ 유통시설 - - ○ 자육사업 - -	평 응 응 대					천원													

4. 이월시 추진계획

시·군별

1. 사업추진상황

○ 단지명 : (대표자 : , 농가수 : 호, 소재지 :)

사업명	농가수	단위	사업량			예산				집행				잔액		비고			
			계획	실적	%	계	보조	유자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유자	지방비	자부담	보조	유자	착공일	준공일
○ 생산시설	평당대					천원													
-																			
○ 유통시설																			
-																			
○ 자율사업																			
-																			

○ 온실 및 유통시설

	농가수	동수	면적	형태	총사업비	작목	시공업체	준공일
계			평		천원			
유리온실								
경질판온실								
비닐온실								
저온저장고								
저온처리실								
집하장								
선별처리장								

2. 국산자재 사용현황

사업별	시설구분	사업비			대비
		계 (A)	국산 (B)	외산	B / A
○ 생산시설	※ 주요 내부 시설기재	천원			%
-					
○ 유통시설					
-					
○ 자율사업					
-					

[별지 제3호 서식]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대상지 종합검토

(0 0 시 · 도)

순 위	사업지역 주 소	농 가 수	사 업 계 획				사 업 대 상 자	부 지 확 보	자 담 및 응 자 능 력 (농 협 장 확 인)	지 방 비 확 보 (시 장,군 수 확 인)	종합검토의견
			사 업 명	사 업 량	총 사 업 비	입 식 작 목					
시도계 시군별			계 ○ 생산시설 - - ○ 유통시설 - -		백만원	○ 조직명 ○ 법인 설립일 (예정일) ○ 구성인원 ○ 대표자 (TEL) ○ 동기여부	○ 계 : - 논 : - 밭 : - 임야 : ○ 법적 검 토 결과			○ 입지조건 - 기후, 토질, 지형, 교통 ○ 사업대상자 - 기술수준, 경험, 열의 ○ 집단화 여부(필히 기록) ○ 수출단지조성 여부 ○ 기타 특기사항	

38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원예특작과입니다.

1. 목 적

- 특용작물(버섯, 생약, 차, 잡엽)의 생산·유통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특용작물의 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증대 기여

2. 추진방향

- 품목별로 재배규모화하여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
- 세부사업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추진
- 지원의 규모화 및 집단화로 지원의 효율성 제고
-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강화로 지원효과 증대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개소,백만원)

		계	'92~'95	'96	'97(예산액)	'98	'99~2004
사업량		1,339	80	138	139	139	834
사업비	계	681,527	90,127	59,904	66,437	66,437	398,622
	보조	120,797	8,398	6,103	13,287	13,287	79,722
	융자	302,580	54,263	35,717	26,575	26,575	159,450
	지방비	120,797	8,398	6,103	13,287	13,287	79,722
	자부담	137,353	19,068	11,091	13,288	13,288	79,728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지원방향

- 품목별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생산-유통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Package방식)
- 1개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표준사업의 세부사업(menu)중에서 농가희망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지원
- 1개단지의 재배면적규모는 표준사업의 기준면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균수가 지역실정에 따라 증감조정할 수 있음.

나. 지원대상사업

- 버섯 : 중균생산시설, 첨단재배시설, 균상재배시설, 냉동운반차량, 저온저장고
- 생약 : 우량종묘생산, 재배시설, 조제시설, 집하장
- 차 : 다원조성, 생산기반조성, 제다시설
- 잡업 : 건조기, 냉동저장고, 분쇄기, 빙수확기, 빙발관정, 자동은풍기, 가지절단기, 포장기, 빙발관리기, 자동소독기

다. 지원조건

- 지원비율 : 보조 20%, 용자 4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용자조건 : 연리 5% (버섯: 3년까지 5년 분할상환 생약 차 잡업: 3년까지 7년 분할상환)

라. 사업기간 : '97. 1. 1 ~ '97. 12. 31.

마. '97 사업비(예산)내용

<품목별내역>

(단위 : 개소,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용 자		
계	139	66,437	39,862	13,287	26,575	13,287	13,288
버섯	100	56,400	33,840	11,280	22,560	11,280	11,280
생약	25	7,875	4,725	1,575	3,150	1,575	1,575
차	4	1,412	847	282	565	282	283
잡업	10	750	450	150	300	150	150

<시·도별내역>

(단위:개소,천원)

시·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139	66,437,000	39,862,200	13,287,400	26,574,800	13,287,400	13,287,400
인 천	1	564,000	338,400	112,800	225,600	112,800	112,800
광 주	1	564,000	338,400	112,800	225,600	112,800	112,800
경 기	6	3,384,000	2,030,400	676,800	1,353,600	676,800	676,800
강 원	16	7,779,000	4,667,400	1,555,800	3,111,600	1,555,800	1,555,800
충 북	12	6,021,000	3,612,600	1,204,200	2,408,400	1,204,200	1,204,200
충 남	23	11,985,000	7,191,000	2,397,000	4,794,000	2,397,000	2,397,000
전 북	15	6,735,000	4,041,000	1,347,000	2,694,000	1,347,000	1,347,000
전 남	23	10,327,000	6,196,200	2,065,400	4,130,800	2,065,400	2,065,400
경 북	25	10,650,000	6,390,000	2,130,000	4,260,000	2,130,000	2,130,000
경 남	16	7,864,000	4,718,400	1,572,800	3,145,600	1,572,800	1,572,800
제 주	1	564,000	338,400	112,800	225,600	112,800	112,800

<버섯>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100	56,400,000	33,840,000	11,280,000	22,560,000	11,280,000	11,280,000
인 천	1	564,000	338,400	112,800	225,600	112,800	112,800
광 주	1	564,000	338,400	112,800	225,600	112,800	112,800
경 기	6	3,384,000	2,030,400	676,800	1,353,600	676,800	676,800
강 원	11	6,204,000	3,722,400	1,240,800	2,481,600	1,240,800	1,240,800
충 북	9	5,076,000	3,045,600	1,015,200	2,030,400	1,015,200	1,015,200
충 남	20	11,280,000	6,768,000	2,256,000	4,512,000	2,256,000	2,256,000
전 북	10	5,640,000	3,384,000	1,128,000	2,256,000	1,128,000	1,128,000
전 남	14	7,896,000	4,737,600	1,579,200	3,158,400	1,579,200	1,579,200
경 북	15	8,460,000	5,076,000	1,692,000	3,384,000	1,692,000	1,692,000
경 남	12	6,768,000	4,060,800	1,353,600	2,707,200	1,353,600	1,353,600
계 주	1	564,000	338,400	112,800	225,600	112,800	112,800

<생약>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25	7,875,000	4,725,000	1,575,000	3,150,000	1,575,000	1,575,000
강 원	5	1,575,000	945,000	315,000	630,000	315,000	315,000
충 북	3	945,000	567,000	189,000	378,000	189,000	189,000
충 남	2	630,000	378,000	126,000	252,000	126,000	126,000
전 북	3	945,000	567,000	189,000	378,000	189,000	189,000
전 남	5	1,575,000	945,000	315,000	630,000	315,000	315,000
경 북	6	1,890,000	1,134,000	378,000	756,000	378,000	378,000
경 남	1	315,000	189,000	63,000	126,000	63,000	63,000

<차>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4	1,412,000	847,200	282,400	564,800	282,400	282,400
전 남	2	706,000	423,600	141,200	282,400	141,200	141,200
경 남	2	706,000	423,600	141,200	282,400	141,200	141,200

<잠업>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대 출		
계	10	750,000	450,000	150,000	300,000	150,000	150,000
충 남	1	75,000	45,000	15,000	30,000	15,000	15,000
전 북	2	150,000	90,000	30,000	60,000	30,000	30,000
전 남	2	150,000	90,000	30,000	60,000	30,000	30,000
경 북	4	300,000	180,000	60,000	120,000	60,000	60,000
경 남	1	75,000	45,000	15,000	30,000	15,000	15,000

바. 지원대상자

사 업 명	대 상 자
<p>< 버 섯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균생산시설 ○ 첨단재배시설 ○ 균상재배시설 ○ 냉동운반차량 ○ 저온저장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종균·배지 생산시설의 신축이나 증축을 위하여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종균판매가 가능한 종균생산업 등록업체 및 자체소비를 위한 생산자조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이하같음”) 또는 농가 ○ 자체운영자금 여력이 있고 버섯재배경력이 있는 자로서 주년 생산시설 지원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 ○ 일반버섯 재배사 시설의 신축 또는 증축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 ○ 버섯종균 생산시설, 버섯첨단 재배시설, 버섯균상 재배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 ○
<p>< 생 약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약육묘포설치 ○ 생약재배시설 ○ 생약조제시설 ○ 생약집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ha이상 종묘를 생산 공급하는 생산자단체(농협 회원조합, 생약농업협동조합), 생산자조직 또는 농가 ○ 생약재배농가 ○ 생산자조직, 농가, 생산자단체 ○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p>< 차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조성 ○ 생산기반시설 ○ 제다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원신규 조성 및 확대농가 ○ 기존다원과 신규 조성다원의 기반시설 지원희망농가 ○ 차재배 생산자조직, 생산자단체, 차재배겸 가공업자, 농가
<p>< 잠 업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조기, 냉동저장고, 분쇄기, 포장기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잠농업협동조합 ○ 양잠생산자조직 ○ 대규모 양잠농가

사. 지원규모(표준사업)

○ 벼 시설(기준면적 : 1,200평)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계				805	
○ 종근·배지생산 시설	50평/동	1	85	85	○ 건축물(전기,수도등 부대시설 포함) ○ 시설기기(탈병기,보일러,살균기,콘베어, 냉동시설,크린룸,배합기,입병기 등 기 자재)
○ 첨단재배시설	150평/동	1	200	200	○ 건축물(전기,수도 실험실,무균실등 부 대시설 포함) ○ 기기(톱밥제조기,톱밥채,혼합기,콘베어,입 병기,고압살균기,자동접종기,균급기기,억 제기,탈병기,가습기,냉동기,온습도 자동 제어장치,진공포장기 등)
○ 균상재배시설	35평/동	30	15	450	○ 건축물(전기,수도,난방 온습도 조절시 설 등 부대시설 포함)
○ 냉동운반차량	대	1	20	20	○ 2.5톤 이상
○ 저온저장고	20평/동	1	50	50	○ 건 축(부대기자재 포함)

※ 개소당 사업단가는 564백만원(표준사업단가 805백만원의 70% 적용)

○ 생 약(기준면적 : 20ha)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계				450	
○ 육묘포 설치	ha	1	30	30	○ 종자대,비료대,농약대,토지임차료,고용 노력비 등
○ 재배시설	ha	20	5	100	○ 종묘대,비료대,농약대,시설비등
○ 조제시설	100평/동	1	200	200	○ 건축물(전기,수도등 부대시설 포함) ○ 기기(선별기,탈피기,세척기,탈수이송콘 베어,절단기,건조기,상승콘베어,계측기, 자동포장기,지게차)
○ 집하장	150평/동	1	120	120	○ 철근콘크리트 구조, H빔 판넬

※ 개소당 사업단가는 315백만원(표준사업단가 450백만원의 70% 적용)

○ 차(기준면적 : 20ha)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계				505	
○ 다원조성	ha	1	14.4	14.4	○ 개간비, 묘목대, 식재대 등
○ 생산기반조성	ha	20	281.0	281.0	○ 관수시설(관정, 스프링), 방상기, 전정기, 자동채엽기 등
○ 제다시설	50평/동	1	209.6	209.6	○ 건축(전기, 수도 등 부대시설 포함) ○ 기기(급엽기, 증기, 냉각기, 증엽기(증엽콘베어, 증엽투입, 증엽개량), 조유기, 유넘기, 증유기, 건조기, 포장기 등) ○ 저온저장창고 30평1동

※ 개소당 사업단가는 353백만원(표준사업단가 505백만원의 70% 적용)

○ 잠엽(기준면적 : 20ha)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단 위	사업량	단 가	사업비	시 설 내 용
계				107.0	
○ 건 조 기	대	3	6.0	18.0	○ 생력기계화 및 시설현대화 시설위주로 지원하되 누에를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생산·가공 시설비 등 양잠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에 중점 지원
○ 냉동저장고	대	2	9.0	18.0	
○ 분쇄기	대	2	8.5	17.0	
○ 빙수확기	대	4	3.5	14.0	
○ 빙발관정	공	2	5.0	10.0	
○ 자동온풍기	대	6	1.5	9.0	
○ 빙가지절단기	대	3	3.0	9.0	
○ 포 장 기	대	2	2.5	5.0	
○ 빙발관리기	대	2	2.0	4.0	
○ 자동소독기등	대	2	1.5	3.0	

※ 개소당 사업단가는 75백만원(표준사업단가 107백만원의 70% 적용)

아. 우량농기자재 사용

- 지원대상 농업기계중 농업기계 품질보증 대상기종인 경우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 농업기계 구입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원예특작과 (02)504-9421, 9422
- 시·도 : 농산물유통과 (경기, 충북, 경남)
유통특작과 (강원, 경북)
농 산 과 (충남, 전북, 전남)
특 작 과 (제주)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다. 지원대상자 선정

- 선정권자 : 시장·군수
-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중 차년도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요구
- 우선순위결정
 - 시장·군수는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지원대상자로서의 적정여부, 집단성, 재배경력, 추진력, 경영능력, 자부담 및 운전자금 확보능력, 조직의 경우 구성원의 적정여부와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항목과 배점기준을 설정하고 신청자별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를 매겨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법인경영체의 조건
 - 총출자액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법인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고 구성원 2/3이상인 해당분야 영농경력 3년이상인 법인
 - 상기법인중 버섯사업 법인으로써 규격출하 실적이 우수한 조직 우선 지원(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조직부터 지원)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벼이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지원
 -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시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사업은 사업비중 보조부문의 ½을 용자로 전환
 - '99사업은 보조전액을 용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대상자 확정
 - 당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 배정되는 결과에 따라 예산요구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확정
 - 우선순위자가 사업포기시 포기서 징구

라. 사업시행

- 사업시행 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예산과 지원대상자가 확정되면 즉시 품목별 표준사업의 세부사업별(menu)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세부사업의 시설내용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는 아니됨.)
 - 시·도지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사업시행계획의 변경
 - 시장·군수는 사업시행 계획수립후 품목별 세부사업간에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개소당 사업단가 범위내에서 사업목적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지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자금지원

- 용자 취급기관 : 농협
- 용자취급기관은 용자금이 배정된 때에는 사업자별로 여신관리계좌에 입금하고 시·군의 사업주관과에 통보
- 사업자는 사업진도를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용자금 취급기관에 용자신청
- 용자취급기관은 시·군의 사업주관과에서 사업추진 실적확인을 받아 용자실행
- 사업주관과는 용자 및 보조금 집행을 특별한 이유없이 지연하여 사업의 부실화 또는 시행에 지장을 주어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제한기준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섯종균배지생산시설 ○ 버섯첨단재배시설 ○ 버섯저온저장고 ○ 생약조제시설 ○ 생약집하장 ○ 제다시설 	'98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기간중 임의로 양도·폐지등 처분금지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여야 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지원 기간 감안하여 설정

나. 보고사항

- 사업시행계획[별지 제1호서식] : 1. 31까지
- 사업추진상황[별지 제2호서식] :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 사업계획 변경 : 사업계획 변경승인시
- 사업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결과[별지 제3호서식] : 익년도 1. 31까지

다.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농림사업실시규정」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부 훈령 제862호, '96. 6.13)」 등에 의함.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촌지도소 또는 시·군 사업담당과

나. 신청자격 : 제5항<사업개요> “바”호의 지원대상자로 적합한자

다. 신청시기(농가) : '97. 1. 31까지

라. 신청절차

- 신청서제출→사업신청서 검토(시·군)→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심사·선정)→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 및 예산요구 → 농림부 예산요구 및 확보 → 시·도시달 → 시·군 시달 → 사업대상자 확정

마. 신청사업

- 품목별 세부사업에 포함시켜야 할 사업과 세부사업별 사업내용을 발굴하여 사업비단가를 정확하게 산출하고 단가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신청

바.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 대상자 선정

- '97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 발기반정비사업과 연계 실시
 - 본사업 대상지역이 「발기반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은 시·군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건설과등)에 신청하여 사업에 우선 반영되도록 조치
 - 「발기반정비사업」을 신청한 대상지역은 본사업 추진기관인 시·군 → 시·도 → 중앙에 계통 보고하여 발기반정비사업 담당부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조치

[별지제1호서식]

'97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계획

1. 시·군별 내역

(단위 : 천원)

시·군 별	세부사업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농가수 (호)
				계	보조	융자	지방 비	자부 담	

- 총괄 및 품목별(버섯, 생약, 차, 잡업)로 작성
- 농가수는 사업대상자수를 표기하고 ()에 전체수혜농가수를 표기

2. 세부사업별 내역

○ 품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단가	사업량	사 업 비					농가수 (호)
			계	보조	융자	지방 비	자부 담	

[별지제2호서식]

‘97년도 / 분기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상황보고

1. 사업진도

(단위:천원)

시·군 별	세부사업별	사업 량	사업진도		사 업 비					비 율 (집행/ 예산)
			주요추진내역	공정	계	보조	융자	지방 비	자부 담	
					집행예산					

주) 주요추진내역 난은 부지확보, 건축허가, 시공업체명, 착공, 건물공사 착수등
주요 작업실시내용 및 일자표시

2. 금후 사업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4. 기타 참고사항

'97 특용작물 생산·유통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실적 보고

1. 사업계획 및 실적

○ 총괄

(단위:천원)

품목 별	세부사 업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비 율		농가 수 (호)	
		사업 량 (A)	사 업 비				사업 량 (C)	사 업 비				C/A	D/B		
			계(B)	보조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계(D)	보조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총계	계														
○○	○○○○														
	○○○○														
	계														
○○	○○○○														

- * -사업량의 품목별 계에는 Package단위개소수를 표시하고 세부사업에는 시설등의 경우 개소수와 면적표시(동/평)
- 농가수는 지원대상자를 기준(단체의 경우 1로)하여 표시하고 ()내에 전체 수혜농가수를 표시
- 실적보고서는 반드시 A4용지에 횡으로 작성

○ 품목별, 시·군별,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천원)

품목 별	세부 사업별	사 업 계 획					사 업 실 적					비 율		농가 수 (호)	
		사업 량 (A)	사 업 비				사업 량 (C)	사 업 비				C/A	D/B		
			계(B)	보조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계(D)	보조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총계	계														
○○	○○○○														
○○	○○○○														

* 버섯, 생약, 차, 잠업 품목별로 각각 작성

39	인삼생산지원 (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원예특작과입니다.

1. 목 적

- 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인삼재배에 필요한 시설 및 자금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
-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와 수출확대 도모

2. 추진방향

- 인삼재배적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점진 확대
- 분산지원에서 집단화,규모화가 가능하도록 집중지원
- 양질의 인삼생산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

3.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 진흥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액)	'98	'99~2004
사업량		33,310ha (750개소)	-	2,420	2,470 (50)	4,060 (100)	24,360 (600)
사업비	계	백만원 2,195,604		175,992	178,388	263,032	1,578,192
	보조	34,442	-	600	1,598	4,606	27,638
	융자	449,547	-	20,300	28,755	57,214	343,278
	지방비	34,374	-	532	1,598	4,606	27,638
	자부담	1,677,241	-	154,560	146,437	196,606	1,179,638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 배경

- 인삼은 그동안 인삼사업법에 의거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인삼산업을 지원하였으나 생산기반 확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인삼 사업법 폐지: '96. 7. 1)
- 전매제 폐지로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인삼산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중단함에 따라 '96년부터 정부에서 지원
- 규모화 촉진 및 노동력 절감을 통한 경쟁력제고 사업에 중점지원

○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원조건

구 분	지원대상자	지원단가	지 원 조 건
인삼식재사업	-재배농가 -생산자 단체	80.0백만원/ha	융자15%, 자부담85 연리5% 3년(신고삼포) 또는 5년(지정삼포)거치 일시상환
우량묘삼생산	-재배농가 -생산자 단체	27.2백만원/ha	보조20%, 융자40, 지방비20, 자부담20 연리 5% 2년거치 일시상환
재배시설현대화	-재배농가 -생산자 단체	19.0백만원/ha	보조20%, 융자40, 지방비20, 자부담20 연리5% 3년(신고삼포) 또는 5년(지정삼포)거치 일시상환
인삼전용농기계	-재배농가 -생산자 단체	24.0백만원/개소	보조20%, 융자40, 지방비20, 자부담20 연리5% 3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시설의 종류

< 우량묘삼생산 >

구 분	금 액	사 업 내 용
계	27.2백만원/ha	○ 양직묘포설치
제 재 료 비	22.0	- 약토(퇴비), 원야토(토양), 모래 등
토양 개량비	5.2	- 약토혼합 및 묘상 두둑작업

< 재배시설현대화 >

구 분	단위	사업량	단가	사업비	비고
<지원방법 1>			원	천원	
- 4각 철관(백관)	개	3,000	1,040	3,120	
- 코팅지주목,연목,도리목(철사)등	개	18,000	669	12,040	
- 개량피복물(180×180cm)	매	3,000	1,280	3,840	
계				19,000	
<지원방법 2>					
- 관수시설	개소	1	4,000,000	4,000	
- 개량지주목,연목,도리목(철사)등	개	18,000	620	11,160	
- 개량피복물(180×180cm)	매	3,000	1,280	3,840	
계				19,000	

- * 농가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업시행
- * 상기 지원방법 중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자재 및 지원단가 변경 가능하나 단가는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재배시설 현대화사업은 개량일복(후주연결식)을 원칙으로 함

< 인삼전용농기계 >

기종	형식명	규격	단가	용도
총사업비			천원 24,149	
(대형농기계) 작반기 인삼수확기 다목적운반차량	RC - 900T GH - 1300T (DR - 1300S) SC신형	(1,300mm) 2,400엔진	13,288 1,420 5,100 (3,700) 6,768	인삼포 두둑작업 인삼채굴 자재운반 및 병충해 방제등
(소형농기계) 인삼이식기 관리기(본체) 구굴기 로타리 청초예취기 해가림설치기 제초기 묘포상광설치기 해가림철거기 농자재운반차	GP - 9000 (SN - 940) AMS - 800S DR - 30 BR - 900 AR - 70 GC - 600 RW - 900 HR - 850 SR - 600 RT - 300	5.5마력 작업폭300mm 작업폭900mm 2조식 용량 60 작업폭450mm 배토폭850mm	10,861 2,900 (1,500) 1,481 68 57 698 2,600 139 605 813 1,500	묘삼이식 인삼전용생력기계를 부착 사용 상면 및 배수로 다지기용 토양분쇄, 상면정지, 두둑양 측면정지등 복합작업 예정지 녹비작물 예취 지주목삽입, 연목결간, 피복 물 부착 제초용 양직묘포 상광설치 해가림철거 삼포에서 각종자재운반

* 농가의 필요에 따라 상기 기종 중 형식명이 다른 기계의 구입이 가능하나 단가는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상기 기종 중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기종당 1대이상의 공급이 가능함. 다만, 다목적 운반차량은 개소당 1대만 가능함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시·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보 조	용 자		
계	2,470ha (50개소)	178,388,000	30,352,800	1,597,600	28,755,200	1,597,600	146,437,600
인천	22(1)	1,670,200	282,120	14,040	268,080	14,040	1,374,040
대전	13(-)	1,040,000	156,000	-	156,000	-	884,000
경기	462(13)	29,375,800	5,745,480	595,160	5,150,320	595,160	23,035,160
강원	144(3)	8,339,000	1,763,400	227,800	1,535,600	227,800	6,347,800
충북	572(12)	42,343,400	7,010,040	292,680	6,717,360	292,680	35,040,680
충남	495(14)	37,154,600	6,128,760	246,920	5,881,840	246,920	30,778,920
전북	483(7)	37,803,800	5,906,280	104,760	5,801,520	104,760	31,792,760
전남	47(-)	2,564,600	566,760	80,920	485,840	80,920	1,916,920
경북	220(-)	17,189,400	2,645,640	29,880	2,615,760	29,880	14,513,880
경남	12(-)	907,200	148,320	5,440	142,880	5,440	753,440

< 인삼식재사업 >

(단위 : 천원)

시·도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보 조	음 자		
계	2,130	170,400,000	25,560,000	-	25,560,000	-	144,840,000
인천	20	1,600,000	240,000	-	240,000	-	1,360,000
대전	13	1,040,000	156,000	-	156,000	-	884,000
경기	330	26,400,000	3,960,000	-	3,960,000	-	22,440,000
강원	90	7,200,000	1,080,000	-	1,080,000	-	6,120,000
충북	511	40,880,000	6,132,000	-	6,132,000	-	34,748,000
충남	449	35,920,000	5,388,000	-	5,388,000	-	30,532,000
전북	466	37,280,000	5,592,000	-	5,592,000	-	31,688,000
전남	27	2,160,000	324,000	-	324,000	-	1,836,000
경북	213	17,040,000	2,556,000	-	2,556,000	-	14,484,000
경남	11	880,000	132,000	-	132,000	-	748,000

< 인삼묘삼생산 >

(단위 : 천원)

시·도 별	사업량 ha	사 업 비					
		사업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보 조	음 자		
계	40	1,088,000	652,800	217,600	435,200	217,600	217,600
인천	1	27,200	16,320	5,440	10,880	5,440	5,440
경기	19	516,800	310,080	103,360	206,720	103,360	103,360
강원	5	136,000	81,600	27,200	54,400	27,200	27,200
충북	2	54,400	32,640	10,880	21,760	10,880	10,880
충남	3	81,600	48,960	16,320	32,640	16,320	16,320
전북	4	108,800	65,280	21,760	43,520	21,760	21,760
전남	3	81,600	48,960	16,320	32,640	16,320	16,320
경북	2	54,400	32,640	10,880	21,760	10,880	10,880
경남	1	27,200	16,320	5,440	10,880	5,440	5,440

< 재배시설현대화 >

(단위 : 천원)

시·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보 조	음 자		
계	300 ^{ha}	5,700,000	3,420,000	1,140,000	2,280,000	1,140,000	1,140,000
인천	1	19,000	11,400	3,800	7,600	3,800	3,800
경기	113	2,147,000	1,288,200	429,400	858,800	429,400	429,400
강원	49	931,000	558,600	186,200	372,400	186,200	186,200
충북	59	1,121,000	672,600	224,200	448,400	224,200	224,200
충남	43	817,000	490,200	163,400	326,800	163,400	163,400
전북	13	247,000	148,200	49,400	98,800	49,400	49,400
전남	17	323,000	193,800	64,600	129,200	64,600	64,600
경북	5	95,000	57,000	19,000	38,000	19,000	19,000
경남	-	-	-	-	-	-	-

< 인삼전용 농기계 >

(단위 : 천원)

시·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소 계	보 조	음 자		
계	개소 50	1,200,000	72,000	240,000	480,000	240,000	240,000
인천	1	24,000	14,400	4,800	9,600	4,800	4,800
경기	13	312,000	187,200	62,400	124,800	62,400	62,400
강원	3	72,000	43,200	14,400	28,800	14,400	14,400
충북	12	288,000	172,800	57,600	115,200	57,600	57,600
충남	14	336,000	201,600	67,200	134,400	67,200	67,200
전북	7	168,000	100,800	33,600	67,200	33,600	33,600
전남	-	-	-	-	-	-	-
경북	-	-	-	-	-	-	-
경남	-	-	-	-	-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에 한함)
단, 인삼식재사업의 사업주관은 인삼협동조합중앙회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원예특작국 원예특작과 (TEL. 02-504-9421, 9422)
- 시·도 : 농산물유통과, 농산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또는 지역특산과(협조 : 인삼협동조합)

다. 자금지원 예정자

- 인삼경작농가
단, 재경지정리 논에 다음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97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배시설현대화, 우량묘삼생산사업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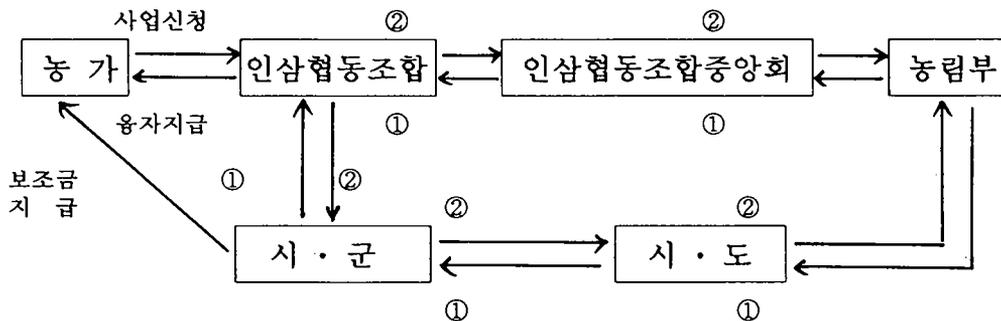
-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은 관할 인삼협동조합이 생산농가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시장·군수에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 인삼협동조합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변경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변경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승인 요청
 - 시·도지사는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일차적으로 시·군간 조정을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본 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2) 사업계획수립시 고려할 사항

- 인삼식재사업 : 인삼산업법에 의하여 경작지정을 받거나 경작신고를 한 자 중에서 융자금을 신청한 자에게 지원함을 원칙
- 재배시설현대화 : 단위사업은 표준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함을 원칙으로하 되 시장·군수가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표준 단위사업 이외의 사업도 추가하여 시행할 수 있음
- 전용농기계
 - 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기계공급 생산업체와 일정기간 사후봉사 이행계약을 체결하여 사후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지원신청 농기계와 동일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대하여는 내구 년수동안 보조지원하지 않음
 - 보조지원 농기계 공급을 한번 받은 농가는 신규신청 농가보다 차순위를 적용

(3) 사업비 지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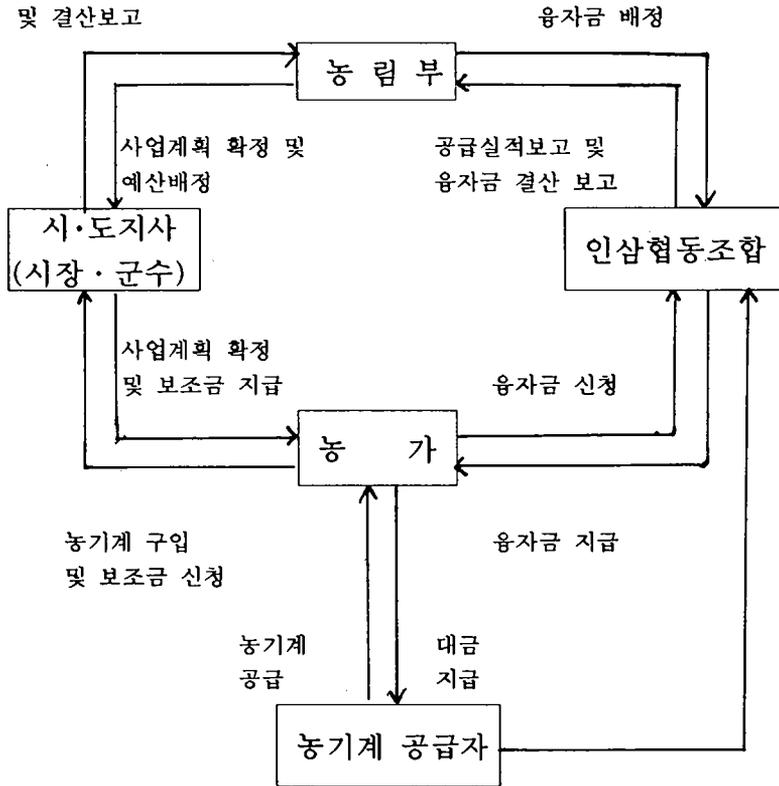
- 인삼식재사업, 우량묘삼 생산 및 재배시설 현대화



- ① 사업계획수립, 시도별 사업량 및 자금배정
- ② 사업추진 결과보고

○ 전용농기계

사업신청, 공급실적보고
및 결산보고



농기계 공급계약 신청
및 사후관리 계약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인삼식재사업·재배시설현대화 3~5년, 우량묘삼생산은 2년

2) 전용농기계

(1) 농기계 구입지원 보조금의 사후관리

(가)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함

(나) 시장·군수(읍·면장)·구청장은 보조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기계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보조금 관리기간동안 매년 1회이상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보조금 교부목적과 조건에 위반하거나 이농 등으로 영농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농기계 사용기간을 감안 보조금의 잔존액을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함. 다만, 농기계 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멸실되거나 시장·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다) 사망,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농할때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 다른 농가에 농기계를 관리 전환할 수 있음

(라) 시·도지사는 필요시 보조사업의 수행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함

(마) (가) 및 (나)의 내용을 위반한 농가에 대하여는 5년간 농업기계화사업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2) 농업기계 유통질서 확립 및 융자금 사후관리

(가) 농업기계 구입자금 융자과정에서 부적합한 융자가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함

- ① 농기계 공급업체가 신청 농기계를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사항과 기종 및 규격이 다른 농기계를 공급한 경우 : 농기계 공급업체 고발

- ② 농기계 실수요자에 대하여는 용자금을 회수하고 5년간 농업기계화 사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③ 농기계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생산 비축자금 및 부품확보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기 지원자금을 회수할 수 있음

(나) 인삼협동조합은 용자지원 농기계의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농기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을 작성, 용자금 관리기간동안 1회이상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사업목적에 위반하였을시 용자금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3) 농업기계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가) 농업기계의 품질보증과 사후관리, 소비자피해보상은 당해 농업기계의 공급자가 책임을 짐

(나) 농기계 공급자는 농기계 공급시 한글로된 품질보증서, 취급설명서 및 부품 목록을 제공함

(4) 기 타

(가) 시·도지사는 농업기계 보유 및 공급상황을 파악하여 적정수량이 보급되도록 함과 아울러 사후봉사가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인삼협동조합중앙회장은 농기계 공급업체가 사후봉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부당공급 행위를 하는 농기계 공급업체에 대하여 시·군 회보에 게재하는 등 농기계 구입 농가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보 고

- 분기별 진도보고 : 매분기 익월 15일이내[별지 제1호서식]
- 사업결과(정산)보고 : 익년 1월말 이내[별지 제2호서식]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관할 인삼협동조합 → 시장·군수

나. 신청자격

- 인삼산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경작지정을 받거나 경작신고를 한 자

다. 신청절차

- 생산농가 → 인삼협동조합 → 시·군 → 시·도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실시규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자율사업 신청서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인삼산업법에 의거 경작지정을 받거나 경작신고를 한 자
- 융자금 부실채권이 없고 융자금 회수가 가능한 자
- 인삼포를 상습적으로 매점매석을 하지 않는 자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비의외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지원

- 대구·경북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시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사업은 사업비중 보조부문의 1/2을 융자로 전환
- '99사업은 보조전액을 융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거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우선순위

- 인삼식재사업 : 인삼산업법에 의거 경작지정을 받거나 경작신고를 한 자중에서 융자금 신청을 한 자
- 우량묘삼생산
 - ① 우량묘삼 생산기술 수준이 우수한 묘삼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표준인삼경작법을 준수하여 경작하고자 하는 자
 - ② 일반경작자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 분기 인삼생산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진도

(단위:천원)

시·군 별	세부사업별	사업 량	사업진도		사 업 비					비 율 (집행/ 예산)
			주요추진내역	공정 (%)	계	보조	융자	지방 비	자부 담	
					집행예산					

2. 금후 사업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4. 기타 참고사항

년도 인삼생산지원사업 전산결과 보고

1.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비 고
			계	이 월	불 용	
계 국고보조 융자금	천원					

2. 정산결과

(단위:천원)

사 업 명	농가수	단 위	사 업 량			예 산				집 행				잔 액					
			계 획	실 적	%	계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계	보 조	융 자	지 방 비	자 부 담	이 월		불 용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3. 잔액발생사유

40	농산물규격출하(자율)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을 산지에서 등급별로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농산물의 대량유통, 견본·통명거래를 가능케 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실현

2. 추진방향

-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 촉진
-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조직 단위로 평가 및 지원실시
- 조직의 활동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지원을 차별화
- 우수 생산자조직에 집중지원하여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12조(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8조 (규격화의 촉진등)

4. 연도별 지원계획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백만매 1,689	241	123	135	164	1,026
사 업 비	계	백만원 804,251	105,357	55,955	65,610	78,500	498,829
	국 고 보 조	152,948	13,169	11,191	13,122	15,700	99,766
	지방비보조	153,168	13,389	11,191	13,122	15,700	99,766
	자 부 담	498,135	78,799	33,573	39,366	47,100	299,297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배경

- 농산물 규격상품화를 통하여 물류이동의 최소화와 대량화로 유통비용 절감
- 농산물의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로 상품화시대에 맞도록 신용·공정거래를 촉진
-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선별·규격 출하함으로써 상품성을 제고시키고 소비지에서의 오물수거 비용의 절감과 환경보호

(2) 지원대상

- 농산물 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

(3) 사업내용 :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자재비 일부 보조

(국고보조20%, 지방비보조20%, 자부담60%)

(4) 지원기준 및 조건

등 급	활 동 기 준	지원내용
최우수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실시(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공동계산제 실시 ○ 조직원의 총출하량 중 공동규격출하비율이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보조 : 규격출하량의 40% 보조하되 - 사업량을 신청량의 80% 이상 반영

등 급	활 동 기 준	지원내용
우수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품질관리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규격출하 비율이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장재 보조 : 규격출하량의 40%보조 하되 최우수조직에 우선지원후 잔여 자금이 있을 경우 사업량을 신청량의 40-60%내에서 차등 반영
일반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품질관리 활동이 없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한 등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조직 및 우수조직에 우선 지원후 잔여자금이 있을 경우 지원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백만매 135	백만원 65,610	13,122	13,122	-	13,122	39,366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 504-9411~2, 농검본소 품질관리과 (0343) 46-0126~7
- 시·도 : 유통과, 농검지소 품질관리과
- 시·군 : 산업과, 농검 출장소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 기준

- 앞의 5. 가. (4)의 “지원기준 및 조건”에 의함.

(2) 우선순위

- 농검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조직의 규격출하 활동을 평가하여 분류한 상위등급 조직부터 우선 지원

(3) 선정 절차

- 시·군은 사업신청내역을 농검에 통보.
- 농검은 사업신청 내역을 검토하고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점검결과 등을 종합 평가하여 최우수조직, 우수조직, 일반조직으로 분류하여 시·군에 통보
- 시·군은 농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 사업량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

라. 사업 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시장·군수는 먼저 대상품목별 사업량을 농검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결정
 - 품목별 사업량은 지역의 농산물 생산실태를 고려하되, 특정품목에 지나치게 편중되지 않도록 유의

- 대상조직별 사업량은 농검의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대상품목의 사업량 한도내에서 다음기준에 의거 결정

분 류	최우수 조직	우수 조직	일반 조직
사업량 결정기준	사업신청량의 80 ~ 100%	최우수조직에 우선 지원후 잔여자금에 있을 경우 사업신청량의 40-60%	최우수조직, 우수조직에 우선지원후 잔여자금에 있을 경우 사업신청량의 30% 이하

- 전년도 실적, 조직활동 등을 감안하여 조직분류(농검)
- 최우수조직부터 사업량을 우선 결정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 우수조직, 일반조직 순으로 순차적으로 결정하되 같은 조직 등급내에서는 농검의 평가점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품목 또는 사업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검 출장소장과 협의하여 변경 시행

(2) 사업비 지원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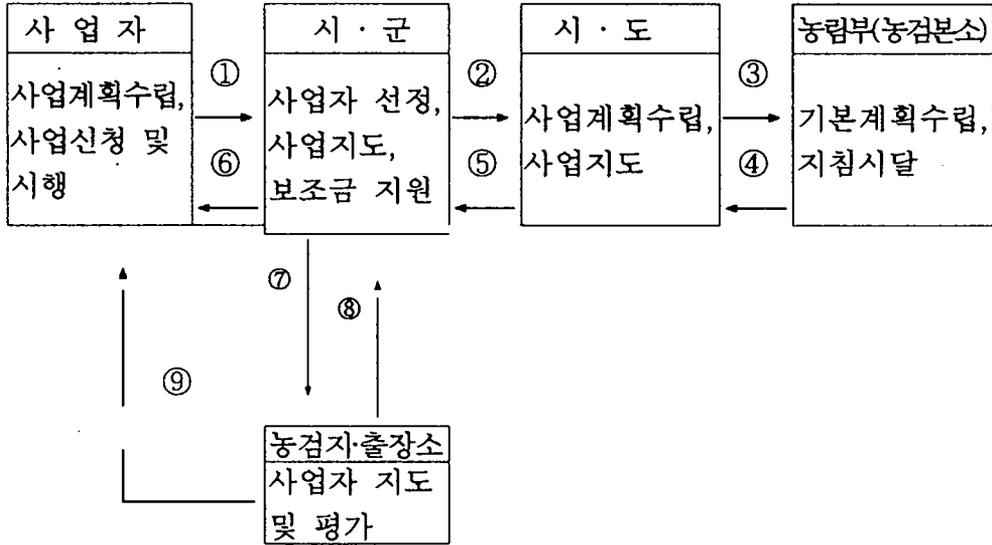
- 사업대상자는 포장재 제작공급실적(제작수량등)에 대한 농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군에 자금요청
 - 사업대상자가 농검의 포장재 공급실적 확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포장재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대금청구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서를 제시
- 시장·군수는 농검의 사업자(생산자조직)별 포장재 공급(제작)확인에 따라 자금집행
- 사업자는 포장재 제작시 표시사항등을 농검과 사전에 협의

마. 기타사항

(1) 사업대상자 교육

- 시장·군수는 사업 대상자에 대하여 연 1회이상 교육 실시
 - 협조 : 농검, 농협
 - 교육내용 : 지원대상자의 임무, 규격출하의 필요성, 자율검사방법, 사업추진체계 등

(2) 사업시행 체계



- ① 사업신청
- ②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신청 보고, 사업실적보고
- ③ 사업신청보고, 사업실적보고
- ④ 기본계획 확정시달, 사업지침 시달, 예산배정
- ⑤ 보조금 배정, 사업자 지도
- ⑥ 보조금 지원, 사업자 지도
- ⑦ 사업자 신청상황 통보, 지원대상자 선정협의 및 결과 통보
- ⑧ 사업자 평가결과 통보
- ⑨ 사업자 지도, 실적점검 및 평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포장재비 지원대장 비치

- 시장·군수는 조직별 지원상황을 기록하여 대장으로 비치하고 사본 1부를 농검에 통보
 - 기록사항 : 조직명, 품목명, 조직등급, 재배면적, 생산량, 포장재 제작 및 지원수량, 지원금액, 규격출하계획량, 규격출하 실적 등

(2) 규격출하 지도·점검 및 평가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로부터 조직별 지원상황을 보고받아 사업지도에 활용
- 농검 출장소장은 지원대상 조직에 전담 검사원을 지정하여 자율검사를 지도하고 출하품에 대해 점검 실시 (출하개시부터 종료까지 주1회 이상)
- 농검 출장소장은 산지 출하품 점검 결과 및 소비지 품질평가 결과를 시·군 및 출하조직에 수시 통보
- 시·군은 농검으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읍·면 및 단위농협에 통보하여 사업지도에 활용토록 조치
- 농검 출장소장은 지원대상 조직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점검결과를 기록
- 규격출하실적, 점검·평가결과 및 조직의 활동상황은 차년도 대상자 선정 및 지원액에 반영

(3) 제재사항

- 시장·군수가 사업자(생산자조직)별로 사업량 결정시 농검의 평가분류에 의한 차등지원 반영이 미흡하거나 반영치 않았을 경우, 차년도 지원예산에서 감액 조치하고 이를 우수 시·군에 추가 배정조치

나. 보고

- (1)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 확정결과 및 지원계획을 당년 1월31일까지 농검 출장소에 통보
- (2) 시·도지사는 반기별 추진실적은 익월 20일까지, 보조금 정산실적은 익년 1월 20일까지 농검 본소에 제출

다. 기타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시·도지사(시장·군수)가 농검지소장(출장소장)과 협의하여 시행
- 시장·군수는 각종 특산품전, 기획전 등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에는 표준규격품이 출품되도록 최대한 노력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읍·면 또는 농협지역조합 (회원조합 포함)

나. 신청자격

- 공동상표를 사용하고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선별·표시하여 공동출하하는 생산자조직 (작목반, 영농회, 영농법인, 농협지역조합 및 회원조합, 기타 자생조직 등)
- 규격출하사업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조직

다. 신청절차

-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은 농림사업지원신청서 및 규격출하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 또는 농협지역조합(회원조합 포함)에 신청
- 읍·면장 또는 농협지역조합(회원조합 포함)장은 사업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시·군에 보고

라. 구비서류

- 농림사업 지원신청서 (실시규정 별지제3호서식)
- 규격출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마. 대상자 선정

- 5.<사업추진체계> 다. (1), (2), (3)을 참조

바. 신청기간 : '97. 1. 31 까지

【별지 제1호 서식】

규격출하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 조직명) :

2. 현 황

조직 현 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소					
	조직결성일시			조직원수(농가)		
재 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ha	톤			
전 년 도 지 원 · 출 하 실 적	포장재비 지원실적		출 하 실 적			
	지원금액	포장재수	계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천원	매	톤	톤	톤	톤
	상 표 명					
	주요출하처					
공 동 유통 시 설 보 유 현 황	집 하 장	선별(과) 장	저온저장 고	일반창고	선별(과) 기	기타공동 시설및장 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조 ()	 ()

※ 상 표 명 : ○○ 농협딸기, ○○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납품 등
 유통시설은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내서

3. 사업계획

○ 세부사업계획(사업신청)

구 분	품 목	포장재 종 류	단량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고	지방비	자담
최우수 출하 (공동계산) 우수출하 일반출하			kg	원	매	원			

○ 출하계획

품 목	생산량	출 하 량				주 출하처	출하 시기
		계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톤						

○ 출하방법별 계획량

- 선별·포장방법

품 목	농가별 포장	공동작업장에서 선별 포장	선과(별)장 이용
	톤	톤	톤

- 수송방법별

품 목	농가별 수송	조직공동 수송	농협계통 수송
	톤	톤	톤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실적이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년도
- 사업내용(사업량, 사업비, 지원액 등)

○ 기타 특기사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 기관은 농림부 시장과입니다.

1. 목 적

- 소량 다품목을 생산하는 영세소농의 출하 편의를 돕고, 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를 촉진하고, 생산자의 조직화와 협동을 유도
- 농산물의 출하가 계절적으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점을 감안, 비수기에는 주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동작업, 공동보관, 양곡수매 등 편익시설로 동 시설을 활용토록 함

2. 추진방향

- 사업자의 경영능력과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직에 지원
- 조직의 발전에 따라 연차별 추가지원을 하여 일시에 과다투자 방지
- 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익년도 정책사업 지원에 반영
- 생산자조직의 유통사업 능력을 배양하여 이들을 통한 산지 유통개선도모
- 신규설치 200개소는 비교적 규모가 큰 100평 이상 집하선별형(공동포장)위주 지원
- 과실, 채소류 중심의 주산지에 위치한 중대형(100~200평) 간이집하장에 임시저장시설, 예냉시설, 간이선별·포장기 등을 품목 특성에 맞게 지원하여 소형 포장센타로 발전시킴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1조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합	계	287,988	115,000	61,013	31,975	20,000	60,000	
	계	보 조	115,195	46,000	24,405	12,790	8,000	24,000
		용 자	20,000	-	-	4,000	4,000	12,000
		지방비	95,195	46,000	24,405	8,790	4,000	12,000
		자부담	57,598	23,000	12,203	6,395	4,000	12,000
간이 집하 장신 규건 설	사 업 량	3,200	1,954	1,046	200	-	-	
	사 업 비	계	187,988	115,000	61,013	11,975	-	-
		보 조	75,195	46,000	24,405	4,790	-	-
		용 자	-	-	-	-	-	-
		지방비	75,195	46,000	24,405	4,790	-	-
		자부담	37,598	23,000	12,203	2,395	-	-
시설 설치 및장 비구 입	사 업 량	1,000	-	-	200	200	600	
	사 업 비	계	100,000	-	-	20,000	20,000	60,000
		보 조	40,000	-	-	8,000	8,000	24,000
		용 자	20,000	-	-	4,000	4,000	12,000
		지방비	20,000	-	-	4,000	4,000	12,000
		자부담	20,000	-	-	4,000	4,000	12,000

※ 사업시작 연도 : '94년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배경

- '94년 수립한 유통개혁대책 중 산지유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94년부터 추진

(2) 지원대상자

- 신규건설 : 지역조합(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중 공동규격 출하를 하거나 목표를 세워 추진하는 조직
- 시설·장비지원 : 국고보조로 설치된 기존 간이집하장 중 100평 규모 이상으로서 소형포장센터로 발전이 가능한 시설 및 조직
- ※ 미곡 생산자 조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단가 및 조건

- 설치규모는 50~200평, 지원단가는 표본설계도상의 단가를 기준하여 지원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의 호응도 및 수집가능한 물량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규모로 설치
- 시설 간이집하장 장비구입 및 시설설치사업 개소당 사업비 한도는 100백만원 임
- 지원조건
 - 신규 건설 : 국고보조 40%, 지방교부금 40%, 자부담 20%
 - 장비구입등 :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2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
 -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상환
-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에는 포함하지 않음
- 취급품목, 조직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건설비외에 부대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음
 - 개소당 지원한도액(신규건설) : 160백만원

(4) 지원시설의 종류

- 간이집하장(50~200평) 건설 및 부대시설 지원
 - 부대시설 : 임시저장시설, 예냉시설(수냉식), 포장기, 결속기, 세척기 등 기계·장비

(5) 기 타

- 설치방법은 지역특성과 사업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표준설계도 중에서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농협중앙회에서 제작한 표본설계도에 따라 설치 가능
- 표준설계도는 지역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사업기간 : 1년간 (1월~12월)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 (전화 02 - 500 - 2675~6)
- 시·도 : 농산물유통과 (광역시:농정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 (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신규건설>

- 사업계획서가 합리적으로 수립되어 있고, 공동출하 활동이 활발 하여 시설의 활용도가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조직
- ※ 조직원의 숫자가 20농가 미만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 '95~'96 포장센터 지원 생산자 조직 및 향후 국고보조로 포장센터를 건설 하고자 하는 생산자 조직은 사업자 선정에서 제외
- 영농조합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 출자액의 50% 이상을 생산 요소인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 구성원의 자질 : 구성원 2/3이상이 집하·공동 출하 등의 실적 3년 이상
- 주산지에 위치하고 운영실적이 3년이상 되는 법인으로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부대사업인 경우 지원
- 영농조합법인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의 여부
 -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영농조합법인은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구에 보고
 - 보고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판매, 수출등 법인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시·군·구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선정
- 여러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지역
-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유통시설 및 타 간이집하장과 중복되지 않는 지역
- 장기적으로 농산물 유통이 규모화되고, 콜드체인화되어도 기본 유통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장비구입 등>

- 100평이상 규모의 간이집하장으로서 지난 1년간 시설운영 결과가 양호하여 지원시 소규모포장센터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조직
- 조직의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규격출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 인근지역에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유통시설이 있어도 물량확보에 애로가 없는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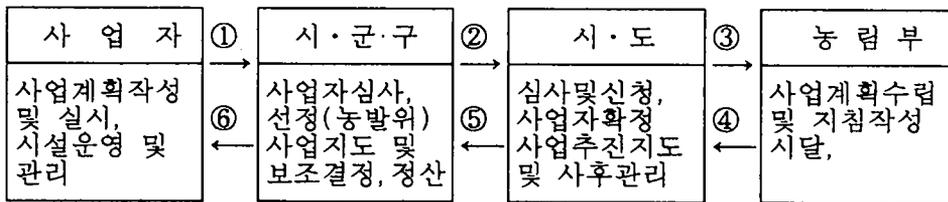
(2) 우선순위

- “별표1” 생산자조직 분류 기준상의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발기반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에 사업장 부지를 선정할 시 우선

<논의 잠식을 수반하는 사업장 부지>

- 대구·경북·충청·전라 지역은 '97 사업부터 정책자금 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 사업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또한 '98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정책자금 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분을 '98~'99년에 걸쳐 읍자로 전환기로 하였으므로 '98 예산 신청시 반영되도록 사전 조치
 - '98년 : 보조 부분의 1/2을 읍자로 전환
 - '99년 : 보조부분 전액을 읍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 밖은 지원대상에 포함하되 우선순위에서 발·산지등 보다 후위 순위로 인정

(3) 선정절차



- ① 사업신청, 보조금신청
- ② 사업신청보고, 사업자선정보고, 사업추진실적보고, 정산실행결과보고
- ③ 사업자선정보고, 사업추진실적보고, 정산결과보고
- ④ 사업계획 확정 (사업물량 및 보·읍조금)시달
- ⑤ 사업계획 및 사업자 확정 통보, 보조금 배정
- ⑥ 사업자 통보, 보조금 지원

라. 사업시행

○ 지원규모 및 조건

<신규건설>

- 설치지역의 경지면적, 교통여건, 농가의 호용도 및 수집가능한 물량등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규모로 설치
 - 설치규모는 100~200평 위주로 함.
- 개소당 지원한도 : 160백만원
 - 농산물 간이집하장의 건설비는 표본설계도 상의 단가를 기준하여 지원
- 사업비 보조 : 총사업비의 80%를 보조 (국고보조 40%, 지방교부금 40%, 자부담 20%) 부지구입비는 자부담으로하되 총사업비에는 불포함

<기존시설 장비구입비 지원>

- 100평이상 규모의 시설 간이집하장 중 조직공동상표를 개발하고 구역출하실적이 양호하여 소규모 포장센타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간이포장시설장비지원
- 개소당 지원한도액 : 총사업비 10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사업비 보조 : 총사업비의 60%를 보조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2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

○ 사업계획변경

사업계획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 지원금액범위 내에서의 계획변경, 사업자변경 : 시·도지사 승인
- 사업장변경, 대표자변경, 기타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

○ 사업비지원방법

- 보조금 집행은 감리기관이 확인한 공사진척 비율(기성고)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지원단가는 표본설계도상의 단가를 기준하여 지원하되,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표준설계도에 의거 사업추진시 사업비 초과 금액은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비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한 후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부담액 집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조치
- 사업자로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금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회의비, 유인비, 출장비 등)는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한다.

마. 기타사항

- 공사 감리감독, 기술적인 문제 등은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수산물유통 공사 또는 농협에 지원을 요청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를 조사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자가 본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 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 구입일	10년간 7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나. 보고·기타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승인사항 있을시 그 처리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즉시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건설사업 추진실적(서식:별표2-1,2-2)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설 운영상황을 사업실시 익년도부터 3년차까지 매반기 익월 2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서식:별표3)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구청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 1월 2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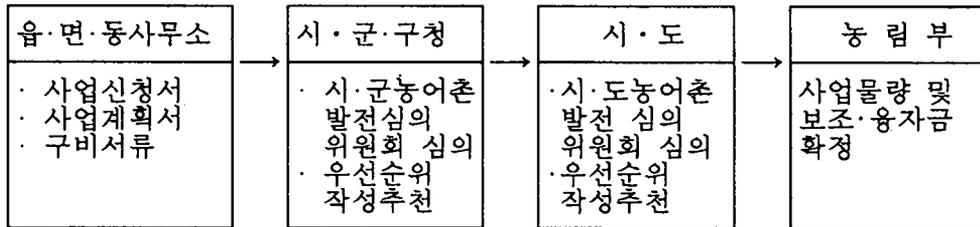
가. 신청서제출기관 : 읍·면·동사무소

나. 신청자격

- 신규건설은 '97년도 사업으로 당분간 사업을 중단하므로 신규접수는 하지 않음
- 기계·장비구입 및 시설설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된 100평이상의 간이 집하장으로서 신청일 현재 준공후 2년이상 경과한 생산자 조직

- 조직공동상표를 개발하여 규격출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으로 농검의 생산자 조직분류기준이 “우”급 이상인 조직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조직
- 인근지역에 포장센터 또는 청과물 종합유통시설이 있어도 물량확보에 애로가 없는 조직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사업희망자는 자율사업신청서(실시규정 제3호서식) 및 농산물 간이집하장 사업계획서(서식:별표4)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군·구청의 총괄부서에 제출

마. 기타사항

- 단위사업으로 농산물간이집하장 신규설치 사업은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94~'97까지 3,200개소를 설치하고 종료됨. ('98년 신규건설 사업신청 불가)
- 기설 간이집하장에 대한 기계·장비구입 및 시설설치 지원사업은 신청자별로 총사업비 100백만원 한도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군·구청에 신청

【 별표 1 】

○ 생산자조직 분류 기준

등 급	활 동 기 준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 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공동계산제 실시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70%이상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 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이상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없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한 등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 별표2-1 】

년도, 분기 간이집하장 신규건설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 자 명	지역 (시군 , 읍면)	사 업 계 획						사 업 추 진 내 역					사업비집행내역			비고	
		사 업 량			사 업 비			부지 확보	건축 허가	착공 일	공정 %	공 예 일	계	보조	자담		
		부 지	건 물	시 설 장 비	계	보 조	자 담										
		m'	m'	종	천원			월일	월일	월일	%	월일	천원				

※ 부지, 건물면적은 ()내에 평으로 환산 기입.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월별추진내용과 함께 첨부

【별표 2-2】

년도, 분기 간이집하장 시설설치 및 장비구입 사업 추진실적 보고

(단위 : 천원)

사업 자 명	지역 (시 군 읍 면)	사 업 추 진 계 획					사 업 추 진 내 역										
		시설 및 장비			사업비 집행계획		시설 및 장비			사업비 집행내역							
					계	국고 보조	국고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계	국고 보조	국고 용자	지방 비	자부 담

※ 시설명 및 규모, 장비명 및 수량 기입.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첨부

○ 기설 간이집하장

- 사업년도 :

- 사업규모 (평형별, 유형별) :

- 사업비(정산결과)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자부담)

【 별표3 】

년도 반기 간이집하장 시설운영 상황 보고

○ 시설설치 및 성수기 활용 상황

사 업 자			시 설 설 치 내 역					사 업 비 (백만원)				운 영 상 황 (성수기)					활용 일수
단체 명	주소	대표 자	사 업 년 도	부 지	건 물 (유형)	시 설 장 비	계	국 고 보 조	지 방 비	자 부 담	품 목	생 산 량	집 하 량	선 과 량 (산 별 량)	공 동 출 하	주 거 래(처)	
				평	평												

○ 비수기 활용상황

○ 기타

[별표4]

간이집하장 장비구입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조직 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								
전년 재배 현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ha			톤				
전년 시설 운영 상황	총출하량	일반출하량	공동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선별(과)량			
	톤	톤	톤	톤	톤	톤			
	(100%)	(%)	(%)						
	상 표 명								
	활 용 일 수								
	주요 출하처								
공동 통 시설 보유 현황	집하장	직판장	선별 (과)장	저 온 저장고	일반 창고	예냉고	선별 (과)기	기타공동 시설및장비	
	동 평 ()	조 ()	()						

- ※ ○ 상 표 명 :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납품 등
- 유통시설은 처리능력 (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 내서

3. 사업계획

- 간이집하장 위치 : 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 부지면적 : m' (평)
- 간이집하장 건축면적 : 평
 - 총사업비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읍자 , 자부담)
- 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계획

	사업량	단 가 (천원)	사 업 비 (천원)					비 고
			계	국고 보조	국고 읍자	지방비	자부담	
합 계	평							
<시설설치>								
·								
·								
·								
계								
<장비구입>								
· 선 별 기								
· 포 장 기								
· 세 척 기								
· 보 냉 차								
·								
·								
계								

- ※ ○ 사업비는 시설 및 기종·장비별로 재원비율에 따라 사업비 산정
 ○ 비교란에는 시설·장비의 제원(처리능력, 제작회사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시설운용계획
 - 원료확보 방안
 - 판매방안

4. 기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
 - 사업명
 - 사업년도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지원액 등)
- 기타 특기사항

42 과수대표생산사업 (자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1. 목 적

- 과실생산성 저하요인이 되고 있는 키큰 노력과다 수형과 노후 과수원의 왜성 수형개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 우량품종의 규격대표를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므로서 조기 다수확으로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과원의 구조개선으로 노동력절감과 기계화 유도
- 우량 규격대표생산을 지원하여 생산성이 낮은 과수원의 조기생산 유도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8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6	'97	'98	'99	2000~2004
사업량		개소 18	2	2	2	2	10
사업비	계	백만원 14,000	1,600	1,600	1,600	1,600	8,000
	음자	7,200	800 (400)	800	800	800	4,000
	자부담	7,200	800	800	800	800	4,000

○ ()내서는 보조액임.

나. '97 사업계획

시·도 별	사업량 (개소)	사 업 비		
		계	융자(농특회계)	자 부 담
계	2	1,600백만원	800	800
충 북	1	800	400	400
경 북	1	800	400	400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추진체계>

가. 사업기간 : '97. 1. 1~ 12. 31

나.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

다. 사업추진방법

1) 사업내용

◦ 사업규모

- 개소당 왜성대묘 10만주 기준

◦ 왜성대묘기준

- 왜성대묘에서 발근이 잘되고, 원하는 품종의 접수로 접을붙여 측지가 4-10개정도 발생되어 식재후 다음년도 부터 조기결실이 될 수 있는 묘목

- 접목 부위 10cm의 위의 굵기가 13mm이상, 측지 4-10개

2) 사업대상자

◦ 종묘업 등록을 필하고 왜성묘목 생산경험자가 있는 생산자조직

◦ 시·도지사로 부터 왜성대묘생산을 위탁받은 왜성묘목 생산 경험이 있는 종묘생산업자

3) 지원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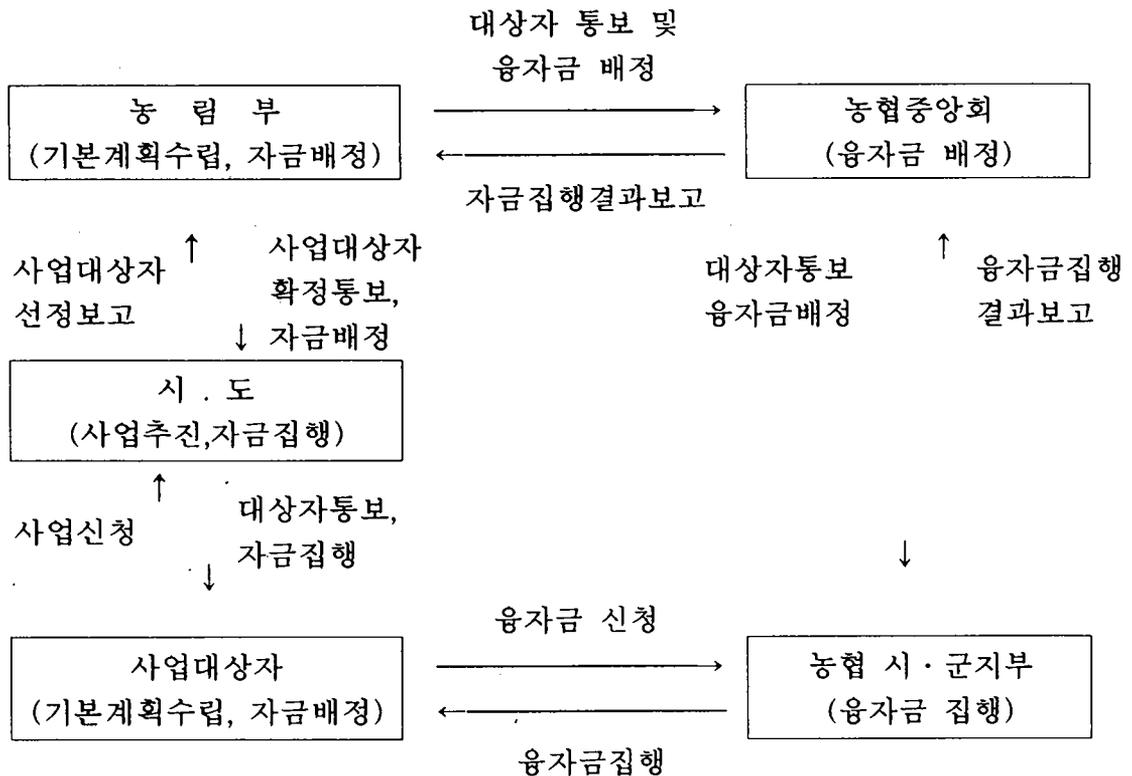
- 재 원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 지원부문 : 왜성대표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부분
- 지원조건
 - 개소당 기준사업비

	계	국고용자	자 부 담
1개소당	800백만원	400	400

※ 지원한도액 이상 초과액은 사업자가 부담

- 지원비율 : 국고용자 50%, 자부담 50
- 용자조건 : 연리5%,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4) 사업추진체계



라. 사업신청

1) 자격

- 종묘업등록을 필하고 왜성묘목생산경험자가 있는 생산자조직
- 시·도지사로부터 왜성대표생산을 위탁받은 종묘생산업자
(왜성묘목생산경험자)

2) 절차

- 시·군 → 시·도 → 농림부

3) 구비서류

- 종묘업등록증(사본)
- 왜성대표 생산 및 공급 계획서
- 왜성묘(M9,M26) 확보상황

마. 대상자선정

1) 선정기준(우선순위)

- 가) 종묘업등록을 필하고 왜성묘목생산경험자가 있는 생산자 조직
- 나) 시·도지사로부터 왜성대표생산을 위탁받은 종묘생산업자

2) 선정절차

- 선정기관 :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시·도 농어촌발전심의
회를 거쳐 선정
- 심의방법
 - 생산자조직 또는 종묘생산업자가 신청한 사업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공개심의

○ 심의시 고려사항

- 왜성대목(M9 원칙, M26) 확보사항
- 왜성묘목 생산 경험이 있는지 여부
- 왜성묘목 공급처가 분명한지 여부
- 사업비의 조달능력(부지확보, 자담능력 등)
- 사업계획의 적정여부(사업목적 부합 등)
- 사업추진일정의 적정성 여부
- 기타사항

바.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계획 수립 : 정부가 제시한 표준사업을 기초로 해당조직 및 종묘업자가 왜성묘목을 생산 및 소비(공급)등을 명확히하여 사업계획 수립[별지 제1호서식]
- 사업계획변경 :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중에 당초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실시

2)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비는 반드시 기성고(추진실적)에 따라 집행(정산시에는 융자금을 사업 완료전에 전액이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상자 선정 및 자금관리 철저)
- 융자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농협(전문농협 포함)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을 실시하는 생산자조직 또는 종묘생산업자가 희망하는 융자 취급기관에 융자금을 대여
 - 기타사항은 “농특회계 융자업무 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행정사항>

가. 왜성대표 생산과정시의 관리

- 시·도지사과 시장·군수 책임하에 지도기관 전담지도사 배치와 경험이 있는 기관의 생산자문을 받아 수시로 책임확인 지도할 것

나. 사후관리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

다. 보 고

- 사업추진상황보고[별지 제2호서식] : 연4회(분기말 익월 15일)
- 사업추진결과보고[별지 제3호서식] : 익년도 3월말

라. 기 타

- 기타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농림사업실시규정” 등 관계규정에 따른다.

6. '98년도 사업선정 및 대상자 선정 안내

-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참조

[별지 제1호서식]

사과왜성대표생산사업신청서

생산자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Tel)		
기술자	(성명) (학력)	(주민등록번호) (경력)		
중요업등록	(등록일) (품종등록과종)	(등록번호)		
자산규모	백만원			
묘목생산 계획	과종명			
	생산기간			
	생산지역			
	소요예산	계	음 자	자 부 담
	천원			
<p>위와같이 과수대표생산사업을 신청합니다.</p> <p>붙임 : 사업계획서 1부.</p> <p style="text-align: right;">199 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농 립 부 장 관 귀 하</p>				

[별지 제2호서식]

(년도, 분기) 사과왜성 대표생산지원사업 추진상황

(단위 : 천원)

세부사업별	사업량	사업추진종합진도		사업비 집행상황			
		계		음 자		자부담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				

[별지 제3호서식]

예산요목 생산사업 추진결과 보고

(도)

항 목	사업진도 계 획	자 금			사업시기 년, 월	비 고
		계획 천원	집행실적	%		
○ 표목공급 예정	%					

43	인삼종합처리장(공공)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원예특작과입니다.

1. 목 적

- 인삼협동조합에 인삼의 저장·가공·판매등 종합처리능력을 갖추어 수급 및 가격안정과 유통의 원활을 도모코자 함

2. 추진방향

- 인삼협동조합의 인삼가공 능력을 제고하여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 인삼류의 품질을 높여 주력 수출품으로 육성

3. 근거법령 : 인삼산업법 제3조(인삼산업진흥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 ~ '95	'96	'97 (예산액)	'98	'99~2004
사업량		14개소	-	2	2	2	8
사업비	계	백만원 29,400	-	4,200	4,200	4,200	16,800
	보조	11,760	-	1,680	1,680	1,680	6,720
	융자	5,880	-	840	840	840	3,360
	지방비	5,880	-	840	840	840	3,360
	자부담	5,880	-	840	840	840	3,360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 배경
 - 인삼협동조합은 전매제하에서 공사의 보조적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삼의 가공·판매등 자율기능 부족
 - 국산인삼의 품질은 세계최고 수준이며, 해외에서 그 성가가 높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서의 고급화와 다양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지인삼 가공 및 판매산업의 주체로 육성
- 사업대상자 : 인삼협동조합 또는 중앙회
- 지원단가 : 2,100백만원/1개소
- 지원비율 : 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 지원시설의 종류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규 모	금 액	사 업 내 역
계		2,100	
○ 건물	560평	1,120	○ 560평 × 2,000천원
○ 가공기계	-	370	○ 가공기계 설치비
○ 저온시설	120평	240	○ 120평 × 2,000천원
○ 기계시설	자동포장기의 7종	202	○ 자동포장기1대, 온라인 터미널2기등
○ 내부시설	-	168	○ 내부시설비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시·도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 산 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융 자		
계	2개소	백만원 4,200	2,520	1,680	840	840	840
충 남	1	2,100	1,260	840	420	420	420
경 북	1	2,100	1,260	840	420	420	42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원예특작국 원예특작과(02 - 504 - 9421~2)
- 도 : 농산물유통과(충남 농산과, 경북 유통특작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 또는 지역특산과

다. 자금지원대상자

-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 '97년부터 재경지정리 논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시장·군수는 표준시설기준<별표1>에 제시된 시설기준중에서 지역실정에 맞도록 필요한 시설 및 기종을 선택하여 사업계획수립
 - 시장·군수는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사업계획을 변경시행
-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 및 지방비는 시장·군수가 사업실적에 따라 집행
 - 용자는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서 사업실적에 따라 인삼협동조합에 집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시장·군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인삼종합처리장	준공일	10년	○ 농림사업실시규정 및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에 준함.	○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목적의 사용 또는 매각할 수 없음.

나. 보고·기타

- 분기별 진도보고 : 매분기 익월15일이내 [별지제1호서식]
- 사업결과(정산)보고 : 익년1월말이내 [별지제2호서식]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장·군수(자치구 포함)

나. 신청 자격 :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

다. 신청 절차

- 인삼협동조합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검토(시·군)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사·선정 →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사·선정 및 예산요구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농림사업실시 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마.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

○ 선정절차

- 인삼협동조합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검토(시·군) →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사·선정 → 시·도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사·선정 및 예산요구 → 농림부

○ 논에 본사업과 관련하여 벼이의 타작물재배 및 시설설치시 차등지원

- 대구획 재경지정리지역은 사업지역에서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할 시는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98사업은 사업비중 보조부문의 1/2을 융자로 전환
 - '99사업은 보조전액을 융자로 전환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은 사업대상순위를 받이나 산지보다 후순위 부여
- ※ 사업규모, 시설내용은 조정가능

[별표 1]

인삼종합처리장 지원사업 개소당 표준시설기준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수 량	금 액	산 출 내 역
○ 건 평	560평	1,120	○ 건축비 560평×2,000천원
○ 저온시설	120평	240	○ 평당시설비 2,000천원×120평
○ 운반차량	1대	20	○ 운반차량 1대×20,000천원
○ 지 계 차	1대	15	○ 지계차 1대×15,000천원
○ 냉난방기	2기	5	○ 매장 냉난방시설 2대×2,500천원
○ 온라인터미널	2기	40	○ 온라인시스템 설치비 40,000천원
○ 통신기기	5대	6	○ 통신시설 설치비 6,000천원
○ 건 조 기	4대	12	○ 건조시설 12,000천원
○ 세 척 기	2대	4	○ 세척시설 4,000천원
○ 자동포장기	1대	100	○ 백삼 자동포장시설 100,000천원
○ 내부시설		168	○ 내부시설비 560×300천원
○ 가공기계		370	○ 가공기계 설치 370,000천원
계		2,100	

[별지 제1호 서식]

년도 / 분기 인삼생산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

1. 사업진도

(단위:천원)

시·군 별	세부사업별	사업 량	사업진도		사 업 비					비 율 (집행/ 예산)
			주요추진내역	공정 (%)	계	보조	융자	지방 비	자부 담	
					집행예산					

주) 주요추진내역 난은 부지확보, 설계서 작성, 건축허가, 시공업체선정, 착공, 건물공사 착수등 주요작업 실시내용 및 일자표시

2. 금후 사업추진일정

3. 사업추진상 문제점(부진사유) 및 대책

4. 기타 참고사항

[별지제2호서식]

년도 인삼종합처리장 사업 정산결과 보고

1. 사업비 집행내역

(단위:천원)

	계 획	실 적	잔 액			비 고
			계	이 월	불 용	
계 국고보조 용자금						

2. 정산결과

(단위:천원)

사 업 명	단 위	사 업 량			예 산				집 행				잔 액					
		계 획	실 적	%	계	보 조	응 자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응 자	지방비	자부담	이월		불용	
															보조	응자	보조	응자

3. 잔액발생 사유 (구체적으로)

4. 이월시 추진계획

44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 기관은 농림부 시장과입니다.

1. 목적

- 넓은 장소에서 신속한 거래를 통해 대량의 농수산물을 신선한 상태로 유통
- 수급을 반영하는 정확한 가격형성으로 생산 및 소비 조절에 기여
- 공개 경쟁적인 공정한 가격형성으로 공정거래를 유도

2. 추진방향

- 전액 공공투자로 건설하여 운영의 공익성 제고
- 전국대도시 및 주요 중소도시에 '98년까지 34개소 건설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 4
사업량			11 (21)	6 (18)	1 (17)	- (17)	- (1)
사 업 비	계	백만원					
	계	1,202,999	447,572	176,930	222,920	339,777	15,800
	보조 용자	485,518	184,373	72,079	90,749	130,417	7,900
	지방비 자부담	-	-	-	-	-	-
		717,481	263,199	104,851	132,171	209,360	7,900
		-	-	-	-	-	-

※ 사업량은 신규착수 개소수이며, ()내는 계속사업을 포함한 지원개소수 임(건설목표 34개소중 '96.11월현재 개장 : 14개소)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 (1) 지원대상 :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는 시(특별시, 광역시, 시)
- (2) 지원내용 : 도매시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건축공사비 소요액
- (3) 지원조건

[특별시, 광역시 : 국고보조 30%, 지방비부담 70%
]	기타 일반시 : 국고보조 50%, 지방비부담 50%
- (4) 사업시행체계
 - 집행기관 : 시
 - 집행절차 :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신청(시) → 대상지역 선정(농림부)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 량	사업비					
		사업비계	예산안 (재원명)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7	백만원 222,920	90,749	90,749	-	132,171	-
익 산	1	1,190	595	595	-	595	-
부산제2	1	16,600	4,980	4,980	-	11,620	-
인천제2	1	1,846	554	554	-	1,292	-
포 항	1	11,000	5,500	5,500	-	5,500	-
진 주	1	5,206	2,603	2,603	-	2,603	-
원 주	1	3,420	1,710	1,710	-	1,700	-
정 읍	1	2,000	1,000	1,000	-	1,000	-
대구제2	1	39,713	11,914	11,914	-	27,799	-
대전제2	1	30,000	9,000	9,000	-	21,000	-
고 양	1	36,478	18,239	18,239	-	18,239	-
성 남	1	27,840	13,920	13,920	-	13,920	-
순 천	1	4,200	2,100	2,100	-	2,100	-
구 미	1	4,000	2,000	2,000	-	2,000	-
마 산	1	17,500	8,750	8,750	-	8,750	-
인천(확장)	1	15,397	4,619	4,619	-	10,778	-
천안(확장)	1	1,530	765	765	-	765	-
안동(확장)	1	5,000	2,500	2,500	-	2,500	-

※ 추진지역중 예산 미반영지역 : 3개소(서울서남,광주제2,강릉)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특별시, 광역시, 시)

나. 사업담당부서

< 지도감독 기관 >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 (02 - 500 - 2675~6)
- 도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사업주관 기관 >

- 서울특별시 : 산업경제국 농수산유통과
- 광역시 : 지역경제국 농정과
- 시 : 산업과, 농정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특별시에는 공영도매시장 3개소 건설
- 광역시에는 공영도매시장 2개소 건설
- 도청소재지 시에는 공영도매시장 1개소 건설
- 기타시의 경우에는 타도매시장과의 거리, 농수산물 유통시설 현황, 지방비 부담능력 및 의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선정
단, 인구 20만 이상의 시를 우선함

(2) 선정방법

- 공영도매시장 건설을 희망하는 지역중 농림부에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 국고예산편성시에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예산내역서에 명시
- ※ 정부의 건설추진 목표인 34개소의 선정을 완료하고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신규선정계획 없음

라. 사업시행(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 및 개장업무편람 참조 : 농림부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① 사전 조사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 기존 유통체계 조사·분석
 - 반출입 현황, 기존 도매시장 현황, 소매시장 현황 등
-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조사 연구
 - 사업조사연구 : 인구, 교통계획, 주요 도로망, 입지, 자연환경 등
 - 규모, 위치 및 투자비 추정
- 사업계획에 대한 정책결정
- 관계기관 사업계획 제출 및 승인 (보조사업 결정 등)
 - 국고예산 편성으로 사업계획 확정

② 기본계획 수립

- 실무작성반 편성 : 시청 담당과
 - 건설에 따른 적정 상근인원 확보 (도시계획, 건설기술직 포함)
- 추진위원회 구성
 -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지역 관련 단체장, 기타 농수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시장관계자 등으로 구성
- 전문기관 용역의뢰 :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방안
 -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 기본계획 및 관리운영 방안 확정
- 도시계획 시설 결정, 도시계획사업 실시 인가 및 용지확보

③ 도매시장 건설 추진

- 시장건설 및 개장추진 전담기구 발족
 - 시장 건설추진반과 관리운영추진반으로 구분
- 건설공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실시
 - 시설물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
- 교통 및 환경 영향 평가
- 공사 발주 및 추진

④ 도매시장 개장준비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추진)

- 도매시장 관리운영계획서 및 업무규정 작성 (도매시장 관리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기본계획)
 - 도매시장 개설 허가권자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쳐 승인을 득한 후 확정
-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작성 및 모집
 - 투명한 공개모집 절차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기준 마련
- 입주대상 도매시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 도매시장 홍보 추진

⑤ 도매시장 개장 운영

- 공사준공
 - 관리부서에 시설인계 및 시장개설 허가
- 도매시장 관리조직 입주
- 도매시장 관련조직 입주 및 업무수행 준비
- 개장운영 초기 지도
 - 공정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 활성화 추진 (후적지 정비 추진)

⑥ 사업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도매시장 건설사업의 대상지역 변경 및 국고보조예산액 변경 등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농림부장관 → 시·도지사 →시장
 -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소요액을 고려하여 배정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시장)는 법령의 규정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도매시장 건설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도매시장건설 국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건물 및 부속설비	개설	폐쇄		

나. 보고·기타

(1) 보고 (시→시·도→농림부)

- 분기별 건설 추진실적 : 분기별 도매시장 건설 추진실적을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보고
- 당해년도 정산보고 : 당해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은 지역은 익년도 2월말까지 기일엄수하여 정산보고(별지 제2호 서식)
- 최종 정산보고 : 도매시장 건설이 완공되어 개장하는 지역은사업완료 즉시 연도별로 보조금 집행실적을 작성하여 사업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정산

(2) 협조사항

- 용역기관에 건설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 할 경우나 도매시장 시설물의 배치구조를 확정할 경우에는 농림부, 시·도, 유통관련 전문기관 및 시장중사자 등의 자문을 받아 시행착오를 미연에 방지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특별시, 광역시, 시)

나. 신청자격

- '97년현재 국고예산을 보조지원 받아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 중인 시

다. 신청절차

- 도매시장 건설 사업비신청(시) → 대상지역 선정(농림부)

라. 구비서류

-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 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예산신청시 농림부에 별도 제출

마. 기타사항

-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34개소가 개장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므로 신규사업 대상자 선정은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보조금 신청서

1. 사업개요

- 위치 :
- 사업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 총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년도 사업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 사업기간 :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특·광역시 30%, 일반시 50%)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계	국고	지방비	
					○ 지방비에 대한 차입계획이 있을 경우에 기재

3. 지역별 장기유통시설 확보 및 배치계획

- 장기 유통시설 확보계획
 - 도매시장, 공판장 확보계획

- 장기유통시설 배치 및 물량처리계획

4. 지역 유통시설 현황

부류별	시 장 별	시 설		거래(○○년)	
		대 지	건 물	물 량	금 액
		m ²		톤	백만원

※ 시장 : 도매시장, 공판장, 유사시장별로 작성

5. 예산소요액 산출근거

가. 예산확보 및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년도별	예산확보액			집행액			미집행액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93									
'94									
'95									
'96									
'97(P)									
계									

나.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계획 및 실적

(단위 : 백만원)

일자	주요사업내용	사업비집행액 (예정액)	비고
계			

다. 예산요구년도 소요사업비 추정

(단위 : 백만원)

일 자	주 요 사 업 내 용	소요액	비 고

6. 기타

- 도매시장 건설 연구용역 추진상황
 - 연구보고서가 제출된 곳은 연구보고서 및 내용 (용역기관, 용역비 등)

- 총사업비 증가사유 작성
 - 건설중인 지역의 총사업비 증가시 구체적인 설명자료(3페이지내외)를 작성할 것

7. 총사업비 소요액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금액	산출내역
계		

【별지 제2호 서식】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보조금 집행실적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백만원 (국고 , 지방비)

2. 일정별 사업 추진실적(구체적으로)

3. 연도별 예산 확보상황

(단위 : 천원)

연도별	국가예산편성액			예산확보액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4. 보조금 집행실적

가. 연도별 재원별 집행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예 산 액			집 행 액			미집행액			미집행액 조치내역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나. 사업내용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예 산 액	집 행 액	미집행액	비 고
부지매입비				
건설공사비 건축 토목 · ·				
부대비 기본계획 실시설계 · ·				

다. 건설공사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공 종 별	계	도 급	관 급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 · 기타			
계			

5. 매입토지 조서

(단위 : 천원)

지 번	지 목	지적(m ²)	매입금액	비 고
계				

6. 주요시설물 내역

가. 건설공사 개요

공 종 별	시 공 자
일반공사(건축, 토목, 기계)	
전 기 공 사	
통 신 공 사	
소 방 공 사	
도시가스설비공사	
조 경 공 사	
설계자 및 시공감리자	

나. 건축물 현황

(단위 : m')

시 설 명	동수	층수	구 조	건축면적	연면적

다. 토목시설물 현황

라. 설비시설 현황

마. 조경 현황

7. 건설사업 전후 사진

가. 착공전(전체)

나. 완공후(전체)

다. 각 시설물별 사진

8. 기타 참고자료

45 농산물공판장건설 (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 기관은 농림부 시장과입니다.

1. 목적

- 중소도시지역의 농산물유통량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도모
- 관내 농산물의 처리능력 제고 및 공정거래로 상거래질서 유지의 선도적 역할

2. 추진방향

- 공영도매시장이 없는 중소도시의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 도모
- '98년까지 34개소 지원 건설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9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3	6	7	3 (10)	- (3)
사업비	계	백만원 89,180	36,440	18,588	12,740	15,762	5,650
	보조	33,806	12,710	7,435	5,096	6,305	2,260
	융자	16,908	6,360	3,718	2,548	3,152	1,130
	지방비	16,908	6,360	3,718	2,548	3,152	1,130
	자부담	21,558	11,010	3,717	2,548	3,153	1,130

※ 사업량은 신규착수 개소수이며, ()내는 계속사업을 포함하는 지원 개소수임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 (1) 사업내용 : 산지 및 소비지 농산물공판장 건설
- (2) 지원대상 : 농협회원조합
- (3) 사업규모 :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시행 조합에서 결정
- (4) 지원내용 : 농산물공판장 건설 부지매입비 및 건물 건축비
- (5) 지원기준 및 조건
 - 국고보조 40%, 지방비보조 20%, 국고융자 20%, 자부담 20%
 - 융자금의 지급
 - 융자조건 : 년리 5%, 3년거치 7년상환
 - 채권보전 : 농협의 여신관계 규정에서 정한바에 의함
 - 융자금 종결기한 : '98. 3. 31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지역별	사업량	총사업비	'97 사업비					
			사업비계	예산안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7	백만원 22,027	12,740	7,644	5,096	2,548	2,548	2,548
강원평창	1	3,211	1,383	830	553	277	277	276
충남부여	1	4,356	2,987	1,792	1,195	597	597	598
충남서산	1	3,620	2,835	1,701	1,134	567	567	567
충남논산	1	4,629	2,082	1,249	833	416	416	417
전북장수	1	2,078	833	500	333	167	167	166
경북성주	1	2,133	1,270	762	508	254	254	254
충남예산	1	2,000	1,350	810	540	270	270	27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시장·군수

나. 사업담당 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 (02-500-2675, 2676)
- 도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시·군 : 유통과 또는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신청지역

- ① 시·군지역으로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이 설치되지 않아 대량의 농산물 거래장소가 필요한 지역
- ② 공판장은 설치되어 있으나 도심에 위치하여 차량출입이 원활하지 못하고 인근 주택가등에 공해를 유발시켜 민원이 야기되어 이전이 필요한 지역
- ③ 공판장 또는 도매시장이 기 설치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아 유통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기존시설의 확장도 불가능하여 추가로 공판장 건설이 필요한 지역
- ④ 경매식 집하장시설이 있으면서 공판장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

□ 사업자 선정

- ① 부지를 기확보하였거나 사업시행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자
 - 도시계획 및 건축법등 관련제도상 저촉되지 않는 부지확보가 가능한 자
- ② 조합의 투자여건(자부담능력)이 양호하고, 대표자가 운영 능력이 있는 자
 - 창고시설(저온, 상온) 및 가공처리장등 부대시설을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
- ③ 사업기간내에 건설을 완료할 수 있는 자

(2) 선정절차

사업희망농협 (농협회원조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지선정, 사업규모, 자금조달계획 및 운영계획 <p style="text-align: center;">이사회 의결</p>
시·군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발계획 반영여부 ○ 사업자 적격여부 ○ 사업타당성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p>
도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지역의 적정성 ○ 사업수행능력, 사업효과 ○ 지방비 부담능력 등 적격성 검토 <p style="text-align: center;">도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p>
농림부	←→검토 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 검토, 우선순위 결정 <p style="text-align: center;">재정경제원 예산심의 결과와 연계</p>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96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조합은 '97. 2. 15까지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서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 및 도지사는 사업시행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96. 2월말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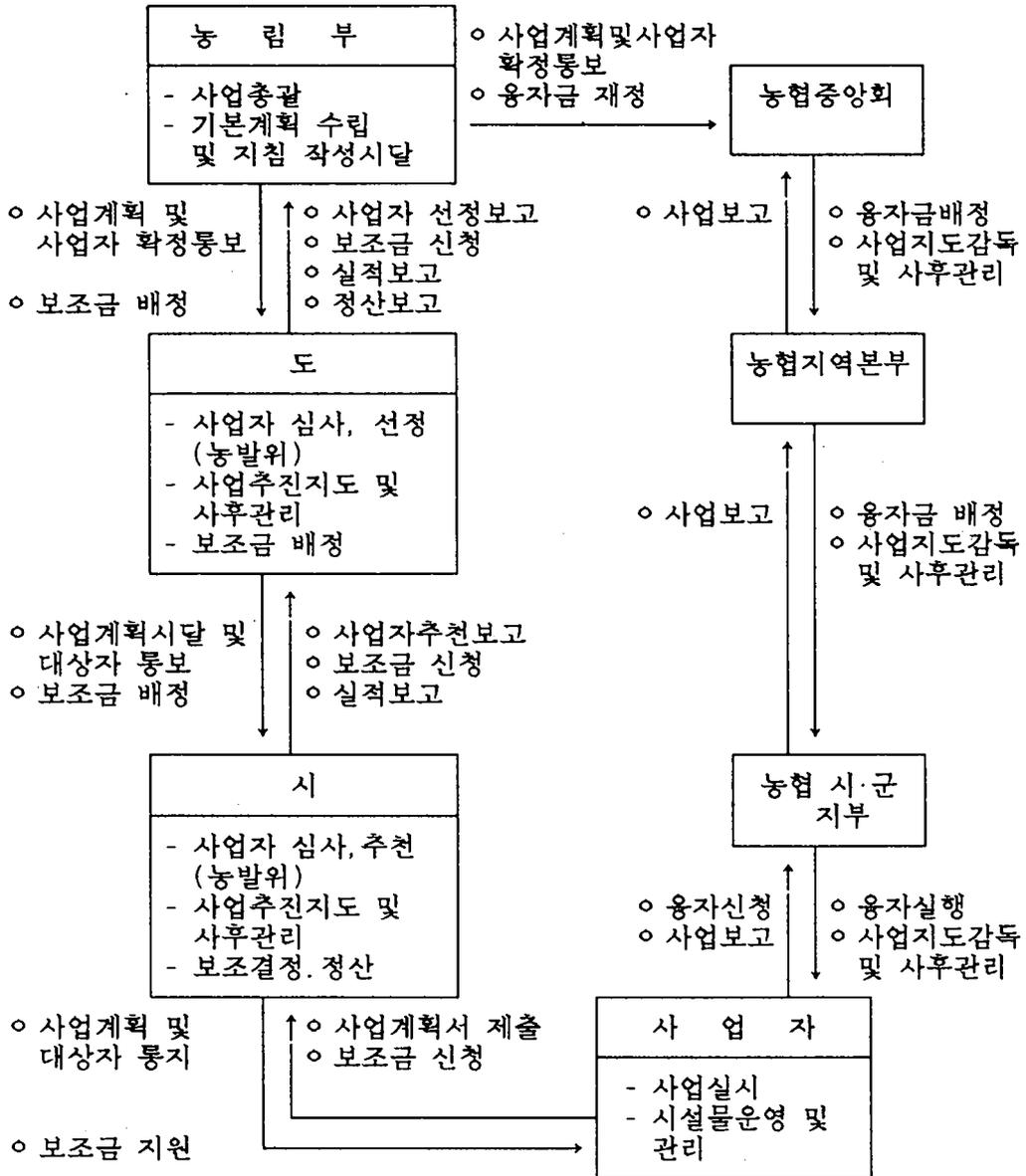
(2) 사업비 지원방법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의 내시 및 자금배정 : 농림부장관
 - 보조금 교부결정 : 도지사(시장·군수)
 - 보조금 배정 : 농림부장관 → 도지사 → 시장·군수
 - 보조금 지급신청 : 회원조합장 → 시장·군수 → 도지사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
 - 도지사 책임하에 검정 및 정산 실시
 - 당해연도 국고지원을 받는 지역은 그 결과를 익년도 2월말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공판장건설이 완공되어 개장하는 지역은 사업완료 즉시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 기타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3) 사업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대상지역 및 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할 시는 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시행 체계도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해당조합이 하고, 도지사 및 농협 지역 본부장은 감독책임을 진다
- 해당조합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 도지사와 농협중앙회장은 시설물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등을 할 수 있다
- 공판장은 도지사의 승인없이 처분 및 기타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 사업기간 : '97. 1. 1 ~ '98. 12. 31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설비	개설	10년	매각,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양도,교환,대여,담보제공	

나. 보고·기타

(1) 공사감독 및 보고

- 도지사 및 농협 지역본부장은 공사 추진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지고, 이상유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체계 : 사업조합 → 시장·군수 → 도지사 → 농림부장관
 - 보고기한 및 방법 :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서면보고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협회원조합

나. 신청자격

- '97년 현재 국고예산을 보조지원 받아 농산물공판장을 건설하고 있는 조합
- '98년도에 신규로 국고예산을 보조지원 받아 농산물공판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조합

다. 신청절차

- 공판장건설 사업비 신청(농협회원조합) → 시·군 → 시·도 → 대상지역 선정(농림부)

라. 구비서류

- 농산물공판장 건설 세부사업시행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 예산 신청시 농림부에 별도 제출

마. 기타사항

- 계속사업지역으로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서를 첨부하시기 바람

【별지 제1호 서식】

농산물공판장 건설 세부사업 시행 계획서

1. 사업개요

- 위 치 : (위치약도 첨부)
- 사업규모 : 부지 평, 건물 평
- 총사업비 : 백만원
 - ○ ○년도 사업비 : 백만원
- 사업기간 :
- 사업추진 조합명 :

2.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 업 내 용	투자(재원조달)계획					비 고
		계	국 고		지방비	자 담	
			보조	융자			
계							

3. 지역별 유통시설 및 생산현황

가. 지역유통시설 현황

부류별	시 장 별	시 설		거 래 (년)	
		부 지	건 물	물 량	금 액
		평		톤	백만원
계					

※ 시장별 : 도매시장, 공판장, 경매식집하장, 유사시장 별로 작성

나. 주요품목별 생산 현황 (5개년)

(단위: 톤)

품 목					
계					

※ 품목은 청과물(과일, 채소)을 대상으로 함(양곡제외)

4. 농산물공판장 건설사업 시행계획

가. 공판장 건설사업의 필요성

※ 신청당시의 인구수등 지역 유통여건을 포함한다

나. 총사업비 산출

	규 모	단 가	소요액	비 고
부 지 건 물	평			
계				

※ 건물에 따라 구체적인 시설명과 규모를 별지로 작성

다. 취급물량 추정

	1 일 평 균		연 평 균		비 고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과일					
채소					
계					

라. 연차별 수지전망 (개장후 5년간 손익 추정)

수 익					
비 용					
순손익					

마. 일정별 추진 계획(구체적으로)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소요예산 등)

바. 사업예정지의 타당성 검토

(1) 입지선정 사유

(2) 입지 형태별 면적 현황

(3) 부지구입여건 및 관련 법령상 설치 가능성 검토

(4) 대체입지 선정 가능성 검토

※ 사업예정지의 지적도면 첨부

5.기타 참고자료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1. 사업목적

- 꽃 박람회개최로 꽃 수요 저변확대 및 국민정서 함양, 첨단재배기술 소개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 기반구축

2. 추진방향

- 경기도가 고양시의 지역 특성을 감안 화훼육성사업을 위해 중점정책사업으로 추진
- 고양시장이 별도의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수립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 특별초치법 제14조 및 제16조

4. '95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 사업기간 : '97. 5. 3~5. 18 (16일간)
- 규 모 : 부지 총 30만평 (호수 10만평 포함)
- 총사업비 및 지원액 : 10,000백만원 중 국고 500백만원 지원
- 사업대상지역 : 경기도 고양시
- 사업집행 절차

사업 및 예산신청

사업신청 및 정산보고

농 립 부

경 기 도

고 양 시

사업계획확정 및 보조금배정

사업계획 확정통보

<기대효과>

- 꽃 박람회개최로 화훼산업발전 도모
- 국민정서함양 및 꽃 재배기술 교류

47 농산물 물류표준화(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입니다.

1. 목 적

-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 등 물류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물류표준화, 하역기 계화를 추진함으로써 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

2. 추진방향

- 농산물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와 관련된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기계화
- 산지에서부터 파렛트 적재, 기계화 하역으로 일관 수송체계 구축
- 농산물뿐만 아니라 비료, 사료분야와 연계 추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30조,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 리에관한법률 제12조, 제18조, 제19조
- 화물유통촉진법 제5조, 제6조, 제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사업비	계	백만원 133,750	-	-	8,750	12,500	112,500
	보조	-					
	용자	107,000			7,000	10,000	90,000
	지방비 자부담	- 26,750	-	-	1,750	2,500	22,50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물류표준화 사업내용

- 물류흐름의 효율화를 위해 포장규격, 상품등급, 시설·장비를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관련시설·장비 등을 지원
 - 현행 “표준출하규격”을 단위 화물적재시스템(ULS: Unit load system)통칙에 맞도록 정비하고, 규격상품화 시책과 연계 추진하여 “고유상표단위유통” 진전
 - 농림수산물 유통시설·장비를 ULS에 맞게 정비하고 지원
 - 파렛트를 이용한 출하체계(Pallet pool system)와 냉장유통체계(Cold chain system)구축

(2) 지원대상자

- 파렛트, 지게차
 - 생산자단체(법인화된 조직 포함), 작목반, 작목회, 영농회
 - 공영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수집상 등), 농산물공판장, 농산물 물류센터
 - ※ '97년에는 가락동, 구리, 안양도매시장의 법인 등과 동시장에 출하하는 출하자에 우선지원
- 전동차, 컨베이어
 - 공영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등), 농산물공판장, 농산물 물류센터

(3) 지원조건 등

지원종류	지원단가	지 원 조 건	비고
○ 파 렛 트	30천원	○ 표준파렛트(1,100mm×1,100mm), 소요금액의 80%융자	
○ 지 게 차	20백만원	○ 소요금액의 80% 융자	
○ 전 동 차	7백만원	○ "	
○ 컨베이어	5백만원	○ "	

나. '97사업비(예산)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백만원 8,750	7,000	-	7,000	-	1,750
○ 파렛트	10만매	3,000	2,400	-	2,400	-	600
○ 지게차	175대	3,500	2,800	-	2,800	-	700
○ 전동차	300대	2,100	1,680	-	1,680	-	420
○ 컨베이어	30대	150	120	-	120	-	30

* 융자조건 : 연리 5%, 2년거치 3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유통정책과 (02 - 500-2671)
- 시·도 : 농정과 또는 농산물유통과
- 시·군·자치구 : 농산과, 유통과 또는 산업과

다.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생산자단체, 작목반 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기준에 의해 선정
 - 공영도매시장 등은 취급물량,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물량배정
- 우선 순위
 - 생산자단체, 작목반등은 별첨 생산자조직활동 평가(농검평가)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순차적으로 지원
 - 공영도매시장은 가락동,구리,안양도매시장에 우선 지원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법인화된 생산자조직중 아래요건을 갖춘 법인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이고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선정절차

- 사업자는 농림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국립농산물검사소 시·군출장소의 확인을 거쳐 시·군에 제출
 - 서울시 소재 사업자는 서울시에 제출
- 시장·군수는 사업자의 능력,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의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지원우선순위를 작성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농림부장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분야별 지원규모를 조정·배정

라. 사업시행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대상자 결정사항을 통보
- 사업자는 사업자선정 통보에 따라 대출을 받아 사업시행
 - 사업비는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해당 읍·면·동으로 대출
- 사업자금은 농특회계 자금 집행방식에 따라 농협중앙회를 통해 읍·면·동 대출 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지원받은 장비는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효율적으로 사후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당해연도에 지원된 장비를 확인하고 규격이 다르거나 구입치 않았을 경우, 해당 읍·면·동 취급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읍·면·동 자금을 회수토록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선량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농산물 물류 표준화 장비공급 및 사후관리 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함.
- 장비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없이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나.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실적을 매분기 다음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사업종료시 사업추진 완료보고
- 농협중앙회는 분기별 자금집행 추진실적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 보고하고 사업종료시 사업비 정산보고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 시군

나. 신청자격

- 파렛트, 지게차
 - 생산자단체(법인화된 조직포함), 작목반, 작목회, 영농회
 -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공판장 포함>, 하역회사 또는 하역노조, 수집상 등), 농산물공판장, 농산물 물류센터
- 전동차, 컨베이어
 - 공영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등), 농산물공판장, 농산물 물류센터

다.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실시규정 별지 제 3호서식 준용) 1부.

[별첨]

◦ 생산자조직 분류기준

등 급	활 동 기 준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 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공동계산제 실시 ◦ 조직원의 총 출하량중 공동출하 비율이 70% 이상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요원이 출하 품 점검을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이상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적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며 조직활동이 우수 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48	과실·화훼판매촉진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입니다.

1. 목 적

- 경쟁 가능성이 있는 과실, 화훼류에 대하여 WTO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의 수출부대비를 지원하여 수출확대도모

2. 추진방향

- 현재 수출이 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수출확대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
- 품목별, 국가별로 수출원가와 판매가능 가격을 고려하여 선별비, 포장비, 운송비 등을 차등 지원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2~'95	'96	'97	'98	'99~2004	합 계
사업량	과 실	9,449	11,000	9,801	11,000	66,000	107,250
	화 훼	165	140	88	150	900	1,443
계		5,489	2,750	3,353	5,300	31,800	48,692
사	보 조	5,489	2,750	3,353	5,300	31,800	48,692
	○ 과실	5,233	2,420	2,940	4,800	28,800	44,193
업	○ 화훼	256	330	413	500	3,000	4,499
	음 자	-	-	-	-	-	-
비	지방비	-	-	-	-	-	-
	자부담	-	-	-	-	-	-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 목 적

- 경쟁가능성이 있는 과실, 화훼류에 대해 수출잠재력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유통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촉진
- 수출실현으로 과수, 화훼산업에 대한 자신감과 활력을 불어넣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소득기반 유지

○ 사업내용

- 지원내용 : 과실류(사과, 배, 단감등) 및 화훼류(백합, 선인장 등) 수출에 필요한 포장상자대, 운송비 등 수출물류비용 지원
- 추진경위 : '90년부터 지원(화훼는 '94년)
- 사업시행 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대상 : 과실, 화훼류 수출업체(농수산물유통공사 포함)
- 지원비율 : 국고보조 100%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액 (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 조	음 자		
계		백만원 3,353	3,353	3,353	-	-	-
○ 과 실	9,801톤	2,940	2,940	2,940	-	-	-
○ 화 훼	88천상자	413	413	413	-	-	-

라. 사업신청 및 대상자선정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사업계획에 의함

마. 사업시행(추진일정)

- (1) 사업계획 수립(농수산물유통공사) : '96. 12~'97. 1월
- (2) 사업추진 : '97. 1. 1~'97. 12. 31
- (3) 국고보조금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익년 1월 30일까지
- (4) 사업평가 분석보고(농수산물유통공사) : 익년 2월말까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 추진상황 현지확인 및 평가분석

나. 보 고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97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7. 1월까지 농림부에 보고하고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실시
-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기에 보고

다. 업무담당기관 및 부서

- 중앙 : 농림부 과수화훼과
- 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개발처 수출사업부(화훼공판장 수출팀)

49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입니다.

1. 목 적

- 대부분 산물로 출하되고 있는 무·배추·수박을 산지에서 부터 규격포장출하, 기계하역을 추진함으로써 상품성제고 및 유통비용 절감
- 배추 등 채소류의 포장개선으로 소비지 쓰레기 발생을 줄여 환경개선

2. 추진방향

- 채소류의 상품성제고 및 유통개선을 위한 중점 추진사업으로 지원
- 시범사업으로 일정 유통경로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후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타유통경로, 전국적 확대실시 검토

3. 근거법령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농수산물 표준출하 규격화)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8조 (규격화의 촉진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 배추골판지상자 포장 >

		계	'92-'95	'96	'97(예산안)	비고
사업량		천매 23,500	-	-	23,500	
사업비	계	백만원 14,100	-	-	14,100	
	국고보조	4,700	-	-	4,700	
	지방비보조	3,525	-	-	3,525	
	자부담	5,875	-	-	5,875	

< 배추 플라스틱 상자 포장 >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60만개	-	20	20	20	-
사업비	계	백만원 3,300	-	1,100	1,100	1,100	-
	보조	1,760	-	660	550	550	-
	용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1,540	-	440	550	550	-

< 수박 골판지상자 포장 >

		계	'92-'95	'96	'97(예산안)	비고
사업량		천매 8,000	-	-	8,000	
사업비	계	백만원 4,800	-	-	4,800	
	국고보조	1,600	-	-	1,600	
	지방비보조	1,200	-	-	1,200	
	자부담	2,000	-	-	2,00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시행>

가. 배추골판지상자 포장

(1) 사업내용

-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배추를 포장하여 출하
- '97 지원대상자
 - 배추를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여 가락동·구리·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 '97 지원조건
 - 골판지 포장재 (3~4포기용) 매당 600원 기준적용시 국고200원, 지방비 150원 비율로 정액지원하되 표준규격 (2포기용, 3~4포기용, 6~8포기용 3구분)에 따른 매당 기준단가와 지원금액은 추후 별도 확정·시달
- '97 대상물량
 - 가락동·구리·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물량의 50% 수준인 23.5만톤 내외

(2) '97사업비 (예산내용)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계	예산안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배추골판지 상자	천매 23,500	백만원 14,100	4,700	4,700	-	3,525	5,875

(3) 사업주관기관 : 서울시, 구리시, 안양시

(4) 사업담당부서

- 농 립 부: 유통정책과 T. (02) 504-9411~2
- 시 · 도 :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T. (02) 750-8403
경기도 농산물유통과 T. (0331) 249-4457
- 시 · 군 : 안양시 산업경제과 T. (0343) 47-2228
구리시 지역경제과 T. (0346) 557-1010

(5) 사업시행

○ 대 상 자

- 배추를 표준출하규격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여 가락동·안양·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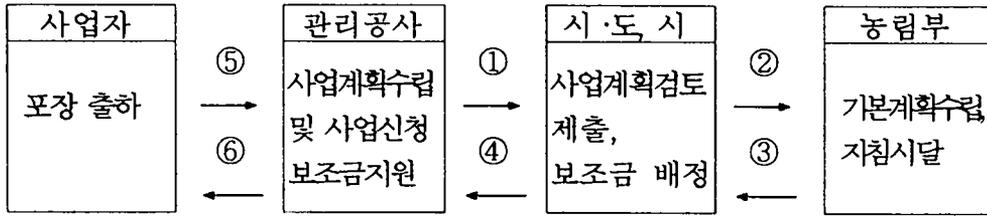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해당 도매시장의 관리공사 (또는 관리사무소)는 각 도매시장의 포장배추 출하물량을 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도매시장의 관할시에 제출
- 각 도매시장 관할시는 도매시장관리공사(또는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해당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시장별 소요자금을 검토 배정.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대상자(출하자)는 배추를 포장출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락을 받은 후에 포장규격 (2포기용, 4포기용, 8포기용) 및 출하포장재수량이 기록된 해당법인 또는 공판장의 확인서(판매원표 등 구체적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법인 또는 공판장을 통해 관할 도매시장관리공사에 자금 요청
- 도매시장관리공사(또는 관리사무소)는 포장출하된 배추의 포장재수량 확인서류를 검토한 후에 자금집행

(6) 사업시행체제도



- | | |
|---------------------|----------------|
| ① 사업신청 | ② 사업계획 검토, 제출 |
| ③ 기본계획 확정시달, 사업지침시달 | ④ 사업지도, 보조금 배정 |
| ⑤ 포장출하 확인서 제출, 자금요청 | ⑥ 사업지도, 보조금 지원 |

(7) 사업시행 기타사항

- 배추포장출하자는 늦어도 출하전일 계획물량을 해당 도매시장관리공사 (또는 관리사무소) 및 해당 도매시장법인에 사전통보
- 포장재 규격은 시범사업임을 감안 국립농산물검사소가 정하는 배추 표준 출하규격을 사용

(8)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서울시장, 구리시장, 안양시장
- 사후관리주체 : 해당시 도매시장관리공사 (또는 관리사무소)
- 관리책임자(주체)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 및 지도·감독
 - 배추의 포장출하량을 확인하고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출하량의 허위 기재, 허위 수량변경 등이 있을 경우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9) 보 고

- 사업추진상황보고 : 반기 다음월 15일까지
- 국고보조금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 다음해 2월말까지

나. 배추 플라스틱 상자 포장

(1) 사업내용

- 산물로 출하되는 배추를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하여 도매시장 등에 출하
 - 플라스틱 상자의 회수체계가 용이한 경우 포장재 다수사용으로 경제적 효율제고
- 지원대상자
 - 무·배추 등 채소류를 플라스틱 상자에 포장하여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에 출하하거나 대량수요처와 직거래하는 자
 - 공영도매시장(도매시장법인 등), 농산물공판장, 농산물 물류센타
- 지원단가 및 조건
 - 단가는 5,500원/개 범위내에서 국고50%, 자담50% 비율로 지원하되, 제품의 규격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 포장재 제작
 - 포장재 제작 : 농협중앙회 또는 도매시장법인이 일괄제작·공급
 - 규격 : 접철식 또는 사각상자 (ULS규격에 맞게 제작)
 - 인정 감모율 : 매년 10% 이내

(2) '97사업비(예산)내용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 (농특회계)			지방비	자담
			계	보조	융자		
플라스틱 상자	20만개	백만원 1,100	550	550	-	-	550

(3)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장, 도매시장관리공사(관리사무소)
-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 500-2671
 - 농협중앙회 : 원예특작부 채소과 (02) 397-5732
- 대상자 선정기준
 - 전국 무·배추 주산지의 농협 또는 출하자중 공동규격출하 의지가 강하고 과거 공동출하 실적이 있는 농협 또는 출하자
- 우선순위
 - [별표] 생산자조직 불류기준 (농검 평가)에 따른 상위등급 조직 또는 상위등급 조직에 속한 생산자(출하자)
 - 채소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회원농협
 - 백화점 등 대량수요처와 직거래하는 자
- 선정절차
 - 사업자(출하자)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농협중앙회 또는 도매시장관리공사(관리사무소)에 신청(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신청)하고, 농협중앙회 또는 도매시장관리공사(관리사무소)는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농산물공판장, 농산물 물류센타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신청)

(4)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 또는 도매시장관리공사(관리사무소)는 사업대상자가 제출(도매시장의 경우 도매시장법인을 통해 제출)한 사업신청서 (실시규정 별지 제3호 서식)를 검토하여 자체 사업계획 수립하고, 농림부에 보고
 - 농림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각 부문별 소요자금 배정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와 도매시장법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플라스틱 상자를 일괄 제작하여 공급

다. 수박 골판지 상자 포장

(1) 사업내용

-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수박을 포장하여 출하
- '97 지원대상자
 - 수박을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여 가락동·구리·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로서
 - 국립농산물검사소가 정하는 수박 표준출하규격을 사용하여 출하하는 자
- '97지원조건
 - 표준출하규격 포장재 지원은 아래 예시기준을 원칙으로 지원하되, 표준규격과 각 규격별 해당 기준단가와 지원금액은 추후 별도 확정·시달
 - 1개용 : 해당 기준단가 300원 적용시 국고100원, 지방비75원 정액지원
 - 2~3개용: 해당 기준단가 600원 적용시 국고200원, 지방비 150원 정액지원
 - 대형 50~60개용: 기준단가 별도시달
- '97 대상물량
 - 가락동·구리·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출하물량의 50% 수준인 8만톤 내외

(2) '97사업비 (예산내용)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계	예산안(국고)			지방비	자부담
			소계	보조	융자		
수박골판지상자	천매 8,000	백만원 4,800	1,600	1,600	-	1,200	2,000

(3) 사업주관기관 : 서울시, 구리시, 안양시

(4) 사업담당부서

- 농 립 부: 유통정책과 T. (02) 504-9411~2
- 시 · 도 : 서울시 농수산유통과 T. (02) 750-8403
경기도 농산물유통과 T. (0331) 249-4457
- 시 · 군 : 안양시 산업경제과 T. (0343) 47-2228
구리시 지역경제과 T. (0346) 557-1010

(5) 사업시행

- 대 상 자
 - 수박을 표준출하규격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여 가락동·안양·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해당 도매시장의 관리공사 (또는 관리사무소)는 각법인(공판장포함)으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 각 도매시장의 포장수박 출하물량을 산정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도매시장의 관할시에 제출
 - 각 도매시장 관할시는 도매시장관리공사(또는 관리사무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시·도를 거쳐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는 해당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시장별 소요자금을 배정
- 사업비 지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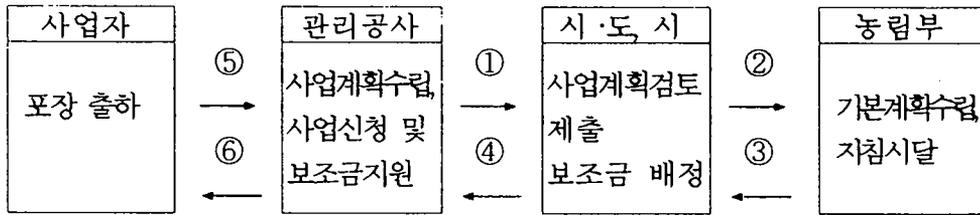
< 1개용, 2~3개용 >

- 사업대상자(출하자)는 수박을 포장출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경락을 받은 후에 포장규격 (1개용, 2~3개용) 및 출하포장재 수량이 기록된 해당법인 또는 공판장의 확인서 (판매원표 등 구체적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해당법인 또는 공판장을 거쳐 관할 도매시장관리공사에 자금 요청
- 도매시장관리공사(또는 관리사무소)는 포장출하된 수박의 포장재수량 확인서류를 검토한 후에 자금집행

< 50~60개용 >

- 도매시장법인(공판장포함)이 일괄 제작하여 출하자(자부담분 부담)에게 공급

(6) 사업시행체계도



- ① 사업신청
- ② 사업계획 검토, 제출
- ③ 기본계획 확정시달, 사업지침시달
- ④ 사업지도, 보조금 배정
- ⑤ 포장출하 확인서 제출, 자금요청
- ⑥ 사업지도, 보조금 지원

(7) 사업시행 기타사항

- 수박 포장출하자는 늦어도 출하전일 계획물량을 해당 도매시장관리공사 (또는 관리사무소) 및 해당도매시장법인에 사전통보
- 포장재 규격은 시범사업임을 감안 농산물검사소가 정하는 수박 표준출하규격 사용을 원칙으로 함

(8)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서울시장, 구리시장, 안양시장
- 사후관리주체 :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또는 관리사무소)
- 관리책임자(주체)는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 및 지도·감독
 - 수박의 포장출하량을 확인하고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출하량의 허위 기재, 허위 수량변경 등이 있을 경우는 지원된 보조금을 회수하고, 향후 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9) 보 고

- 사업추진상황보고 : 반기 다음월 15일까지
- 국고보조금정산 및 사업결과보고 : 다음해 2월말까지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배추, 수박 골판지 상자 포장 :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관리공사(관리사무소)
- 배추 플라스틱상자 포장 : 농협중앙회, 도매시장관리공사(관리사무소)

나. 신청자격

- 배추, 수박 골판지상자 포장
 - 배추, 수박을 표준출하규격 골판지 상자에 포장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 배추 플라스틱 상자 포장
 - 무·배추등을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대량수요처에 출하하는 자

다. 신청절차

- 배추·수박 골판지상자 포장
 - 사업자 → 도매시장법인 → 관리공사(사무소) → 시·도 → 농림부
- 배추 플라스틱상자 포장
 - 농협회원조합 → 농협중앙회 → 농림부
 - 사업자 → 도매시장법인 → 관리공사(사무소) → 시·도 → 농림부

라.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별표]

○ 생산자조직 분류기준

등 급	활 동 기 준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 (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 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공동계산제 실시 ○ 조직원의 총 출하량중 공동출하 비율이 70% 이상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요원이 출하 품 점검을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포장센터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이상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적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며 조직활동이 우수 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50 -1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국제농산물박람회 참가)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 수입개방 이후 우리 농산제품 수출시장개척 및 시장다변화
- 전문수입상 및 소비자에 대한 우리 제품 인식제고 유도
- 중소 농산 식품 수출업체의 참가지원을 통한 수출의욕 고취

2. 추진 방향

- 현재 참가하고 있는 국제박람회 참가사업의 내실화
 - 수출중대 가능성이 큰 지역 및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참여
- 박람회 전시상품의 포장디자인, 품질개선 및 자체홍보물 제작 등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박람회 성과거양과 지속적인 수출중대 추진
- 수출상품 특별기획전 개최를 통해 정부 차원의 수출중대의지 천명

3. 근거 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 (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204	43	17	18	18	108
사 업 비	계	34,048	3,801	2,597	3,150	3,500	21,000
	보조	25,500	1,562	1,818	2,520	2,800	16,800
	자담	8,548	2,239	779	630	700	4,200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시장개방 추세에 따라 농업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정책 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농업생산이 품질위주의 경쟁력 있는 품목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시장 개척 및 수출지원 확대 요구 증가

(2) 지원대상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업체로서 수출을 위한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3) 지원기준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업체포함)	비고
			계	보조	융자			
계	18회	3,150	2,520	2,520	-	-	630	
국제 박람회 참가	15회	1,750	1,400	1,400	-	-	350	
특별 기획전	3회	1,400	1,120	1,120	-	-	28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02-503-7278)

다.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라. 대상자 선정

○ 선정자격

-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유망품목으로 판단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로서 국제박람회 및 특별기획전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
- 수출농산물을 생산, 수출하는 농업인, 업체 등으로 구성된 협회, 조합, 단체
- 포장디자인이 해외 전시상담용으로 손색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업체

○ 선정기준

- 당해 박람회 개최지역 및 성격과 부합되는 품목 출품업체
- 해외 농산물 박람회 참가 횟수
- 전시품 포장디자인의 현지어 표기 및 국제감각에 부합하는 상품 출품업체
- 기본 부스 외에 추가부스를 자부담으로 신청한 업체
- 참가 희망업체의 전년도 수출실적

○ 선정절차

-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박람회별로 선정자격과 선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마.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지난해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박람회 및 특별기획전 참가지역 및 횟수, 규모 등 사업계획을 수립
- 당해연도 박람회 및 특별기획전 참가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기 및 지역을 고려하여 조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시에는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내용

- 신규업체 발굴 및 보다 많은 업체의 참여를 위해 사전에 모집공고 실시
- 사업시행기관이 전시장 임차 및 한국관 기본장치 후 업체별로 부스제공
 - ※ 전시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시 여러부스를 통합하여 운영
- 종합 홍보팸프렛제작·통역확보·해외판촉광고·수출상담·박람회장 총괄 관리 등 실시

- 기타사항
 - 전시품 운송업무 지원(선적,통관 등)
 - 현지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시식회 개최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박람회 및 특별기획전 한국관 방문업체에 대한 감사서신 발송
- 수출계약체결 업체에 대한 수출이행여부 확인
- 박람회 및 특별기획전별 종합평가회 개최
 -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 박람회에 반영하고 차년도 사업 계획수립시 참고

나. 보고·기타

- 매 박람회 및 특별기획전 개최후 결과보고·정산
- 연간 사업 전체에 대한 종합보고 및 정산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무역본부)

나. 신청자격 : 농산물(가공식품 포함)을 수출하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

다. 구비서류 : 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라. 대상자 선정 : '97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50 -2	농산물해외시장개척(공공) (수출활성화 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입니다.

1. 목 적

- 현지 소비자들에게 우리 수출 농산물제품에 대한 이미지 상승을 유도하여 수출 확대 여건 조성
- 농산제품의 생산 및 수출업체의 포장디자인 개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
- 채소류 및 김치의 수출용 포장재와 물류비 지원으로 포장재 개선 유도 및 수출경쟁력 제고
- 농산물 수출의 수요 창출을 위해 수출국의 기호·식관습에 맞도록 맛·품질·포장 등을 현지화시킨 수출상품 개발

2. 추진방향

- 수출 상품의 포장디자인을 국제 감각과 지역 특성에 맞도록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 수출시 장기간 운송에 따른 채소류 및 김치 제품의 신선도 유지 및 상품가치 보존을 위한 포장자재의 고급화 유도
- 수출대상국의 식문화·소비관행에 맞는 수출상품 개발 완료후 국내수출업체를 통해 직접 수출 추진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6조 (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 ~ '95	'96	'97 (예산안)	'98	'99 ~ 2004
사업량	포장디자인개발		85품목	40	45	60	360
	현지화 적용 상품 개발		품목	-	12	14	16
	채소류, 김치판매 촉진 지원		톤	928	4,108	5,142	30,840
사업비	계	44,734	261	1,120	4,661	5,772	32,920
	보조	23,211	90	598	2,476	3,059	16,988
	융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21,523	171	522	2,185	2,713	15,932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우리 농산제품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 개선과 병행하여 포장디자인 개발이 추진되어 해외시장에서 우리 농수산제품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 농산물수출의 신규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수출국의 기호·식관습에 맞도록 맛, 품질, 포장 등을 현지화하는 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수출상품 현지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필요
- 채소류 및 김치는 포장, 운송비 등 수출물류 비용의 비중이 크므로 수출업체에 수출물류 비용을 지원 (WTO규정이 허용하는 농업보조금의 수출보조 대상범위내에서 지원)

(2) 사업내용

(가)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1) 포장디자인 개발

- 지원대상 : 농수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수출업체
- 지원기준 : 포장디자인 개발비용의 70% (업체자부담 30%)
- 지원규모 : 45품목

2) 해외우수 포장디자인 실태조사

- 조사지역 : 우리 농수산물 제품이 많이 수출되는 지역
- 예) 미주, 구주, 일본 등 동남아 권역
- 조사품목 : 포장디자인 개발 신청품목, 공사의 개발 수출품목
- 조사방법 : 조사지역을 구분, 3개 조사팀 구성하여 현지 조사
- 1팀당 2-3명(사업주관기관 또는 정부·업체관계자로 구성)
- 조사시기 : 업체(품목)선정 확정시기에 결정
- 지원기준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3) 포장디자인 개발 사례집 발간

- 수록내용
 - 해외 우수 포장디자인 사진 및 디자인 경향
 - '97 신규 개발 포장디자인 사진 및 사례
- 제작부수 : 2,000부
- 배포대상 : 정부,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업체
- 지원기준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나) 현지화 적용 상품 개발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수출기지(해외농업무역관)가 국내 농산물 식품업체와 연계하여 추진

- 수출 농산식품의 현지화에 필요한 개발사업비 지원
 - 시장조사비, 마켓-테스팅비, 광고·홍보비, 시제품개발 및 구입비 등
- 지원기준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 시제품개발에서 계약체결까지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수출기지가 수출업체의 해외지사 역할 수행

(다) 채소류·김치 판매 촉진 지원

1) 지원대상자

- 채소류 및 김치를 수출하는 업체 및 생산자단체

2) 지원단가

- 수출용 포장재 및 물류비(국내·국외 운송비, 선별비)의 50% 국고보조
- 골판지 포장재는 한국골판지공업협동조합에서 산출한 단가적용
- 골판지이외의 포장재 및 특수규격 포장재는 시중유통가격 적용
- 물류비중 내륙운송비는 내륙운송 요율표에 의한 단가 적용
- 해상 및 항공운임은 실소요운임 적용

3) 지원조건

- 채소류 또는 김치의 수출실적이 있는자로서 포장자재비 및 물류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
- 채소류 또는 김치판매촉진 지원 대상업체로 선정된 자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 산 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4,661	2,476	2,476	-	-	2,185
◦ 포장디자인개발	45품목	253	182	182	-	-	71
◦ 현지화 적용 상품 개발	12품목	300	240	240	-	-	60
◦ 채소류, 김치 판매 촉진 지원	21,300톤	4,108	2,054	2,054	-	-	2,054

<추진체계 >

-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503-7278)
- 다.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라. 대상자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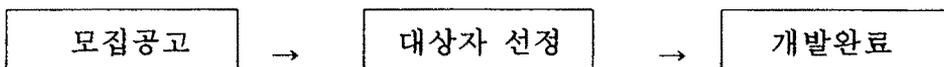
(1) 포장디자인 개발

◦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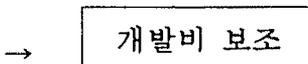
농산물 또는 가공제품의 생산, 수출업체로 최근 2년간 수출실적 또는 수출계획(신용장 또는 계약서 근거)이 있는 업체

※ 디자인 업체 : 포장디자인 기획업체로서 통상산업부 산하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등록된 공인 산업디자인전문업체를 대상으로 선정

◦ 선정절차



< 디자인업체 선정 >



(2) 현지화 적응 상품 개발

< 개발단계 >

- 현지화 사업품목 및 연계업체
 - 해외수출기지에서 대상품목 선정
 - 선정된 품목의 국내 생산업체중 적격업체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선정
- 국내생산수출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사업착수
 - 해외 수출기지의 조사자료에 의거 국내생산업체가 시제품생산
- 현지 유통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및 자체평가회 개최

< 시험수출단계 >

- 개발된 현지화적응 가능품목을 현지 전문취급사에 샘플송부 및 OFFER 제시
- 바이어가 요구하는 사항(OPTION)에 의거 국내생산업체가 제공한 “현지화 적응 수출상품”을 시험수출 추진

< 본격수출단계 >

- 현지인의 입맛에 맞도록 변형된 “ 현지화 수출상품”을 해외 수출기지와 수입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수출단계부터는 생산업체가 단독으로 수출추진

(3) 채소류·김치판매촉진 지원

- 선정기준
 - 채소류 및 김치를 수출하였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자
- 우선순위(자금배정)
 - 과거 2개년도 채소류 및 김치 수출실적이 많은 자
 - 당해연도 채소류 및 김치 수출신용장 수취자
 - 당해연도 채소류 및 김치 수출계획이 있는 자

○ 선정절차

- 일반공고 → 지원대상자 신청서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및 연간 지원금 배정

마.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 자금집행절차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집행함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 시행기관은 정기적으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현장점검 포함) 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보완 및 개선 방안 강구
- 포장디자인 개발품 활용실태 조사 및 사업평가 실시
- 현지화 적용 개발 상품에 대한 홍보 및 수출실적 점검
 - 사업실적 평가후 해외농업무역관별 차등 지원

나. 보 고

- 분기별 사업추진 결과 보고
- 연간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 및 정산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신청자격 : 농산물 과거 수출실적 또는 수출 계획이 있는 업체
(단, 채소류·김치 판촉지원은 당해 품목을 수출하는 업체)

다. 구비서류 : 수출용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채소류·김치 판매촉진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라. 대상자 선정 : '97대상자 선정방법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수출용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품 포장디자인 개발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업 체 명	국 문		사 업 자	
	영 문		등록번호	
대 표 자	국 문		연 락 처	전 화 :
	한 자			팩 스 :
수출실적	'95총액		'96총액	
	US :		US :	
			'97.1~3말까지	
			US :	
지원대상 구 분	박람회 참가업체		전통식품업체	
	특산단지업체			
	참가년도		지정번호	
			지정번호	
< '97 포장디자인 개발 희망 품목 >				
우선순위	품 명	중 량	포장형태	주수출지역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및 지원대상 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각1부. 2. 수출실적 확인서(외국환은행장 또는 한국무역협회장 발행) 1부.			

19

귀 공사의 지원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체명 _____ 대표 _____ (인)

농 수 산 물 유 통 공 사 사 장 귀 하

[별지 제2호서식]

채소류·김치판매촉진 지원 신청서

회사의 종류	주식회사, 합자, 합명, 유한, 조합, 개인			설립일자	
업 종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번호	
주요 경영진 경력사항 (2~3인)	성 명	직 위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채소류 및 김치판매촉진 지원사업에 따라 채소류 및 김치에 대한 ()년도 판매촉진 지원대상 업체로 지정받고자 붙임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199

신청인 :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 붙임 : 1. 수출실적 및 수출 계획서(별표1 양식)
 2. 채소류·김치 판매촉진 지원신청서(별표2 양식)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4. 과거 2개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외국환은행장 발행)
 5. 수출 신용장

농 수 산 물 유통 공 사 사 장 귀 하

[별표1]

수출 실적 및 수출 계획서

1. 과거 2개년도 수출 실적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수출 실적		분기별 수출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	2/4	3/4	4/4	

2. 금년도 수출 계획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수출 실적		분기별 수출 계획 (물량)				수출국
	물량	금액	1/4	2/4	3/4	4/4	

3. 수출 신용장 수취 현황

(단위 : 톤, 천\$)

품 목 (HS번호)	신 용 장 내 용			수출국
	수출 물량	수출 금액	신적 기한	

[별표2]

채소류·김치 판매촉진 지원신청서('97. 분기)

1. 신청인 현황

업체명		대표		전화		FAX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 채소류·김치 판매촉진 지원 신청내역

품목	HS분류 번호	수출실적		수출 기간	물 류 비				신청액
		수량	금액		포장재	운송비	선별비	계	

위와 같이 채소류·김치 판매촉진 지원을 신청합니다.

199

신청인 : 주 소

성 명

(인)

붙임 : 1) 수출면장(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1부.

2) 포장재 제작 사양서 1부.

50 -3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수출홍보사업)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입니다.

1. 목 적

- 다양한 홍보매체(전문지, VTR, 옥외광고, 홍보책자 등)를 통하여 수출 농산물의 해외홍보 및 이미지 제고로 수출 확대 기반 조성
- 우리 수출 농산물의 특성과 좋은 이미지를 외국의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알려 새로운 수요 창출
- 특히 김치를 세계인의 식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홍보 활동 추진

2. 추진방향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수출 농산물의 수요 창출 및 이미지 개선 도모
 - 바이어와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매체 선별 운용
- 홍보 대상 농산물의 수출 시기를 감안하여 홍보시기 설정 운용
 - 홍보 대상품의 수출에 앞서 수입국 현지에 집중홍보
- 우리 농림수산제품의 주요 수출전략 지역을 대상으로 옥외 전광판 홍보 추진
- 일본내에 한국산 김치붐을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 16조(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 ~ '95	'96	'97(예산안)	'98	'99 ~ 2004
사업량	전문지광고		11회	10	13	20	120
	VTR제작		-	-	1회	1	6
	옥외전광판		-	-	1개국	1개국	6개국
	김치홍보센터운영		-	-	2개소	3개소	4개소
사업비	계	12,301	101	776	1,477	1,408	8,539
	보조	10,946	53	543	1,182	1,168	8,005
	융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1,355	48	223	295	245	534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경

- 농산물 수입 개방과 WTO 체제하에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 부각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사업 수행의 필요성 대두
- 농산물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개별적인 해외 홍보능력 부족에 따른 정부차원의 홍보대책 필요
 - 해외 홍보부족으로 한국의 김치가 일본의 "기무치"로 잘못 알려지고 있어 고유 상품인 김치를 국제 식품으로 인식 시키기 위하여 홍보 필요성 대두

(2) 사업내용

- 국내외 농수산물 무역관련 전문지 광고
 - 바이어 매체 : INTERNATIONAL FRUIT WORLD, KOREA EXPORT, AGRA - FOOD 등
 - 소비자 매체 : 과채류 주 수출지역인 동남아 국가의 주부구독 잡지
- 종합 홍보 디렉토리 제작 배포
 - 내용 : 박람회 참가업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사진, 특성, 연락처 등을 수록
 - 활용 : · 박람회 참가업체의 수출상담 자료로 활용
· 주요 수출국 주재 공관 및 KORTA 무역관 배포
· 농수산물유통공사 해외 조직망 및 본지사에 비치
- 수출상품 홍보용 VTR 제작 : 3개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 내용 : 한국 농산물 수출상품 및 한국식문화 등 소개
 - 활용 : 국제 박람회에서 주요 수출국 바이어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영
- 옥외광고
 - '96 상반기에 우리 농산물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 동경에 옥외 광고판을 설치한 후 '97년도에 세계 주요 농수산상품의 테스트팅 마켓인 홍콩에 옥외 광고탑 설치
- 김치홍보
 - 이벤트홍보 : 김치홍보센터 운영, 김치담그기 경연대회, 순회시식 판매전 개최
 - 연 중 홍 보 : 홍보물 제작·배포, 매스컴 홍보

(3) 지원기준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음자		
계	-	1,477	1,182	1,182	-	-	295
◦ 국내외 전문지 광고	13회	40	32	32	-	-	8
◦ 종합홍보 디렉 토리 제작	3,000부	30	24	24	-	-	6
◦ 홍보용 VTR 제작	1편(20분~30분)	71	57	57	-	-	14
◦ 옥외광고	1개국	720	576	576	-	-	144
◦ 김치홍보	연중실시	616	493	493	-	-	123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무역진흥과 (02-503-7278)

다.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년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 부서와 협의
- 추진방식
 - 해외농업무역관이 있는 지역에는 동무역관을 현지 대리인으로 지정 운영, 단, 그외 지역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주관 시행

- 사업비 지원 방법
 - 국고보조금 집행요령에 의거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농림부 승인후 사업시행하고 분기별 사업추진계획에 의거 국고 보조금을 농수산물유통공사에 교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홍보효과 조사 분석 및 사업 평가
- 사업중간 점검 실시(홍보활동 현장을 방문해 점검 실시)
- 사업 종료시 결과 보고

나. 보고

- 분기별 사업추진 결과 보고
- 연간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50 -4	농산물 해외시장개척(공공) (해외시장정보조사)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입니다.

1. 목 적

- 우리농산물의 수출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필수정보 수집 및 정보의 지속관리 체제 구축
- 품목별로 국내 및 주요 수출상대국의 시장상황에 대한 심층조사로 농산물 수출분야의 해외시장 진출기반 조성
- 개방화, 국제화에 부응한 해외정보 수요에 적극대처하고 수출전략 품목 발굴 및 해외시장 정보제공으로 농산물 수출확대 기여

2. 추진방향

- 주요품목(100품목)에 대한 무역정보심층조사 및 주요국가(15개국)에 대한 과제별 심층조사
- 정보수집체제구축 및 전문화
- 정보의 축적 및 체계적 관리
 - 품목별 DB 연차적으로 확대
 - 기존 정보의 보완 및 보강
 - 신규 DB 및 이용자 편의중심 S/W 개발확대
- 정보분산체계의 효율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제공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사업계획

계		계	'92 -'95	'96	'97	'98	'99-2004
사업량	신규조사		35품목	35품목	30품목	5개국5과제	15개국35과제
	보완조사		-	35품목	70품목	100품목	100품목
신규	DB구축	50	7	8	8(8)	7	20
품목별	DB구축	100	35	35	30	-	-
사 업 비	계(백만원)	6,855	715	841	749	650	3,900
	보조	6,238	500	589	599	650	3,900
	용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617	215	252	150	-	-

※ 대상품목에는 수산물을 포함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추진배경

- 우리농산물의 수출확대 및 국제경쟁력제고를 위하여 해외 농산물의 생산, 소비, 수출입등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 대두
- 주요국가의 농산물에 대한 품목별 필수정보의 수집관리 및 전파체계 구축
- 지속적 Data-Base 구축 및 분산기능 확대로 “산”정보를 생산자 및 관련업계에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수출증대 및 시장 진출 원활 도모

(2) 사업내용

- 농산물의 수출확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품목별 필수정보를 수집코자 오이, 토마토등 수출확대가 기대되는 품목, 식혜,탁주등 박람회를 통해 수출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는 품목 및 고추,마늘등 수급관리 품목등을 포함한 [별표] 100개 품목을 선정 집중 조사
- '95년 35개, '96년35개, '97년30개 품목으로 3개년에 걸쳐 심층조사를 실시

- 국내외 심층조사를 통해 수집된 품목별 국내 및 주요수출대상국의 생산, 유통, 시장상황을 분석,가공, DB화하여 농산물무역정보DB시스템(KATI)으로 완성, 공중통신망을 통해 '96년 1월 서비스개시
- 농림수산 종합정보망 등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무역정보를 제공
- 정보이용자 편의 위주의 다양한 정보지원 S/W 및 신규 DB개발
- 지원기준 : 국고보조 80%, 자부담 20%

나. '97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 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	749	749	599	-	-	150
○ 농산물무역정보 심층조사	○ 30개품목	278	278	222	-		56
○ 농산물무역정보 DB구축	○ 8종S/W 개발 ○ 30품목 DB구축	471	471	377	-		94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503-7278)

다.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의 수립
 - 농업인, 수출업체, 관련협회,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필요무역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97.1월말까지 농림부 장관에게 제출
 - 심층조사 : 조사방법, 조사기간, 조사대상지역, 대상품목, 조사인원, 사전조사계획 및 현지조사 내용 등
 - D/B구축 : S/W개발의 내용, 추진시기 등
- 사업계획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수정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조정
- 사업계획의 변경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이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1) 농수산물 무역정보 심층조사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조사결과와 품목별 보고서 발간배포 및 DB화 전파
- (2) 농수산물 무역정보 DB구축
 - 정보수요자 의견수렴 및 익년도 사업계획 반영
 - 평가내용
 - DB 내용 및 범위
 - 신속성 여부
 - 농수산물 무역정보(KATI)에 대한 활용도 조사·분석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보완 및 개선방안 강구

나. 보고

- 사업결과 종합보고 및 정산

[별표]

< 연차별 중점조사 품목 >

년도	부 류		기 존 수 출 품 목		개척품목 (박람회관심품목)	수급관리 품 목	계
			신 선 품	가 공 품			
95	농 산 물	채소	오이, 토마토, 멜론 밤호박, 당근, 파	김치, 냉동딸기	파리고추	건고추, 마늘, 양파, 생강	28
		과일	배, 사과	사과주스	키위주스	감귤	
		화훼	장미, 백합, 선인장	-	-	-	
		기타	-	고추장, 된장, 간장	과, 식혜, 한 국산차	참깨	
	수 산 물	미역, 김	-	-	-	2	
축 산 물	-	-	삼계탕	돼지고기	2		
임 산 물	송이, 표고	간밤	-	-	3		
계		15	7	6	7	35	
96	농 산 물	채소	채소종자, 양배추, 시금치, 풋콩	채소주스	단무지	-	24
		과일	포도	과즙음료, 잼, 꽃감	-	-	
		화훼	난초, 국화	-	분재	-	
		기타	벚꽃	홍삼, 녹차, 국수, 혼합 조미료	불고기양념, 인삼음료	콩, 팥, 녹두, 땅콩	
	수 산 물	투스, 꽃게, 굴, 소라	-	계맛살	-	5	
	축 산 물	-	소시지	-	쇠고기, 닭고기	3	
임 산 물	영지버섯	조제밥, 은행잎	-	-	3		
계		13	11	5	6	35	
97	농 산 물	채소	참외, 가지	고추가루	-	감자, 고구마	17
		과일	복숭아, 매실, 단감	-	-	-	
		기타	카네이션	빵, 라면, 전분, 소주, 당면,	탁주	쌀, 보리	
	수 산 물	피조개, 성게, 새우, 고등어, 참치	한천	-	건멸치, 오징어	8	
	축 산 물	-	액상요구르트 분유	-	-	2	
임 산 물	산림수종자, 명개잎	취분말	-	-	3		
계		13	10	1	6	30	
합	계	41	28	12	19	100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입니다.

1. 목 적

- 국제농산물 박람회, 국내농산물 품평회, 국제회의 등 우리 농수산물 판촉 및 교역의 장으로 활용
- 해외바이어, 농어민, 무역업체가 필요로하는 농수산식품의 생산, 유통, 수출정보 등에 대한 종합지원
- 해외시장개척, 첨단기술 농업 습득, 바이어 유치, 수출상담, 알선 등 생산자 조직 및 수출업체에 종합마케팅 지원

2. 추진방향

- 전시홍보, 무역정보, 수출상담, 알선 등 “종합마케팅”지원체제 구축
 - 국제전시장, 무역정보관, 국제회의실 등의 수출지원시설과 복합기능을 갖추어 우리 농산식품의 종합수출거점 역할 수행
 - 국내외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무역정보센터 역할
- 수출지원시설의 일원화, 종합화로 생산, 수출단계의 전과정을 ONE-STOP 서비스 제공
 - 생산자 조직 및 수출업체에 자금, 경영, 기술 등의 종합 수출지원
 - 국제교류 협력, 선진기술 및 마케팅기법 도입으로 수출활로 개척
- 2000년 준공을 목표로 건설관련 인허가 및 공사업무의 효율적 추진
 - 국제교역의 장으로서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미래지향적인 건축물 확보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 (농수산물의 수출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2 - '95	'96	'97 (예산안)	'98	'99- 2000
사업량	1개소	-	계획 및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공사 및 감리 (1차년도)	준공 (2000년)
계	94,300	-	1,160	2,791	34,067	56,282
국고보조	67,587	-	1,000	2,631	24,117	39,839
(설계·감리)	(5,256)	-	(1,000)	(2,631)	(609)	(1,016)
(건설공사비)	(62,331)	-	(-)	(-)	(23,508)	(38,823)
자 부 담	26,713	-	160	160	9,950	16,443
(설계·감리)	(-)	-	(-)	(-)	(-)	(-)
(건설공사비등)	(26,713)	-	(160)	(160)	(9,950)	(16,443)

※ 국고보조 지원 금액은 예산 확보상황 등에 따라 변경가능.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지원내용 :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을 위한 투자비 지원
- 지원기관(사업수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 지원조건
 - 설계·감리비 : 국고보조 100%
 - 건설비 : 국고보조 70%, 자체조달 30%(예산확보상황 등에 따라 지원 조건 변경 가능)

○ 건설내용

- 사업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화훼공판장 부지)
- 건축규모 : 부지 5,100평, 건물 19,500평
- 주요시설 : 전시장, 무역정보관, 국제회의장, 상설전시홍보관, 수출상사관 등
- 사업기간 : 1996 ~ 2000

○ 주요시설별 기능

- 전시장 : 국제박람회, 국내농산물 품평회, 이벤트 행사 등 개최
- 무역정보관 :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산
- 국제회의장 : 국제회의, 학술세미나, 심포지엄, 간담회 등 개최
- 전시홍보관 : 농산 정책홍보관 및 우수농산물 전시관 운영
- 수출상사관 : 농수산 관련기관 및 무역업체 입주, 수출상담 및 거래알선 등 지원
- 편의시설 : 은행, 여행사, 우체국, 기념품점 등
- 부대시설 : 주차장, 기계실, 로비 등

나. '97사업비(예산)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	2,791	2,631	2,631	-	-	160
설계비	실시설계	2,225	2,225	2,225	-	-	-
감리비	1차인도분	406	406	406	-	-	-
건설비등	1차년도분	160	-	-	-	-	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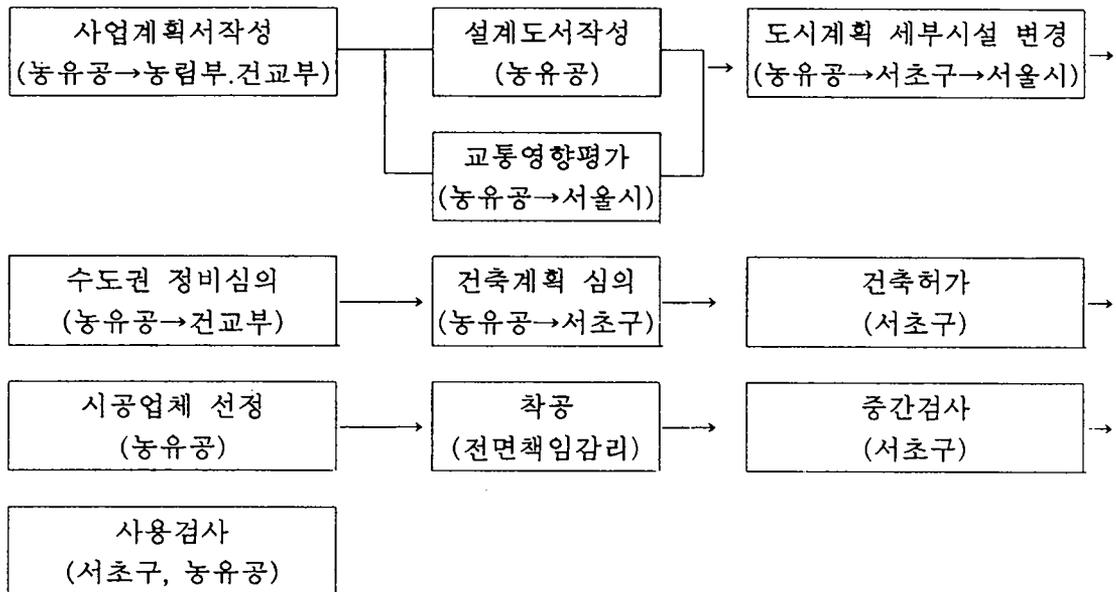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 (02-503-7278)

다. 사업시행주체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라. 사업진행절차



마.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 연도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자금집행절차는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률, 보조금 집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농유공)는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건립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부실시공이나 불법하도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는 등 지도 감독에 철저
- 사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

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비고
농수산물 무역진흥센터	준공일로 부터 20년	농림부장관 승인없이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 제공 불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준용

다. 보고

- 세부사업계획 수립 보고
- 매분기마다 건설 추진상황 보고 및 실적·정산 보고

52	수출 농산물 수송체계 지원(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무역진흥과입니다.

1. 목 적

- 소형 냉장 컨테이너의 운영을 통한 신선농산물의 신선도 제고를 통해 수출확대 기여
- 공적운임(Dead Freight)의 발생 방지에 의한 신선농산물의 원가절감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

2. 추진방향

- 소형냉장컨테이너 운영을 통해 수출물류비 절감 및 수출품 품질향상 도모
- 민간의 참여(투자)가 활성화 될때까지 초기단계의 정부보조 지원 실시
- 적극적 홍보등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및 운영의 효율화로 비용 최소화

3. 근거법령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6조(농수산물의 수출 촉진)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대,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30	-	10	10	10	-
사업비	계	1,326	-	442	442	442	-
	보조	663	-	221	221	221	
	융자	-	-	-	-	-	
	지방비 자부담	- 663	- -	- 221	- 221	- 221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배 경

- '95년부터 농유공에서 신선농산물의 신속한 수출을 위해 일본 장비를 입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신선도 유지 효과가 우수하여 수요증가 추세
- 초기사업으로서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 기피에 따라 국고지원에 의한 소형냉장 컨테이너를 확보하여 신선농산물의 신속한 수출 수송체계 구축 필요

(2) 사업내용

- 신선 농산물 수출용 소형냉장 컨테이너구입 운영
 - 규격 : 12FT
 - 수량 : 10대
 - 관리 : 농수산물유통공사
- 부관철헤리 및 일본 철도(JR)를 연계하여 국내 산지에서 일본 소비시장으로 직송(DOOR TO DOOR)
- 지원기준 : 국고보조 50%, 자부담 50%

나. '97 사업비(예산) 내용

(단위: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대)	사 업 비					
		사업비 합계	예산안(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0	442	442	221	-	-	221
소형컨테이너 구입	10	442	442	221	-	-	221

<추진체계>

-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국제농업국 무역진흥과(02 - 503 - 7278)
- 다. 사업시행자 :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사업시행기관은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당해 연도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와 협의
 - 사업비 지원방법
컨테이너 구입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

<행정사항>

- 가.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 후 관 리 기 간	처 분 제 한 기 준	비 고
냉장컨테이너	제작완료후 검수 일로부터 5년	사후관리 기간중 농림 부장관의 승인없이 양 도, 매각, 교환 불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현재액 및 사후관리 사항 등을 기록

- 사업시행자는 소형냉장컨테이너의 활용도를 정기적으로 분석·평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나. 보고
 - 연간 농산물 수송계획 및 실적보고
 -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정산보고

53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입니다.

1. 목적

- 기존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농어민의 출하선택의 폭을 넓혀 안정적인 상품공급과 판매처리 능력을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지 소매상과의 직접연결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의 수취가격 제고와 소비지의 가격안정 도모

2. 추진방향

- 산지유통시설과 연계하여 종합 선진물류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 2004년까지 소비지 유통권을 중심으로 대도시 외곽에 16개소 설치
- 건설규모는 건설당시 권역내 취급물량과 소비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초기에 과잉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집.배송시설, 보관시설, 소포장시설, 유통가공시설, 정보처리시설, 관리시설, 주차장 등 주요시설을 갖추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규모 및 시설을 결정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후 건설
 - 사업대상자는 개방화에 대비한 선진유통기법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추진
- 건설후 물량증가, 새로운 시설설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완투자가 필요한 경우 신규사업에 우선하여 추가지원
 - 초기 과잉투자를 지양하고 여건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하므로써 운영 내실화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4

4. 연도별 지원계획

< 농특세 사업 >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94-'95	'96	'97예산(안)	'98	'99-2004	계	
사업량	4	4	2	2	4	16	
사업비	계	143,200	139,450	135,234	100,000	1,390,796	1,908,680
	보조	45,300	47,200	40,004	20,000	434,096	586,600
	융자	57,100	52,800	33,900	30,000	261,300	435,100
	자부담	40,800	39,450	61,330	50,000	695,400	886,980

※ 연차별 투자계획(개소수 등)은 운영실태를 감안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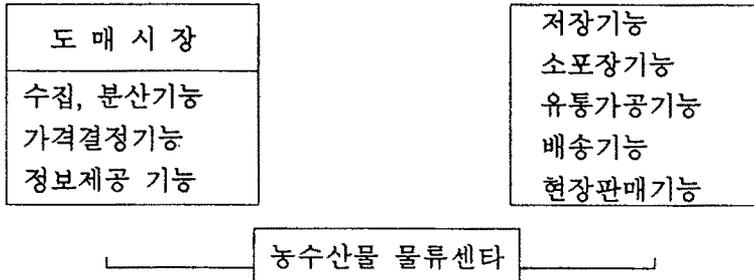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내용설명

(1) 사업내용

- 농수산물 유통개혁대책의 일환으로 '94 하반기부터 추진
- 생산자조직 및 산지유통시설로부터 농수산물을 수집(유통가공, 소포장)하여 직영점, 가맹점, 수퍼마켓, 대량수요처 등에 직접 배송
- 농수산물 물류센타는 기존의 도매시장 기능을 보완하면서, 보관, 소포장, 유통가공, 배송, 현장판매 기능까지 포괄적으로 수행
 - 현장판매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자만을 회원제로하여 도매행위에 한함.



- 가격결정방법은 출하자 판매희망가격, 도매시장 경락가격, 시황 등을 감안한 상대거래방식에 의하여 결정
 - 산지유통시설 및 공동출하조직에 사전가격을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2)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유통자회사), 민간유통업자 등(독자적으로 건설운영하는 경우)
 - 생산자단체는 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 단,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인 경우는 지방공사·공단이외의 출자 출연법인(상법상의 회사)을 별도로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자가 공동출자(콘소시움)하여 건설 운영하는 법인
 - ① 지방자치단체 + 생산자단체 + 민간유통업자 ② 지방자치단체 + 생산자단체 ③ 지방자치단체 + 민간유통업자 ④ 생산자단체 + 민간유통업자

(3)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기준

-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단체 : 건설공사비의 50% 국고보조, 부지구입비의 50% 국고용자
- '94~'96 사업선정지구 지원율 : 건설공사비의 70% 국고보조, 부지구입비의 70% 국고용자
- * 보조금지원대상은 집배송시설, 보관시설, 소포장시설, 유통가공시설, 정보처리시설, 사무실 등 주요시설과 부지조성비, 주차장 등 부대시설임.
- 민간유통업자 : 건설공사비 (부지구입비 제외)의 60% 국고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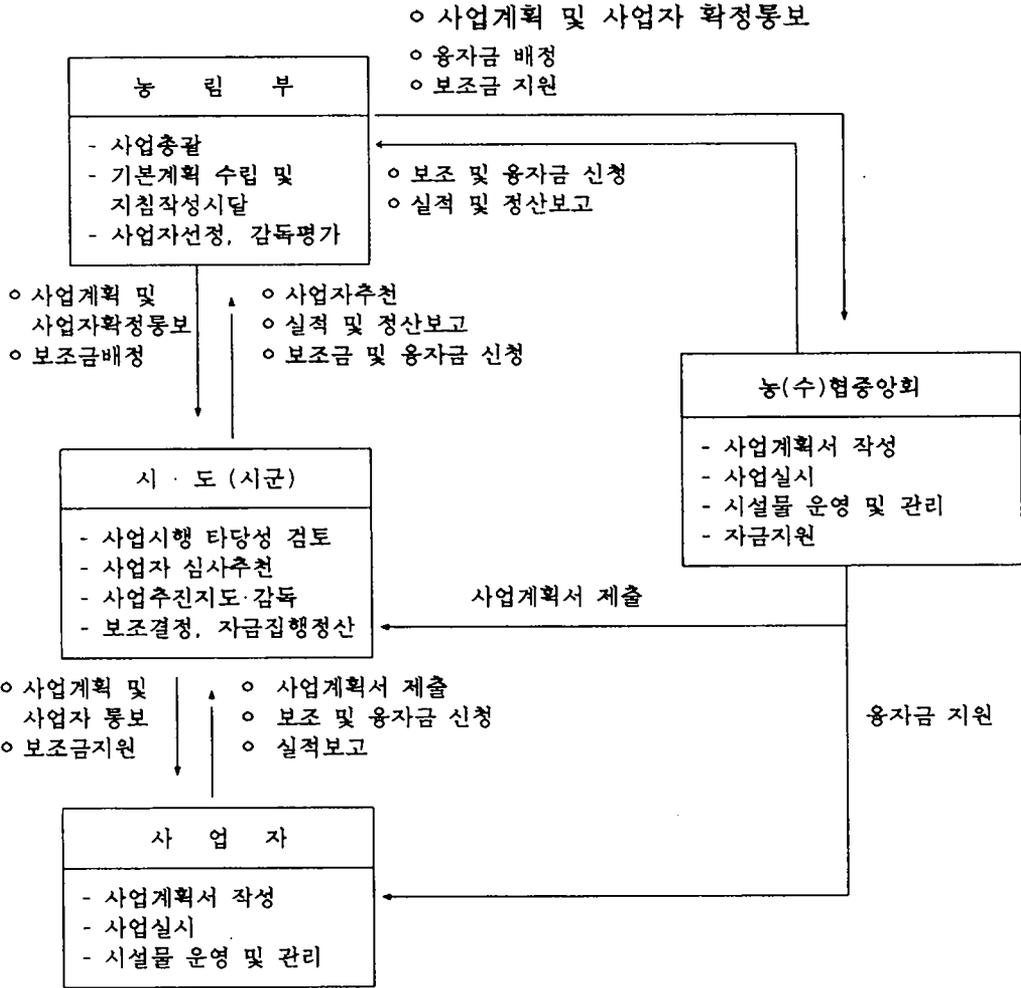
○ 적용범위

- 변경된 지원기준은 '97년도 이후 사업선정대상자부터 적용하며 '96년도 이전에 확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원율을 계속 적용
- 콘소시움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자의 지원율을 각각 적용

○ 지원조건

- 용자조건 : 연리 3% (민간 5%), 5년거치 10년상환
-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농수산물 물류센타 사업자와 시·도지사는 동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업구역내 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농수산물 물류센타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당초 지원목적의 수행사항 등을 점검하고 년 1회이상 동 협의회 운영실적을 종합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 농림부장관은 위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벌칙을 가할수 있음.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종합물류단지내 입주사업자는 건물비에 한하여 지원

(4) 사업시행체계



나. '97 사업비(예산)내용

지 구 별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비 계	예산안 (농특세 전입 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용자		
계	개소 10	백만원 135,230	73,900	40,000	33,900	-	61,330
서울 창 동(농협)	1	9,500	2,900	2,900	-	-	6,600
양재동(")	1	13,100	3,900	3,900	-	-	9,200
충북 청 주(")	1	2,800	1,100	1,100	-	-	1,700
부산 감천(수협)	1	4,130	2,900	2,900	-	-	1,230
전북 전주(농협)	1	7,800	6,000	6,000	-	-	1,800
충남 천안(충남도)	1	21,000	14,700	14,700	-	-	6,300
경북 군위(경북도)	1	14,400	10,000	8,500	1,500	-	4,400
전남 장성(거평)	1	17,700	10,000	-	10,000	-	7,700
신규지구	2	44,800	22,400	-	22,400	-	22,400

※ 신규지구사업 대상자는 '97년 1/4분기부터 사업착수가 가능하도록 조기 선정 계획임.

※ 용자조건 : 연리 3% (민간 5%), 5년거치 10년상환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유통정책과(02-504-9411-2)
- 시·도 : 농산물유통과 또는 농정과 (직접사업시행자인 경우만 관련)
- 시·군, 자치구 : 유통과 또는 산업과 (직접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관련)

다.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 (사업시행자)는 세부적인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 농림부장관은 사업자로 확정된 자가 사업개시연도 10월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금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부지매입, 건축설계, 건축허가 등 추진상황이 부진한 사업자에게도 자금 등 지원보류
- 사업대상자는 물류센터 건설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사업비 지원방법

-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 계약체결후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가 농림부에 용자신청
- 건물비는 기성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농림부에 보조신청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책임을 지며 사업의 기성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
 - 보조금 (용자금 포함)의 집행상황(교부결정, 검정, 정산 등)을 분기별로 보고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지도·감독의 책임을 진다.
 - 농수산물 물류센타 관리책임자는 별도의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한다.
- 농림부장관은 시설물의 관리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여부를 조사·평가감독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수 있다.
 - 명령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관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 터	까 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 건물 - 부속설비 - 중요기계장비	1997	2025	○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할수 없다. 다만, 사후관리기간중 사정변경으로 상기행위를 할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조항 준용

나. 보고·기타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공사추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지고 이상유무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및 생산자단체의 장은 건설추진상황을 분기마다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농수산물 물류센타 사업주체는 본사업의 운영상황을 연1회 이상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도지사, 생산자단체의 장

나.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유통자회사 포함)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민간 유통업자
-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다. 신청절차

- 사업희망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시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년도 3. 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지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라. 구비서류

-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편익비용(B/C)분석 (별지 제2호 서식)

마. 사업자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소비지 유통권역을 중심으로 건설부지를 확보하고 있거나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자
 - * 산지로부터의 집하 및 소비지로의 분산을 위한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농수산물의 반입반출이 원활한 곳) 대도시에 인접한 지역
- 유통분야에 사업경험이 있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로서 경영능력과 사업의지가 확고한 자.
 - * 시설비(자부담과 담보능력)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자
- 산지의 출하조직과 연계계획 및 출하조직의 반응이 좋은 사업자로서 보다 안정적이고 규모있는 소비지의 판매조직을 확보하고 있거나 앞으로 확보할 계획이 확실한 자

(2) 심사 및 평가요소

- 사업자 및 조직의 사업수행능력
 - 사업동기의 투명성 및 신뢰성, 사업자의 의지와 능력
 - 농수산물 유통 및 연관분야 사업경력, 사업실적
 - 조직화 정도, 자기자본 부담능력 등
- 사업예정지의 입지여건
 - 유통권역의 상품공급 및 소비규모, 소비인구
 - 유통권과의 수송거리, 도로교통여건
 - 사업장 부지확보, 토지이용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
 - 계획물량의 적합성, 물량대비 시설규모의 합리성
 - 상품수집계획의 합리성과 산지출하조직의 확보가능성
 - 상품 분배계획의 합리성과 소비지 판매망의 확보가능성 등

(3) 선정절차

- 농림부장관은 사업자 선정기준을 구체화한 심사 및 평가요소 (사업자 및 조직, 사업장의 입지,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물량확보 가능성 등)를 설정하여 사업희망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를 확정된 후 시·도지사 또는 사업대상자에게 통보

바. 기타사항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수시로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전년도 3. 31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예정지역의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법규상의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
- ※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신분은 농림부 유통정책국 유통정책과 (전화 504-9411, 9412)로 문의

<세부시행계획 작성시 고려사항>

I. 사업자 및 조직부문

- 사업추진 동기
 - 농수산물물류센터 사업추진목적 및 기본방침
- 사업신청자의 사업경력
 - 농수산물유통분야, 관련분야, 기타 사업경력으로 구분(각부분 최근 3개년간 매출액 실적자료)
- 재무구조
 - 총사업비 산출근거 및 자부담 조달방법
 - 재산상태 및 자금확보 여력

II. 입지여건 부문

- 유통권역의 규모
 - 상품공급권역의 도시 및 인구상황
- 유통권역과의 수송시간 및 도로교통 여건
 - 상품공급권역 중심권 지역까지의 수송시간 및 예정부지 주변의 도로상황
- 부지확보 여부
 - 예정부지의 확보가능성 및 부지확보 추진내용
- 토지이용 가능성 여부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농지전용허가 가능여부
 - 건축허가 가능여부 및 물류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여론

III.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물량확보 가능성 부문

- 취급물량 및 시설의 규모
 - 인근 유통권역의 농수산물 연간 수요량
 - 연간 취급품목별 계획물량 및 산출근거
 - 주요 시설의 규모 및 운영계획
- 상품수집 및 분산계획
 - 산지 출하조직과 소비지 판매조직의 확보상황 및 향후 확보계획
- 정보전산화 구축계획
 - 산지 출하처 및 소비지 판매처와 물류센터간 정보전산화 구축 및 개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고정비용

- 토지구입비는 전액을 사업년도에 일괄계상하고 1차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으로 하되 토지 임차시에는 임차료를 매년 기재
- 건물구입비(건축비)는 국고 및 지방비 보조를 제외한 자부담금(용자포함) 금액을 사업년도에 일괄 기재하되 1차년도부터 9차년도까지는 공란
- 각종 기계구입비는 건물구입비 기재요령과 같음
- 전속 인건비는 가동율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지불되는 직원 인건비를 매년 기재
- 화재보험료와 기타는 매년 발생하는 금액을 매년 기재하되 지불이자(자기자본금 이자포함)와 감가상각비는 제외
- ※ 기존유통시설(토지, 건물, 각종기계등)을 활용할 경우 구입당시가격을 사업년도에 기재

○ 가변비용

- 직접노무비, 원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 일반관리비, 각종세금 기타는 모두 매년 발생예정액을 매년 기재

○ 판매사업

- 가공 및 판매사업 인한 조수입액을 매년기재

○ 현재가치

- 미래 비용과 수입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는 것임
- r 은 0.06으로 계산

○ 기타

- TC : 비용의 현재가치의 합계
- TB : 편익의
- B/C : TB
TC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 합계만 기재

편익비용 (B/C) 분석

(단위 : 백만원)

		사업년도	1차년도	2차년도	----- 9차년도	합 계
비용 (C)	고비용	토건 지물 구구 입비 비비 료료 비비 타타 계계				
		직원 접료 반중				
	합계 (가)	현 재 가 치	(가)	$가 \times 1+r$	$가 \times (1+r)^2$	$(가) \times (1+r)^9$
편익 (B)	수탁사업	선별 포장 등료 장장 타타 계계				
	매출사업	가공 및 판매금액				
	합계 (나)	현 재 가 치	(나)	$나 \times 1+r$	$나 \times (1+r)^2$	$(가) \times (1+r)^9$
B/ C	나 / 가					TB/TC

54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 기관은 농림부 시장과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규격상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지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고 동 조직에 의한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2. 추진방향

- 사업자의 경영능력과 입지조건을 분석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조직에 지원
- 조직의 발전에 따라 연차별 추가지원을 하여 일시에 과다투자 방지
- 시설의 운영상황을 점검·평가하여 익년도 정책사업 지원에 반영
- 생산자 조직의 유통사업 능력을 배양하여 이들을 통한 산지 유통 개선도모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1조의2 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개소, 백만원)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사업량		160	21	28	24	24	63
사업비	계	155,000	18,000	18,000	16,800	16,800	85,400
	보조	62,000	7,200	7,200	6,720	6,720	34,160
	읍자	23,800	-	-	3,360	3,360	17,080
	지방비	34,600	5,400	5,400	3,360	3,360	17,080
	자부담	34,600	5,400	5,400	3,360	3,360	17,080

※ 사업시작 연도 : '95년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설명

1) 배경

- '94년 수립한 유통개혁 대책중 산지유통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농어촌 특별세를 재원으로 '95년 부터 추진

2) 지원대상자

- 농협지역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법인화된 생산자 조직
- ※ 미곡생산자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시설별 지원규모 및 지원단가

시 설 명	규 모	단가	사업비	비 고
<건물> 선별(과)시설	평 200	백만원 1/평	백만원 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송차량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설계 ○ 선과시설의 1면은 수송차량의 적재함과 창고바닥의 높이가 같도록 Deck 시설 설치 ○ 집하시설은 수송차량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설계 ○ 집하시설의 1면은 Deck 시설 ○ 저장실은 여건에 맞게 구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콤프레서 : 평당 0.4마력 이상 - 가 습 기 : 20 l/h 이상 - 제상기, 에어커튼 등 구비 ○ 예냉시설은 취급품목등을 감안 여건에 맞게 구획
집하시설	100	1/평	100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200	2.5/평	500	
관리사무소 일반창고등	50	1/평	50	
<기계류> 선별기, 포장기, 콘베어등	-	-	-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장비류> 팔레트,지게차,수송 차량, 운반상자등	-	-	-	○ 기종별 구입가격 기준

- 주) · 시설별 규모는 실정에 맞게 조정
 · 지원기준단가를 초과할 경우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 첨부.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예시되지 않는 시설장비도 가능
 (객관적인 단가 산출내역 첨부)

4)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사업자가 사업능력 및 입지조건에 따라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하되 당해년도 사업규모는 15억원 이내로함을 원칙으로 한다.
 - ※ 부지구입은 자부담으로 하되 사업비에는 포함하지 않음
-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20%, 지방교부금 20%, 자부담 20%
 - ※ 융자조건 : 연리5%, 3년거치 7년 상환

5) 지원시설의 종류

- 선별시설, 집하시설, 저온저장시설(예냉시설)등 건축비와 선과기, 세척기, 자동운반기등 부대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시장·군수

- 사업기간 : 1년간 (1월~12월)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02-500-2675~6)
- 시·도 : 농산물유통과(광역시는 농정과)
- 시·군·자치구 : 산업과 (유통특작과, 지역경제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규격상품화 추진여건 성숙도,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에 의거 선정
 - 농산물포장센터 사업신청자 평가표 (별표1)
- 간이집하장을 지원받은 생산자조직은 시설운동을 충분히 활용하고도 추가 시설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지원

□ 법인경영체와 관련

- 법인경영체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의 자격요건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이 50% 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등)로 출자한 법인
 - 영농조합인 법인의 경우 조합원이 5가구 이상인 법인
 - 운전자금이 충분히 확보된 법인
 - 주산지에 위치하고 운영실적이 3년이상 경과된 법인으로서[별표1] 사업자평가서상 평점 70점이상 해당법인 중 고득점순
 - 적격법인의 사업신청량이 정부계획물량에 부족할 시, 법인설립후 3년이 안된 법인에 대해서도 사업자평가결과 고득점순으로 지원 가능
 - 구성원의 자질 : 구성원 2/3이상이 집하·공동출하 등의 실적 3년 이상
- 당해 법인경영체의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활용하는 조직에 대해서만 지원
- 법인경영체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등기부상 출자가 조합원별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시군에서 확인
 - 지원시설물이 법인명의로 등기실행되었는지
 - 토지 또는 건물대장 등재여부 확인
- 법인경영체 지원시설의 준공검사는 시군 기술직(토목,건축)이 직접 담당
- 정부지원을 받았거나 받고자하는 법인경영체는 매년도의 사업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시군에 보고
 - 보고하지 않은 법인경영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업실적은 공동생산, 출하, 가공, 유통, 판매, 수출, 농작업대행 등 법인경영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에 한함
- 지원대상자 선정시 시군의 회계, 세무, 마케팅, 농림정보 활용방법 등 교육을 이수한 법인경영체 우선선정
- 청과물종합유통시설, 간이집하장 및 타 포장센터와 중복되지 않는 지역

(2) 우선순위

- ① 선정기준에 의한 사업자 평가결과 고득점 순으로 지원
 - 발기반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에 사업장 부지를 선정할 시 우선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을 사업장 부지를 선정할시 밭, 산지등 보다 후 순위
- ② 산지에서 영농에 종사하면서 수집상 영업을 겸업하는 농업인과 전문 수집상이 연대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을 결성하여 무, 배추, 대파, 양파 등 규격출하가 부진한 품목을 주종으로 포장센타를 설립하고자 하는 조직
- ③ 조직원의 결속도가 높고, 공동출하 등 유통사업 실적이 있으며, 사업수행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조직

<논의 잠식을 수반하는 사업장 부지>

- 대구·경북 재정지정리 지역은 '97 사업부터 정책자금 지원 제외
- 농업진흥지역은 '97 사업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지역여건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시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허용
 - 또한 '98년부터 농업진흥지역에 정책자금 지원을 허용할 경우에는 보조부분을 '98~'99년에 걸쳐 용자로 전환키로 하였으므로 '98 예산 신청시 반영되도록 사전 조치
 - '98년 : 보조 부분의 1/2을 용자로 전환
 - '99년 : 보조부분 전액을 용자로 전환

(3) 선정절차

- 사업희망자는 통합실시 요령상의 사업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청에 제출

사업자 사업실시, 시설운영 및 관리	① → ⑥ ←	시·군 사업자 심사 사업계획서 및 대상자통보, 정산	② → ⑤ ←	시·도 심사 및 신청 사업추진지도 및 사후관리	③ → ④ ←	농림부 사업계획수립 및 지침작성 시달 사업자 심사 확정 통보
------------------------------	----------------------	--	----------------------	------------------------------------	----------------------	---

- ① 사업계획 수립, 사업신청, 보조금 신청
- ② 사업자 심사 및 사업신청, 사업추진 실적보고, 정산실행결과보고
- ③ 사업자 심사 및 사업신청, 사업추진실적 보고, 정산결과보고

- ④ 사업지침 시달, 사업자 확정통보, 보조금 배정
 - ⑤ 사업자 확정통보, 보조금 배정, 추진상황 지도점검
 - ⑥ 사업자 확정통보, 보조금 지원, 추진상황 지도점검
- 농림부에서는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업성 평가를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뢰하고, 유통공사에서는 농협중앙회의 협조를 받아 현지평가를 실시한후 그 결과를 농림부에 제출
 - 농림부에서는 평가결과를 참고로 “사업자선정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최종 확정 통보

※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사업자 선정심의 위원회

- 위원장 : 농림부 시장과장
- 위원 : 농림부 규격출하 담당 사무관
 - ” 채소생산·유통 담당 사무관
 - ” 과실생산·유통 담당 사무관
- 국립농산물검사소 규격출하 담당 사무관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과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투자심사 부장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사업자로 확정되면 농림부장관이 인정한 사업계획에 의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시장·군수는 승인결과를 도지사를 경유하여 사업당해년도 3월말까지 농림부에 제출한다.
 -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의거 처리한다.

{	지원 금액의 변동을 요하는 계획변경, 사업자 변경 : 장관 승인
	지원 금액 범위내에서의 계획변경, 사업장 변경 : 시·도지사 승인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 승인

○ 사업비 지원방법

- 사업자로 확정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 대상자로서 자격을 취소하고 사업자금 지원을 회수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한 책임을 지며, 교부된 보조금은 조직 대표의 입회하에 공사 기성고에 따라 시공업체에 지급한다.
 - 기계 및 장비구입시에는 물품 구입 영수증 확인으로 정산가능
- 시장·군수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 한 후 보조금을 집행해야 한다.
 - ※ 시장·군수는 자부담액 집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조치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회의비, 유인비 등)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 집행한다.

마. 기타사항

- 사업자는 설계계약, 시공업체 선정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체결 한다.
- 시장·군수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설계 및 시공업체 선정에서 부터 준공 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 감리는 농어촌진흥공사나 감리업체(관계 법령에 의한 유자격업체)를 선정 한다.
- 공사 감리감독, 기술적인 문제 등은 농어촌진흥공사나 농수산물유통공사 또는 농협에 지원을 요청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 ○ 사업자는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지도·감독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함

- 본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조직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들의 이용을 촉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는 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조사·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정도에 따라 보조금 회수조치
- 사업자가 본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고보조로 설치된 포장센터에 대해서 농협의 회원조합 사업자는 농협중앙회에서, 법인 등 기타 사업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건물건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실시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 고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 주요기계·장비	준공 구입일	10년간 7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나. 보고·기타

- 시·도지사는 사업자의 건설사업 추진실적[별지 제2호서식]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농림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시설 운영상황을 사업실시 익년도 부터 3년차 까지 매반기 익월 20일 까지 농림부에 보고 [별지 제3호서식]
- 보조금의 검정 및 정산은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경유하여 익년 1월 20일 까지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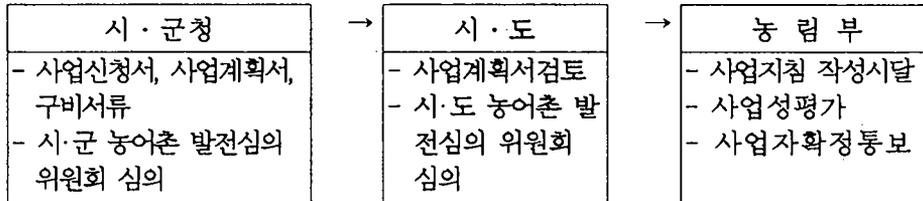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시·군청 (읍·면사무소를 경유 시·군청에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 농협지역조합, 전문조합,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기타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으로서 고유상표로 공동규격출하 등 유통사업을 한 실적이 있는 우수 조직

다. 신청절차



라. 구비서류

- 법인등록 증빙서류, 총회 의사록(또는 정기총회 회의록), 정관, 출자자별 출자 자산내역, 사업예정부지의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자부담조달계획서(조달형태: 출자, 융자등, 제시재력명세:예적금잔액 증명, 보증기관의견서, 부동산등) 등

마. 기타사항

- 각 시군에서는 물량 및 금액에 대한 사업신청 총괄표를 작성하여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시도를 경유 농림부(시장과)에 제출 (농림부 기획예산담당부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요구서와는 별도)

【 참고 】

생산자조직 분류 기준

등 급	활 동 기 준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 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견본거래, 투명거래의 실시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공동계산제 실시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70%이상
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 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 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 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 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제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출하 비율이 50%이상
일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 활동이 없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한 등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별제 제1호서식】

농산물포장센터 사업계획서

1. 사업자 (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조직현황	조직명			전화번호			
	주소						
	조직결성일			조직원수(농가)			
재배현황	품목	재배면적		생산량		출하시기	
		ha		톤			
출하실적	총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톤	톤		톤		톤	
(전년실적)	상표명						
	주요출하처						
공동유통시설유형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예냉고	선별(과)기	기타공동시설및장비
	동평 ()	조 ()	‘ ()				

- ※ ○ 상표명 : 00농협 딸기, 00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납품 등
- 유통시설은 처리능력 (저장능력, 1일처리능력 등)을 () 내서

○ 사업추진일정 (계획)

- 부지확보완료 (부지구입후 농지전용, 형질변경 필요시 행정절차 완료 가능시점)
- 토목설계 및 부지정지작업 완료
- 기초 및 실시설계 완료
- 착 공
- 준 공

○ 사업계획

품목	생산량	출하 시기	출 하 형 태			출 하 처		
			규격출하	품질인증	일반출하	도매시장	직 판	기 타

○ 시설 운용계획

- 원료확보방안
- 시기별 운용계획
- 판매방안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년 도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지원액 등)

○ 기타 특기사항

【별표1】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신청자 평가표

평가항목		등급				평점	등급기준
		A	B	C	D		
1. 규격 상품화 추진여 건성 속도 (44점)	(1)규격상품 화로 발전 가능성(10)	10	8	6	4		<p>A : 조직의 상표가 개발되어 있고, 공통기준에 의거 출하된 실적이 있으며 도매시장에서 단일 상표로 알아주고 있음</p> <p>B : 조직의 상표개발은 되어있으나, 공통기준에 의한 출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 농가단위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음</p> <p>C : 현재는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으나, 규격상품화를 인식하고 조직상표를 개발중에 있음</p> <p>D : 조직의 상표가 개발되어 있지 않고 개별 농가별로 출하되고 있음</p>
	(2)규격상품 화에의 참여정 도(9)	5	4	3	2		<p>A: 조직구성원 200명이상 또는 연간규격출하량 10,000톤이상</p> <p>B: 조직구성원 100명이상 - 200명미만 또는 연간규격출하 7,000-10,000톤미만</p> <p>C: 조직구성원 20명이상 - 100명미만 또는 연간규격출하 3,000-7,000톤미만</p> <p>D: 조직구성원 20명미만 또는 연간규격출하 3,000톤미만</p> <p>※ 출자조직원 이외의 조직원도 포함</p>
	(3) 공동사업 실적(25) (규격상품화 조직평가)	25	20	15	5		<p>A : 농검조직분류 최우수 조직</p> <p>B : 농검조직분류 우수조직</p> <p>C : 농검조직분류 일반조직</p> <p>D : 농검에 조직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조직</p> <p>※ 조직분류는 별지(참고) 참조</p>

평가항목	등급				평점	등급기준														
	A	B	C	D																
2. 사업자 수행능력 (25점)	(1)사업동기 ,의지 및 사 업자 경영능 력	10	8	6	4	A : 사업동기의 투명성 및 사업의 지, 경영능력 매우높음 B : 사업동기의 투명성 및 사업의 지, 경영능력 높음 C : 사업동기의 투명성 및 사업의 지, 경영능력 보통 D : 사업동기의 투명성 및 사업의 지, 경영능력 미약														
	(2) 대표자 및 경영 진의 경 력	5	4	3	2	○ 대표자및 경영진중 1인의 경력을 합산 A : 관련분야 10년이상 종사 B : 관련분야 5년이상 - 10년미만 종사 C : 관련분야 3년이상 - 5년미만 종사 D : 관련분야 3년미만 종사 ※ 관련분야 : 협동조합 임원 생산자 임 의조직대표, 유통분야 종사자														
	(3) 출자금 의 규모 및 합리성	5	4	3	2	A : 평점 20점이상 B : 평점 16점이상 - 20점미만 C : 평점 12점이상 - 16점미만 D : 평점 12점미만														
						<table border="1"> <thead> <tr> <th>출자규모</th> <th>평 점</th> <th>출자자수</th> <th>평 점</th> </tr> </thead> <tbody> <tr> <td>10억원이상</td> <td>10</td> <td>50명이상</td> <td>10</td> </tr> <tr> <td>5억원이상-10 억원미만</td> <td>8</td> <td>30명이상-50 명미만</td> <td>8</td> </tr> <tr> <td>1억원이상-5 억원미만</td> <td>6</td> <td>10명이상-30 명미만</td> <td>6</td> </tr> <tr> <td>1억원미만</td> <td>4</td> <td>10명미만</td> <td>4</td> </tr> </tbody> </table>	출자규모	평 점	출자자수	평 점	10억원이상	10	50명이상	10	5억원이상-10 억원미만	8	30명이상-50 명미만	8	1억원이상-5 억원미만	6
출자규모	평 점	출자자수	평 점																	
10억원이상	10	50명이상	10																	
5억원이상-10 억원미만	8	30명이상-50 명미만	8																	
1억원이상-5 억원미만	6	10명이상-30 명미만	6																	
1억원미만	4	10명미만	4																	
(4) 자부담 조달능 력	5	4	3	2	A : 자부담 기확보 B : 자부담 50%이상확보 및 조달계 획이 합리적이어서 확보가능성 높음 C : 자부담 50%미만이나, 조달계획이 합리적이어서 확보가능성 높음 D : 자부담 조달이 불투명															

평가항목		등급				평점	등급기준			
		A	B	C	D					
3. 사업 계획의 적정성 (35점)	(1) 투자의 효율성	5	4	3	2	A : 투자효율성 15%이상 B : 투자효율성 10%이상 - 15%미만 C : 투자효율성 5%이상 - 10%미만 D : 투자효율성 5%미만 ※투자의 효율성(%) = $\frac{\text{매출총이익}}{\text{투자비}} \times 100$				
	(2) 부지확 보계획	10	8	6	4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2점 이상 - 15점미만 C : 평점 9점 이상 - 12점미만 D : 평점 9점미만				
						부지소유권	평점	관련법규 제한여부	평점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10	제한 없음	5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계약 체결	8	약간 제한	4	
타인명의, 사 용승락	6	상당한 제한	3							
타인명의, 사 용 미승락	4	제한이 많음	2							
(3) 입지조 건	5	4	3	2	A : 평점 15점 이상 B : 평점 13점 이상 - 15점미만 C : 평점 10점 이상 - 13점미만 D : 평점 10점미만					
		경합 보완성		평점	교통여건		평점			
		상호보완성		10	양 호		5			
		경합, 보완성 없음		7	보 통		3			
		경합성 있음		4	미 흡		2			

평가항목	등급				평점	등급기준				
	A	B	C	D						
(4)예상가 동률	5	4	3	2	A : 평점 10점이상 B : 평점 8점이상 - 10점미만 C : 평점 6점이상 - 8점미만 D : 평점 6점미만 ※ 조합원 원료이용률(%) 포장센타 이용계획량 = $\frac{\text{조합원 원료이용률}}{\text{조합원 생산량}} \times 100$					
	조합원 원료 이용률		평점	가동기간	평점					
	60%이상		5	8개월이상	5					
50%-60%		4	7개월이상	4						
40%-50%		3	6개월이상	3						
40%미만		2	6개월미만	2						
(5) 시·도 지사 의견	10	8	6	4	신청수	A	B	C	D	
						1	1	-	-	-
						2	1	1	-	-
						3	1	1	1	-
						4	1	1	1	1
						5	1	1	1	2
						6	1	1	1	3
						7	1	1	2	3
						8	1	1	2	4
						9	1	2	2	4
					10개이상	1	20%	30%	50%	

< 평가자의 종합의견 >

지 원 가	지원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원 가 : ○ 평가결과 D항목이 3개 이하이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자총 고득점자 순 ○ 지원불가 : ○ 평가결과 D항목이 4개 이상인 사업자 총점 70점 미만인 사업자 ○ 평가결과 70점이상 득점은 하였으나 평가자가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사유명기) 		
평가자	소 속		성 명	서 명

【별지 제2호서식】

년도, 분기 포장센터건설 사업 추진실적 보고

사업자 명	지역 (시·군, 읍·면)	사 업 계 획							
		사 업 량			사 업 비				
		부지	건물	시설및 장비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 비	자담
		m ²	m ²	종	천원				
사 업 추 진 내 역					사업비 집행내역				
부지 확보	건축 허가	착공일	공정	준공 예정일	계	국고 보조	국고 융자	지방 비	자담
월일	월일	월일	%	월일	천원				

※ 부지, 건물면적은 ()내에 평으로 환산 기입.

※ 사업자별 추진실적에 대한 부진 및 문제점 발생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월별추진내용과 함께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년도, 반기 농산물포장센터 시설운영상황 보고

조직명	시 설 현 황								
	사업년도	부지 (평)	사업비 (국 고 보조금)	건 물 (동,평)					기계, 기구 (기종, 수량)
				계	집하 시설	선별 시설	저온 시설	...	
운 영 상 황									
취급물량			선별기가동		저온저장 실적			...	
계	매취	수탁	일수	처리물 량	일수	연간저장 실적	1일평균 저장량	...	
톤			일	톤	일	톤	kg		

※ 특기사항은 별지로 작성하여 보고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원예특작과 및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 적

- 농산물의 성출하기에 생산자에게 생산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자금을 융자지원하여 홍수출하로 인한 산지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단경기에는 출하약정물량을 출하토록 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2. 추진방향

-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공동규격출하가 우수한 생산자에게 우선 지원하여 출하조절사업의 효율성 향상
 - 출하시 소비지의 판매조직과 연계하여 공동규격출하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

4.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내용

- 농가보관이 가능한 밤, 인삼 등에 대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출하조절자금 융자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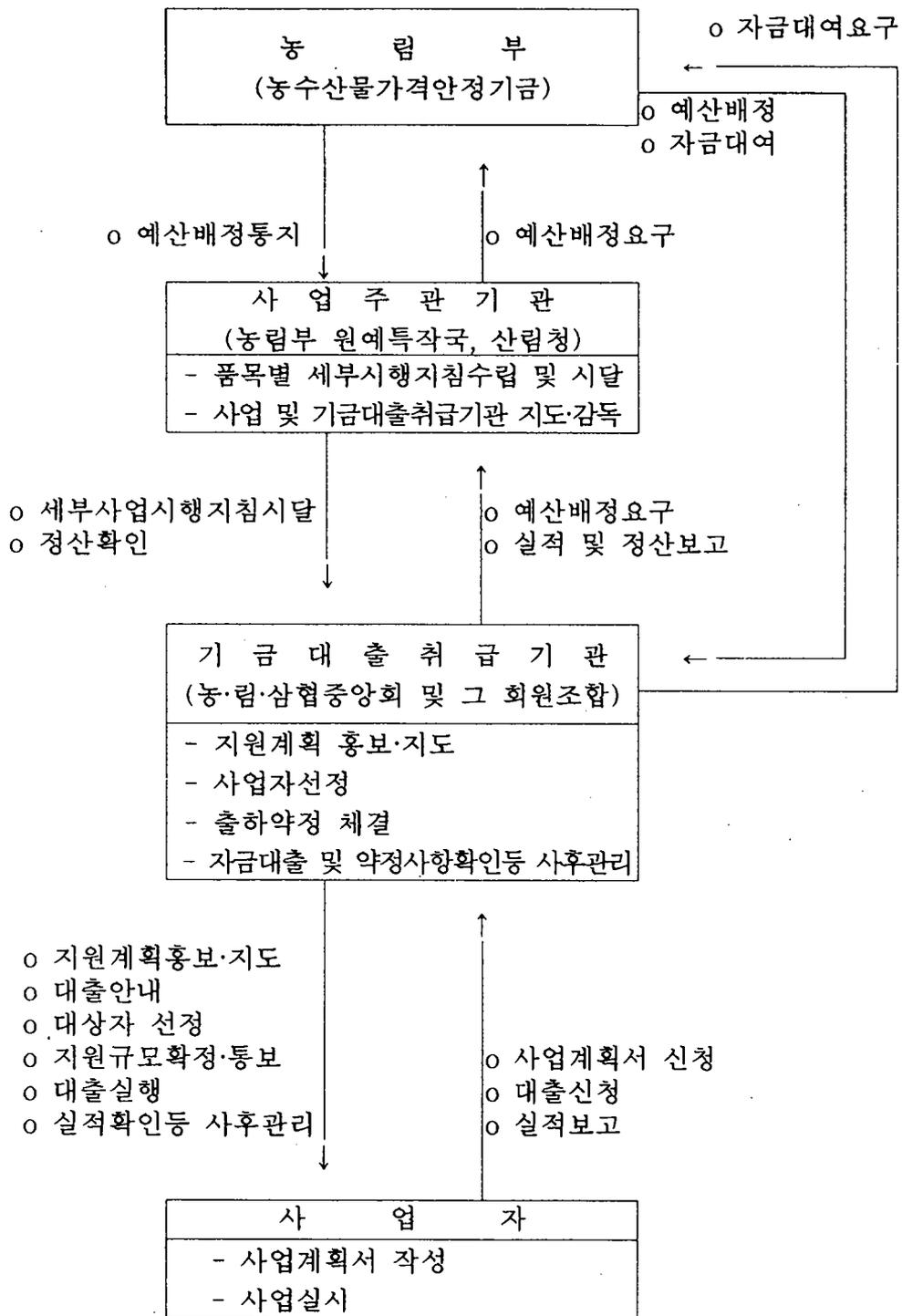
(2) 지원품목 및 대상자

- 지원품목 : 밤, 표고, 인삼, 일반버섯 (영지등 저장이 가능한 일반버섯)
- 지원대상자 : 지원품목 생산자

(3) 지원기준 및 조건

- 지원금액 : 출하약정 총사업비의 80%이내
- 대출금리 : 연리 5%
- 대출기간 : 1년이내
- 출하의무량 : 지원금액의 125%이상 해당 물량

(4) 사업시행체계



나. '97지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품 목	'96계획(A)	'97계획(B)	증△감(B-A)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밤	11,020	13,440	2,420
	표 고	1,320	2,640	1,320
	인 삼	11,958	12,960	1,002
	일반버섯	4,800	4,800	-
	계	29,098	33,840	4,74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인삼, 일반버섯 : 농림부 원예특작국 원예특작과 (전화 02-504-9421)
- 밤, 표고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전화 02-961-2325)

나. 사업담당부서(조합)

- 농업협동조합 (일반버섯)
 - 중앙회 원예특작부 (02-397-5739)
 - 시·도 지역본부 유통가공과
 - 시·군지부 경제사업부서
 - 읍·면 농업협동조합 판매부서
- 임업협동조합 (밤, 표고)
 - 중앙회 금융부 (02-416-9421)
 - 도지회 관리과 (지도검사과)
 - 시·군 임업협동조합지도과 (금융과)
- 인삼협동조합 (인삼)
 - 중앙회 업무부 유통홍보과 (02-201-3304)
 - 지역인삼협동조합 사업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 지원대상품목 재배농가 (인삼은 당해년도 생산예정인 농가)로서 재배 면적, 예상생산량, 과거 출하실적 등을 감안하여 선정

(2) 우선순위

- 주산단지내 전업농을 중심으로 저장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공동규격출하가 우수한 자(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조직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원부터 지원)
- 소비자의 판매조직과 연계가 확실한 자

(3) 신청절차

- 지원대상품목의 출하조절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는 신청시기내에 지원 대상 품목을 담당하는 협동조합(농협, 임협, 삼협)에 사업실시에 따른 안내를 받은후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출
- 사업주관기관은 신청시기 이전에 품목별 세부시행지침을 수립하여 기금대출취급기관(농·림·삼협중앙회)에 시달
- 품목별 사업담당협동조합중앙회장은 사업주관기관의 세부시행지침에 의거 시·도별 자금배정기준을 설정하여 배정하고 사업대상자 및 지원 계획액을 확정하여 시·도(시·군)와 사업자에게 통보
- 신청시기
 - 밤, 표고 : 매년 6.1-6.30
 - 인삼 : 매년 7.1-7.31
 - 일반버섯 : 매년 2.1-2.28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사업주관기관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범위내에서 수급 및 작황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계획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 농·림·삼협중앙회장은 지원대상자의 사업포기등으로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를 다른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비지원방법

- 농·림·삼협중앙회장은 대출대상자에게 대출한도를 배정한후 소요자금을 농림부에 대여 신청
- 대출시에는 대출대상자와 대출약정을 체결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농·림·삼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은 출하약정기간중에 출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에 책임을 진다
- 사업자는 대출받은 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물량이상을 출하하여야 하며 미달시에는 미달금액에 대하여 연체대출금리와 당해 대출금리의 차이금리를 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출하의무량 부여시 출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간 대출을 중지한다

나. 보 고

- 농·림·삼협중앙회장은 대출금집행실적과 출하완료시 출하실적을 사업주관기관(농림부 원예특작국, 산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 출하조절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계신분은 해당품목 사업주관기관이나 사업담당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인삼, 일반버섯 : 농림부 원예특작국 원예특작과 (02-504-9421),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인삼업협동조합
 - 밤, 표고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02-961-2325), 지역임업협동조합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유통정책과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공동규격출하를 촉진함으로써 유통의 대량화로 유통효율 증진
- 농산물의 규격화·상품화를 유도하여 상품성을 제고하고, 주문거래·건본거래·통명거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유통의 현대화 실현

2. 추진방향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고 표준출하규격에 의한 공동출하를 하는 생산자 조직을 대상으로 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생산자의 조직화 유도
- 조직을 활동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우수조직에 집중 지원하는 등 지원의 차별화로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 유통시설을 갖춘 생산자조직 또는 조합의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생산자조직에 우선 지원하여 유통시설 운영활성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 (기금의 운용)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 (농수산물의 표준출하규격화)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8조 (규격화의 촉진 등)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92-'95	'96	'97(예산안)
공동규격출하 촉진사업 매 취 사 업	용 자	4,733	1,743	1,450	1,540
	용 자	1,388	580	403	405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가. 사업내용

(1) 배경

- '94년까지는 규격출하선도금으로 운영해오던 것을 '95년부터는 작목반 공동출하 촉진자금까지 통합하여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으로 운영
- '96년도부터는 지원대상자(조직)를 평가하여 차등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상향발전 및 유통거래의 효율증진

(2) 지원대상 : 조직 고유상표를 사용하고 공동규격출하를 하는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회, 영농조합법인, 농협회원조합 등) 소속농가

(3) 사업내용 : 농산물의 공동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출하선도금(용자) 지원

(4)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등 급	활 동 기 준	지 원 내 용
최우수 출하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으로 등급내 품질이 균일(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선별) ○ 견본거래, 통명거래의 실시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등급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은 같은 가격을 받음) ○ 공동계산제 실시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규격출하 비율이 7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규격출하촉진 자금 : 규격출하 금액의 80% 이내 - 연리 5%
우수출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을 하고 있고, 자체 품질관리요원이 출하품 점검을 하여 등급별 품질의 균일화는 이룩했으나, 농가간 약간의 품위차이가 있어, 가격차 발생으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선과장, 포장센타 등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기계선별이 불가능한 품목은 공동기준에 의한 공동 또는 개별선별) ○ 도매시장, 공판장에서 농가별 경매 실시 (같은 등급도 농가별 가격차 발생) ○ 공동수송, 개별경매 체계로 공동계산제로 발전하지 못함. ○ 조직원의 총 출하량 중 공동규격출하 비율이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규격출하촉진 자금 : 최우수조직에 우선 지원후 잔여자금이 있을 경우 규격출하 금액의 40% 이내 - 연리 5%
일반출하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고유의 상표를 사용하며, 표준규격에 의한 선별·포장은 하고 있으나, 자체 품질관리활동이 없고, 자발적인 의지가 부족하며 조직활동이 우수조직에 미달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수조직 및 우수조직에 우선 지원후 잔여자금이 있을 경우 지원

(5) 지원대상 품목 및 지원시기 등

구분	대상 품목	지원시기	융자기간
1차	마늘, 양파, 고랭지무, 고랭지배추, 양배추, 당근, 오이, 토마토, 수박, 참외, 호박, 상추, 시금치, 양채류, 버섯, 복숭아, 포도, 화훼, 고구마 (19품목)	2월	융자기간은 정부 차입일로 부터 1년 - 농협은 융자 기간중 11개월 간 농민에게 대출
2차	가을무, 가을배추, 딸기, 파, 단감, 양배추(제주), 당근(제주), 사과, 배, 감귤, 감자, 풋고추, 감 (13품목)	8월	
계	30개 품목 (2개 품목 중복)		

* 상기품목의 관내 주산품목의 경우 지원 가능 (단, 곡물류 및 축산물은 불가)

나. '97사업비 (예산)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사업비계	예산안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	154,000	154,000	-	154,000	-	-

* 융자조건 : 연리 5%, 융자기간 11개월

매취사업

가. 사업내용

(1) 배경

- '94년까지는 매취사업의 주요기능이 수급 및 가격안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
- '96년부터는 규격화에 중점을 두어 지원대상자를 평가하여 등급별로 차등지원함으로써 조직의 상향발전 및 유통거래의 효율증진 도모

(2) 지원대상

- 농협회원조합, 영농조합법인

(3) 사업내용 : 농산물의 규격출하 촉진을 위한 매취사업자금(융자) 지원

(4)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항목의 조직분류기준을 준용

나. '97사업비(예산)내용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백 만 원)					
		사업비계	예산안 (농안기금)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매취사업	-	40,500	40,500	-	40,500	-	-

* 융자조건 : 연리 5%, 융자기간 11개월

<사업추진체계>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가. 사업추진기관 : 농 립 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504-9411, 농협중앙회 원예계획과(02)397-5725
- 시·도 : 시·도 농산물유통과 농협지역본부 유통가공과
- 시·군 : 시·군 산업과 농협시·군지부 경제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 본사업 지침 5. 가. (4)의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에 의거 상위등급조직부터 우선 지원
- 농가간 자금배분은 조직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함.

(2) 선정절차

- 농협 시·군지부는 사업신청내역을 농검에 통보
- 농검은 사업신청내역을 검토하고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 점검결과 등을 분석하고 조직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시·군지부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는 농검과 협의하여 사업대상품목 및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대상자에 통보

라. 사업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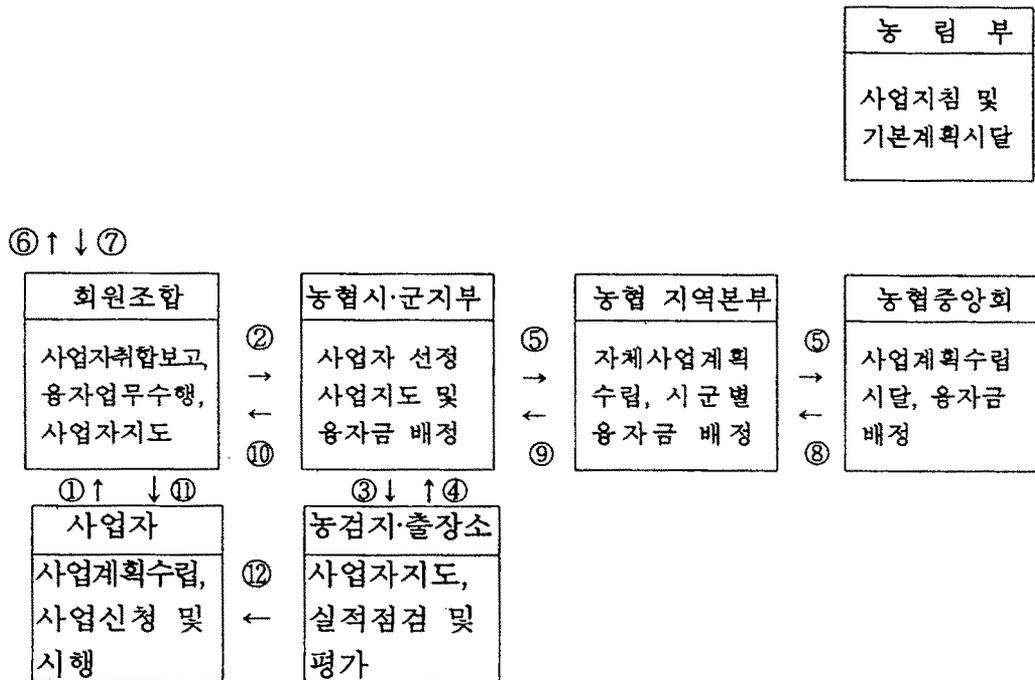
(1)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 농협 시·군지부는 농검이 통보한 조직등급과 재원, 주산품목 및 사업신청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획수립·신청
- 농협 각 계통사무소는 조직별 자금배정 이후 조직의 사업포기등으로 대상자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군지부와 협의, 이를 변경지원

(2) 사업비 지원방법

- 자금지원은 대상 농가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융자담보는 조직공동 또는 수혜농가별로 설정할 수 있음.
- 대농가 지원완료기한은 농협중앙회의 기금차입일로부터 40일 이내
- 기타사항은 회원조합의 대출취급요령에 의함.

(3) 사업시행체계



- | | |
|-----------------------------|------------------------|
| ① 사업신청(조직단위) | ② 사업자 취합 및 신청보고 |
| ③ 사업신청내역 통보, 지원순위 협의 및 결과통보 | ⑤ 관내 사업신청내역 취합보고 |
| ④ 사업자 평가결과 통보 | ⑦ 기본지침시달, 사업계획승인, 예산시달 |
| ⑥ 사업계획 보고 및 자금요청 | ⑨ 자체 사업계획수립시달, 용자금배정 |
| ⑧ 사업계획수립시달, 용자금 배정 | ⑩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금액 통보 |
| ⑩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통보 | ⑪ 용자지원, 사업지도 |
| ⑫ 사업자지도, 실적점검 및 사업평가 | |

□ 매취사업

가. 사업주관기관 :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나.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과 (02) 504-9411, 농협중앙회 유통지원팀 (02) 397-5704
- 시·도 : 시·도 농산물유통과 농협지역본부 유통가공과,
- 시·군 : 시·군산업과 농협시·군지부 경제과

다. 대상자 선정

(1) 선정기준 및 지원우선순위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지침 5. 가. (4)의 “지원조건 및 지원내용”에 의거 상위등급 조직부터 우선지원
- 농산물포장센터 또는 공동유통시설(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등)을 보유하고 규격상품을 출하하는 조직
 - * 규격상품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품목을 취급하는 조직에 우선지원할 수 있음.

(2) 선정절차

- 자금지원을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농협 시·군지부 또는 농유공 시·도지사에 신청
- 농협 시·군지부 및 농유공 시·도지사는 사업신청내역을 농점에 통보
- 농협 시·군지부 및 농유공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계통보고
- 농점은 사업신청내역을 검토하고 신청조직의 전년도 실적·점검결과 등을 분석하고 조직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계통보고하고, 농점소장은 평가분류결과를 농협중앙회장 및 농유공사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 및 농유공사장은 자금신청상황 및 농점소장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시·도별 세부사업계획을 수립, 소요자금을 농림부장관에게 요청
- 농림부장관은 보고된 세부사업계획서와 자금배정요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액을 조정, 농협중앙회장 및 농유공사장에게 일괄 배정

라. 사업시행

(1) 사업계획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는 자금운용계획을 매년 5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부에 제출하면 농림부는 이를 검토하여 확정하고 계획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농협과 협의하여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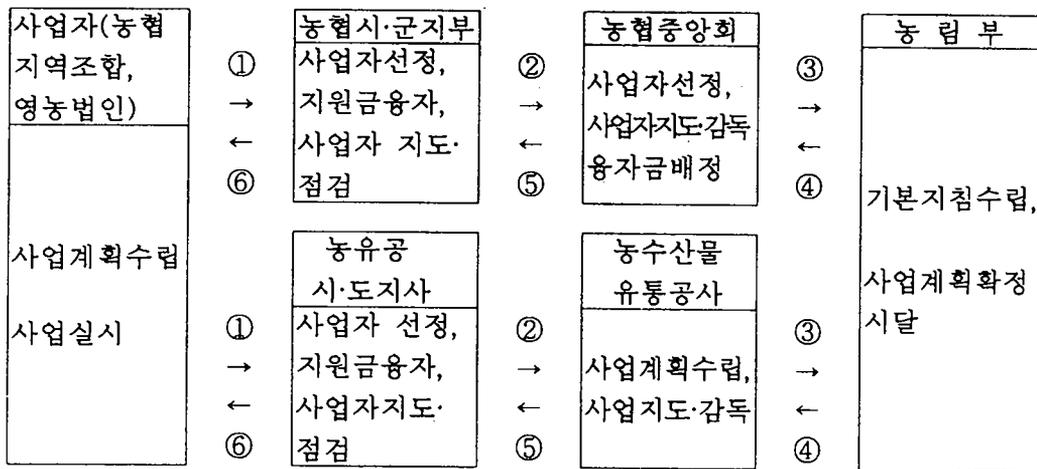
(2) 사업비 지원방법

- 농림부는 대출취급기관인 농협중앙회에 일괄배정 방법으로 자금을 대여
- 자금상환기일은 자금 대여일로부터 11개월 이내

(3) 기타사항

- 기타사항은 농협의 대출 취급요령에 의함

(4) 사업시행체계



- ① 융자신청
- ② 사업신청보고
- ③ 사업계획수립보고, 융자지원요청
- ④ 기본계획 수립시달, 자금배정
- ⑤ 사업계획시달, 융자금 배정
- ⑥ 융자지원실시, 사업자 지도감독평가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1) 농협 및 유통공사의 지도·감독

- 농협중앙회 및 유통공사는 자금운용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

- 약정이행여부 확인
 - 약정물량과 금액 중 한가지가 이행될 경우에는 약정이행으로 간주
 - 공동규격출하실적은 농검의 출하실적 점검결과에 의하며, 조합의 판매대금정산서나 작목반장 및 영농조합법인 대표의 공동규격출하 확인서를 참고
 - 약정 불이행시는 소정의 위약금(기금대출취급기관의 연체대출금리와 당해 대출금리와의 차이금리 적용)을 징수
 - 재해발생등 부득이한 사유로 약정이행 불가능시에는 농협 시·군지부장이 농검(출장소)과 협의하여 위약금 면제조치 가능

(2) 농검의 지도·감독

- 농검은 산지 및 소비지 도매시장 등에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공동규격출하실태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점검결과를 행정기관, 농협 및 유통공사에 통보
 - 농검은 조직의 활동정도를 평가하고 분류하여 행정 및 농협에 통보
 - 공동규격출하 이행정도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시 증액 또는 감액지원 토록 통보
- 행정기관 및 농협은 농검의 점검결과를 당해조직에 통보하고 지도·감독

나. 보고

-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 농협중앙회장은 공동규격출하촉진자금의 지원 및 약정상황은 지원종료일로부터, 운영상황은 사업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 매취사업 : 농협중앙회장 및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은 사업 추진실적을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사업종료시는 최종실적 보고)

다. 사업 안내기관

- 중앙 : 농림부 유통정책과, 농협중앙회 원예계획과, 유통지원팀
- 시·도 : 시·도유통과, 농수산물유통공사 금융사업부
- 시·군 : 시·군 산업과, 농협지역본부 유통기공과, 농유공지사 수출유통부
- 읍·면 : 농협지역조합, 농협군지부 경제과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농협 시·군지부 (농유공 시·도지사)

나. 신청자격, 절차 및 구비서류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1) 신청자격

- 조직 고유상표를 사용하고 표준출하규격에 따라 선별·포장하여 공동 출하하는 생산자조직(작목반, 영농회, 영농조합법인, 농협지역조합, 기타 생산자조직 등)의 소속농가
- 규격출하사업량이 일정규모 이상인 조직의 소속농가

(2)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의 대표자는 조직원의 신청을 받아 농림사업 지원신청서(실시규정 별지 제3호 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회원조합에 일괄 신청
- 농협지역조합(회원조합 포함)은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농협시·군 지부에 보고

매취사업

(1) 신청자격

- 조직의 고유상표로 규격상품을 출하하는 조직
- 농산물 포장센터 사업자 또는 집하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등 유통시설을 보유한 생산자조직(농협회원조합, 영농법인)으로서 규격상품을 출하하는 조직

(2)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 사업희망자는 농림수산사업 지원신청서(실시규정 별지 제3호서식)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농협회원조합은 관할 농협 시·군지부에 영농조합법인은 관할 농협 시·군지부 또는 유통공사 시·도지사에게 신청
- 농협 시·군지부 및 유통공사 시·도지사는 신청사항을 계통보고

[별지 제1호서식]

**(공동규격출하촉진사업)
(매 취 사업) 계획서**

1. 사업자(생산자조직명) :

2. 현 황

조직 현황	조 직 명			전화번호		
	주 소					
	조직결성일자			조직원수(농가)		
재 배 현 황	품 목	재배면적	생 산 량	출하시기		
		ha	톤			
전 년 도	총출하량	규격출하량	품질인증량	일반출하량		
	톤	톤	톤	톤		
출 하 실 적	상 표 명					
	주요출하처					
공동유통 시설보유 현황	집 하 장	선별(과)장	저온저장고	일반창고	선별(과)기	기타시설 및 장비
	동, 평 ()	동, 평 ()	동, 평 ()	동, 평 ()	조 ()	()

* 상 표 명 : 00 농협딸기, 00 사과 등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수집상, 위탁상, 백화점납품 등
 유통시설은 처리능력(저장능력, 1일 처리능력 등)을 () 내에 기재

< 매취사업 >

- 세부사업계획 (자금신청)

(단위 : 백만원)

매취품목	매취시기	단 가 (원/kg)	사업량 (톤)	사 업 비		
				계	용 자	자부담

- 자금소요시기 :
- 판매계획

판 매 처	판매물량	판매예상액	판매예정시기	비 고

- 유통시설 이용계획

품 목	매취량	선과(별)장이용		저온저장고 저장		기 타	
		물 량	기 간	물 량	기 간	물 량	기 간

4. 기 타

- 농림부 정책사업 실적 (있을 경우에만 기재)
 - 사업명
 -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 지원액 등)
- 기타 특기사항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 기관은 농림부 시장과입니다.

1. 목적

-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공판장으로의 농수산물 출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농어민과 소비자 보호

2. 추진방향

- 도매시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법인과 공판장 등에 출하선도 및 조절용 자금과 대금 결제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시장으로의 안정적인 출하 유도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27조의 2, 제47조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백만원)

지원대상	계	'92-'95	'96	'97 (예산안)	'98	'99-2004
계	1,417,060	286,725	116,915	129,920	133,500	750,000
도매시장법인	704,300	163,300	58,000	60,000	63,000	360,000
농협 공판장	572,223	117,703	51,100	51,420	52,000	300,000
수 집 상	140,537	5,722	7,815	18,500	18,500	90,000

5. '9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1) 배 경 : 도매시장 출하촉진 및 상장경매제도의 정착지원
- (2) 사업내용 : 소비자 유통개선
 - 재원 :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자금의 종류

- 출하선도금 :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에 출하되어 상장된 농수산물
 물의 대금결제자금
- 출하선도자금 :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농수산물 수집상의 안정적인
 출하를 위한 출하조절 및 선도용 자금

(3) 사업규모 : 사업실적에 따라 융자기관에서 결정

(4) 지원대상

- 농수산물도매시장(축산물 제외)의 도매시장법인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법인,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
 효과가 없는 법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지원중단
 기간에 해당되는 법인
-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등록된 수집상
- 농협중앙회 공판장 및 회원조합 공판장
 - 제외대상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공판장, 거래질서 문란 등 자금 지원
 효과가 없는 공판장
- 농수산물유통공사 화훼공판장

(5) 지원조건

구 분	융자기간	지원금리
○ 농협공판장 - 선도금,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5%
○ 도매시장법인 - 선도금 - 대금결제자금	1년 이내 "	5% 8%
○ 농수산물 수집상 - 출하선도자금	1년 이내	8%

※ 사업시행 체계 (지원절차도) : 별표1 참조

나. '97 사업비 (예산)

내 용 별	사업량	사 업 비					지방비	자부담
		사업비 계	예 산 안 (농안기금)			음자		
			계	보조	음자			
계	6,050	백만원 211,920	129,920		129,920		82,000	
도매시장법인	4,000 ^{천톤}	120,000	60,000	-	60,000	-	60,000	
농협 공판장	2,050	73,420	51,420	-	51,420	-	22,000	
수 집 상	-	18,500	18,500	-	18,500	-	-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나. 사업시행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농협중앙회

다. 사업담당부서

- 농림부 : 유통정책국 시장과 (02-500-2675-6)
- 시·도 :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 시·군자치구 : 유통과 또는 산업과

라. 신 청

- 자 격 : 지원대상 범위내에서 별도기준 작성 운영
- 절 차 : 지원대상자가 사업실시기관에 신청
 - 지원절차도[별표1] 참조
- 구비서류 : 사업실시기관의 소정양식에 의함
 - 음자 신청서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 출하조절 자금 음자 추천서 등

마. 지원방식

(1) 도매시장법인

- 선도금 : 법인별 전년도 산지 선도금 운용실적을 기준으로 배정비율 산정
- 대금결제자금 : 상장경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연 소요액의 1/24)을 기준으로 배정

(2) 농협공판장

- 생산농가에 대한 산지선도금 100%와 상장경매거래에 대한 결제자금 소요액 (연 소요액의 1/24)의 30%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정비율 산정
- 공영도매시장 입주(예정) 공판장에 용자금액의 15% 범위내에서 특별 지원 가능

(3) 수집상

- 법정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출하금액을 기준으로 지원액 배정
- 단, 개인은 100백만원, 법인은 300백만원 이내에서 지원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에 대하여 사후 관리한다.
- 사업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약정 이행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해당없음

나. 보고·기타

- 사업시행기관은 자금의 배정현황, 자금집행실적 및 사후관리 상황을 매분기 종료 후 익월 15일 이내에 사업담당 부서에 보고(통보) 한다.

6. '98년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안내

가. 신청서 제출기관

- 도매시장법인
 -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원사인 경우에는 동 협회를 경유하여 협회장이 일괄 신청하며, 비회원사일 경우는 직접 신청한다.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지원처 시장조사부(02-790-8012)
- 농협공판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장 지원부 공판장지원팀.
(02-397-5764)
- 수집상 :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지원처 시장조사부(02-790-8012)

나. 신청자격 : 5.<사업개요> 가, (4) 지원대상자에 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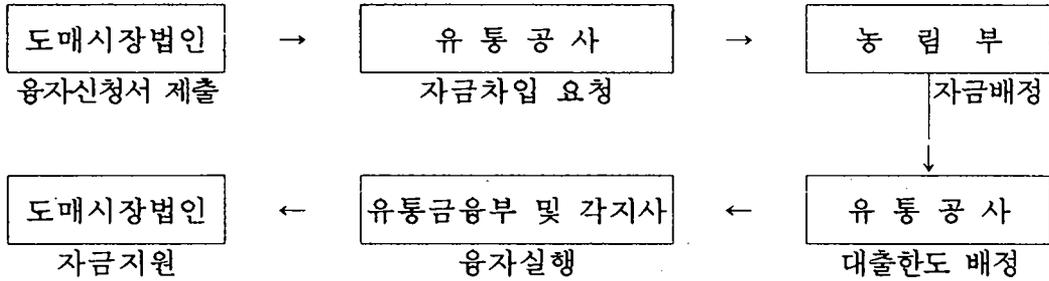
다. 신청절차 : 지원절차도(별표1) 참조

라. 구비서류 : 용자신청,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출하 조절자금 용자 추천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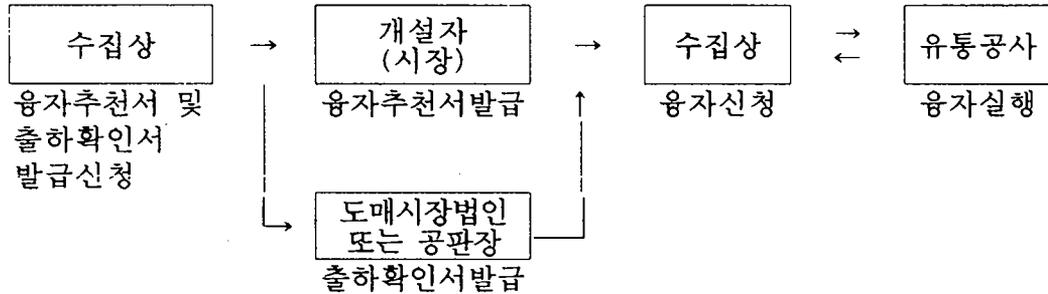
[별표 1]

지 원 절 차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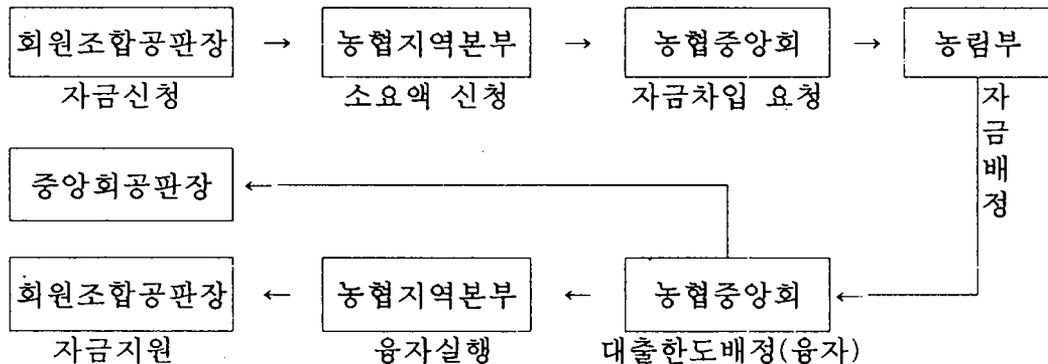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



<수집상 출하선도자금>



<농협공판장 출하촉진자금>



58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지원(공공)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과수화훼과, 산림청 임산물유통과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조직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조직의 활성화 및 규모화를 촉진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경쟁력을 강화

2. 추진방향

- 생산자의 조직화 유도 및 조직의 활성화
 - 조직형태는 품목별로 자율결정하되 가능한 한 법인화 유도
- 우수조직에 집중지원으로 조직의 상향발전 유도
 - 조직중심의 생산유통시설 완비
 - 산지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장기적으로 광역품목별 조직으로 육성
 - 저장, 가공, 유통, 수출등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생산자에 환원

3. 근거법령

-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7조
- 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사업실시요령 제86조

4.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1) 대상사업

- 채 소 : 비축수매, 포전수매, 공동·규격출하 지원, 가공원료 구입, 생산시설·자재 공동구입 등 생산자조직이 결정
- 과실·화훼 : 생산시설, 자재공동구입, 농산물수매 및 출하조절, 산지유통개선을 위한 유통시설설치등의 사업을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으로 결정
- 생 약 : 생약 생산시설 및 자재구입비 지원, 생약 공동육묘포설치, 생약수매비축 및 출하조절사업, 생약제조원료 수매, 산지유통시설 개선사업중에서 생산자조직이 자율적으로 결정
- 밤, 표고, 대추 : 수매출하조절사업, 산지유통, 생산시설 및 장비구입등 생산조직이 자율적으로 결정

(2) 지원조건

- 금 리 : 연5%
- 대출기간 : 11개월 이내
- 지원기준 : 자부담 비율이 지원금액의 25% 이상

(3) 지원대상자

- 채소, 과실·화훼생약 : 품목별 전문농업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가입된 회원조합
- 밥, 표고, 대추 : 밥, 표고, 대추생산자 협동조직(이하“임업협동조합” 포함)
 - ※ 영농조합 법인은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으로 한다.
 - 총출자액이 1억원이상인 법인
 - 조합원 1인의 출자액이 총출자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법인
 -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총출자액의 50%이상을 생산요소인 현물(농지, 시설 등)로 출자한 법인

나. '97지원계획(예산액)

(단위 : 백만원)

품 목	사업실시기관	용 자 금 액
마 늘	농협중앙회	11,000
양 파	"	6,000
대 파	"	2,000
생 강	"	2,000
사 과	"	30,000
배	"	5,000
복 승 아	"	400
포 도	"	1,500
감 굴	"	2,000
유 자	"	1,300
참 다 래	농수산물유통공사	2,500
화 훼 생약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30,000
생 약	농협중앙회	3,000
밥	임협중앙회	3,000
표 고	"	3,000
대 추	"	300
계		103,00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 농림부 원예특작국 원예특작과 전화 : 02) 504-9421/2, 504-2681/2
- 농림부 원예특작국 채 소 과 전화 : 02) 504-9423/4, 500-2683/4
- 농림부 원예특작국 과수화훼과 전화 : 02) 504-9425/6, 500-2685/6
- 산림청 임업정책국 임산물유통과 전화 : 02) 961-2325

나. 사업실시기관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채 소 과 전화 : 02) 397-5731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과수화훼과 전화 : 02) 397-5729
- 농수산물유통공사 경영지도처 금융사업부 전화 : 02) 794-5087
- 임협중앙회 금융부(시·군임업협동조합) 전화 : 02) 416-9421

다. 대상자선정

- (1) 선정권자 : 사업실시기관장
- (2) 선정기준(우선순위)

<채 소>

- ① 생산자조직의 사업에 적극참여하는 조직(원)
- ② 생산·출하 약정사업이 잘 이행된 조직
- ③ 공동작업, 공동판매 등 활동이 우수한 조직
- ④ 생산물의 규격상품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
- ⑤ 재배면적 비율이 높은지역의 조직

<과 실>

- ①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별 생산자조직
- ② 품목별 전문조합 및 영농조합법인
- ③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생산자조직으로서 저장고, 선과장 등의 유통시설 또는 가공시설을 갖춘 규모화된 조직
- ④ 전국협의회에 가입된 조직
- ⑤ 규격상품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지원)
- ⑥ 지난해 사업실적이 일정규모이상인 생산자조직

<화 해>

- ①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
- ② 공영도매시장 출하실적이 많은 생산자조직
- ③ 규격상품화 실적이 우수한 조직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지원)

<생 약>

- ① 한약재 공동생산 공동출하가 우수한 조직
- ② 생약조체 시설운영 및 저장고 보유조직

<밤, 표고, 대추>

- ① 주산단지내 법인화 된 품목별 생산자 협동조직
- ② 유통시설 및 장비구입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화 된 품목별 생산자 협동조직
- ③ 기타법인화 된 품목별 생산자 협동조직
- ④ 상기 조직중 규격상품화 실적이 우수한조직 우선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의 “활동기준”에 따라 상위등급 조직부터 지원)

(3) 선정절차

- 안내공고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실시 60일전까지 공고
- 사업신청 : 공고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시기관에 신청
- 지원대상자선정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실시 30일전까지 대상자선정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주관기관에 선정결과 보고
- 밤, 표고, 대추 : - 사업희망 품목별 생산자 협동조직은 사업예정년도 1월 31일까지 시·군임협에 신청
- 시·군임협은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선정 및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보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수립
- 사업실시기관은 본 요령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주관기관에 보고

○ 사업시행

- 농림부는 회계년도개시 6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주관기관 및 사업실시기관에 시달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실시 30일 전까지 사업실시계획과 대상자 선정결과를 사업주관기관에 보고하고 사업지원 요청
-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자금과에 예산한도액 배정요청
- 사업실시기관은 예산한도액이 배정되면 사업대상자에게 대출한도액을 배정하고(사업주관기관에 배정결과 보고), 사업자금과에 자금대여 신청
- 사업실시기관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때에는 즉시 사업대상자에게 대출 실행 및 사업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업실시기관은 약정이행 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

나. 제 재

○ 제재대상

- 대출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대출금이 집행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 기타약정사항 미이행 등

○ 제재내용

- 위약금징구, 대출금 회수, 일정기간 자금지원 중단

59	채소 가격안정사업(공공)
----	---------------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부 채소과입니다.

1. 목 적

- 생산자단체(조직)가 산지시장을 주도하여 시장교섭능력 배양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 추진
- 생산자단체의 유통참여 확대로 산지유통개선 추진

2. 추진방향

- 산지 생산자단체(조직)가 채소류 수급 및 가격안정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주산단지 재배농가(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을 대상으로 계약재배등을 실시하여 채소류 생산 및 출하조절
- 계약재배물량을 판매한 결과 발생한 손익은 계약 당사자가 공동부담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합리화 도모

3. 근거법령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47조제1항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계	'95	'96	'97
계	300,000	62,500	100,000	137,500
정부융자	240,000	50,000	80,000	110,000
농협자금	60,000	12,500	20,000	27,500

- 정부융자 재원 : '95년 → 농특세전입금, '96년이후 → 농안기금
 - 융자조건 : 10년거치, 무이자
- 자부담 : 농협중앙회 및 사업참여농협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대상자가 영농조합법인일 경우 참여 영농조합법인이 부담

5. '97년도 사업시행 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설명

1) 사업추진 내용

- 농협중앙회장이 정부지원융자금과 자체자금으로 채소가격안정 사업자금을 조성하고, 산지농협, 영농조합법인등 사업대상자에게 채소가격안정자금을 대출하여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농가와 계약재배등을 통해 채소의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게 함으로써 채소류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

2) 사업대상품목 : 무, 배추, 마늘, 양파, 대파, 고추등

- 대상품목은 수급상황등을 감안하여 농협중앙회장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3) 사업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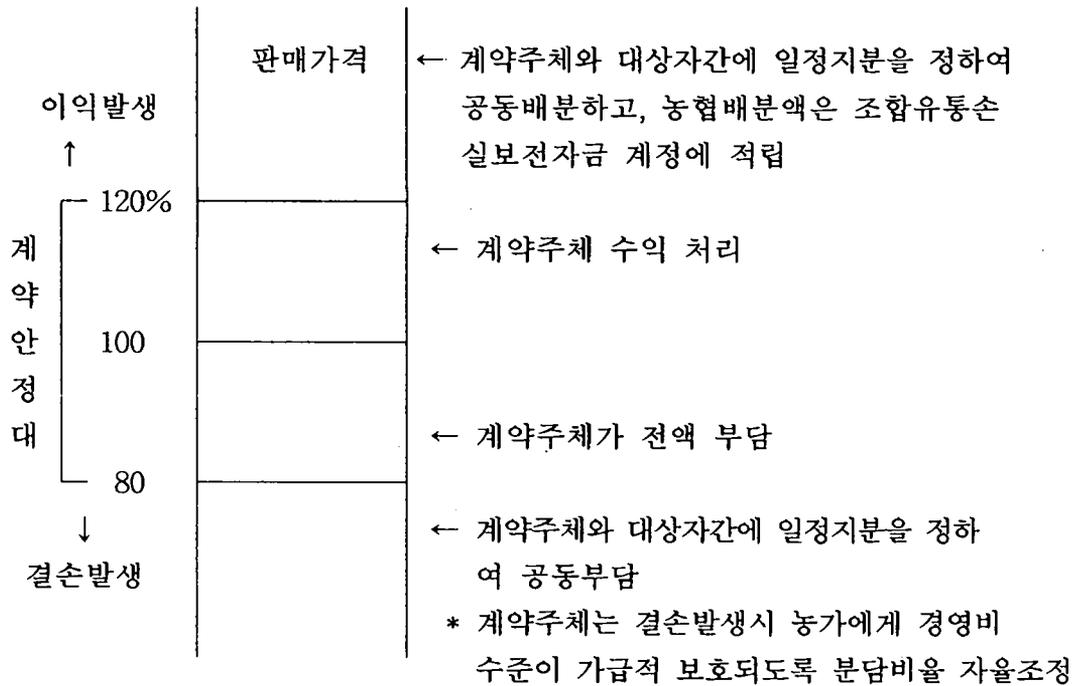
- 사업대상품목의 주산단지농협(특수조합 포함)
- 사업대상품목의 주산단지 영농조합법인중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영농조합법인
《사업적격자 검토기준》
 - ① 사업대상 품목의 재배면적
 - ② 법인의 구성원수
 - ③ 자부담 및 자금관리능력
 - ④ 사업관리 주체로서의 사업수행능력

4) 사업추진방법 : 계약재배중심 자율방식

5) 계약재배방식

- 계약주체 : 산지농협(영농조합법인)
- 계약대상 : 재배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등
- 계약물량관리 : 계약대상자가 출하시까지 관리
- 대금지급 :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 지급
- 출하 및 판매
 - 가격동향에 따라 시기별, 지역별로 출하조절
 - 저장성이 있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할 경우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출하조절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제제조치를 할 수 있음.

○ 사업정산체계



주1) 판매가격 : 출하경비등 중간제비용을 공제한 금액

2) 정산단위 : 품목특성을 감안하여 농가단위 또는 공동정산방식 채택

나. '97사업비(예산) 내용

(단위 : 백만원)

내 용 별	계	재 원 별	
		정 부 음 자	농 협 자 금
총 사업비	300,000	240,000	60,000
○ '97 추가조성	137,500	110,000	27,500
○ 기초성('95~'96)	162,500	130,000	32,500

※ 농협자금은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분담할 수 있음.

- 사업물량 : 수급전망 등을 감안, 농협중앙회장이 별도시달
- 사업대상자에 대한 자금지원 조건
 - 금리 : 무이자
 - 지원기간 :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별도 시달
- 사업자금의 운용
 - 사업자금 80%, 손실대비운용자금 20%
 - 사업우수조합에 대해서는 손실대비운용자금 지원비율 상향조정 가능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기관 : 농림부

나. 사업담당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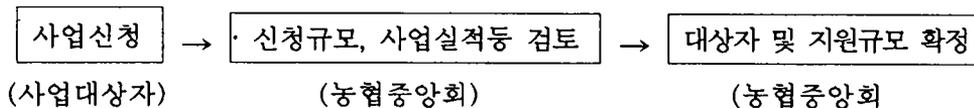
- 농림부 : 채소과(02-500-2683/4)
- 농협중앙회 : 채소과(02-397-5734)

다. 대상자 선정

○ 사업물량 배정

- 농협중앙회장이 신청물량, 예년의 사업실적, 당해품목의 생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선정절차



라. 사업시행

○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당해년도 자금조성 규모와 수급상황등을 감안하여 사업기본계획 수립시달
- 사업계획 변경사유 발생시는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농협중앙회장이 사업계획 변경시달

○ 사업비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자금과 운영자금 전액을 사업시행전에 사업대상자에게 무이자 융자 지원
- 사업품목의 특성상 전액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품목은 분할지원 가능

마. 사업 운용수익의 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대상자로 부터 회수한 위약금, 사업대기자금의 이자는 별도계정에 적립하여 사업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행정비와 사업 조합의 손실보전 및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용도로만 지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정산결과 20%이상 발생한 이익배분액과, 농가위약금, 농협중앙회장이 정하는 품목별 자금운용수익을 별도계정에 적립하여 사업손실 발생시 보전

바. 사업자금운용 지침의 변경

- 농협중앙회장이 자금운용지침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농림부장관과 협의해야 함.

사. 사업부진 및 위약자에 대한 제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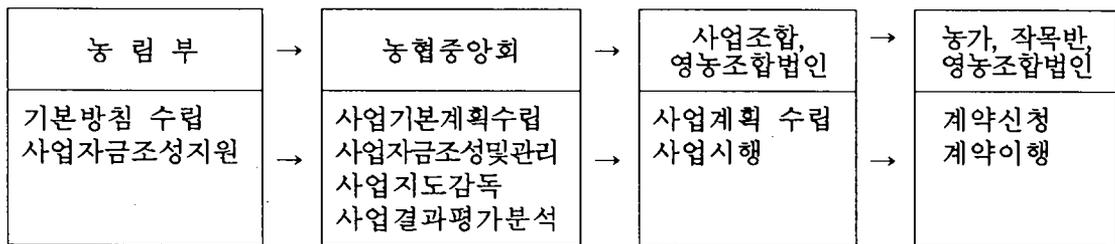
<사업부진 대상자>

- 자금배정액보다 사업실적이 부진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미집행자금에 대해 일정 위약금리를 부과
- 다음 익년도 사업지원시 불이익 조치

<계약 미이행자>

- 계약금 및 위약금 징수
- 다음년도 계약대상자에서 제외등 불이익 조치

아. 사업추진 체계도



자. 본지침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장이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하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

<행정사항>

가. 사후관리

- 사후관리 책임자 : 농협중앙회장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내실화를 위해 전담사업단 운영
- 사후관리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조합(생산자조직)의 지원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감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나. 보고

-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 상황보고
 - 사업대상자 → 농협중앙회 : 매반기 익월 5일까지
 - 농협중앙회 → 농 립 부 : 매반기 익월 10일까지
 - ※ 품목별 사업추진 사항은 추진진도 감안, 수시보고
- 익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농협중앙회→농림부) : 전년11월 말까지

6. '98년도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협중앙회장이 별도 시달